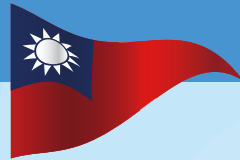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2020. 12



## TAIWAN

대만 편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 대만 편 -

2020. 12

---

연구총괄 정재현 부연구위원

연구자 노영예 선임연구원  
손다혜 위촉연구원

# 목 차

제1편 개관 .....	1
I. 일반 개황 .....	1
II. 경제 개황 .....	6
1. 주요 경제지표 .....	6
2. 대만의 對세계 수출입 동향 .....	7
3. 외국인 투자 동향 .....	11
가. 대만의 FDI .....	11
나. 대만의 ODI .....	13
다. 대만의 對한국 ODI .....	15
4. 양안관계 .....	17
III.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	20
1. 수출입 동향 .....	20
2. 수출입 주요 품목 .....	21
IV. 대만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	23
1.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	23
2. 협상 중인 무역협정 .....	27
3. 기타 협정 .....	29

제2편 통관제도 .....	30
I. 통관 관련 조직 및 관련 법 .....	30
1. 통관조직 .....	30
2. 통관 관련 법 .....	35
가. 대만의 법률체계 .....	35
나. 재정부 관무서 제정 명령 .....	37
3. 기타 관련 법 및 기관 .....	39
가. 대만 경제부 .....	39
나. 대만 위생복지부 .....	41
다. 과학공업단지 .....	41
라. 대만 자유무역지역 .....	43
II. 관세 신고와 납부 .....	47
1. 관세의 과세요건 .....	47
가. 과세물건 .....	47
나. 과세표준 .....	47
다. 납세의무자 .....	48
라. 과세환율 .....	49
2. 관세 신고와 납부 .....	49
가. 신고 .....	49
나. 납부 .....	50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	51
가. 물품세 .....	51
나. 특정물품 및 서비스세 .....	52
다. 부가가치세 .....	52
라. 담배·주류세 .....	53
마. 무역진흥서비스비 .....	54
바. 「세관수수료 징수규칙」에 따른 특별비용 .....	54

III.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제도 .....	57
1. 관세평가제도 .....	57
가. 관세평가 .....	57
나. 과세가격 결정방법 .....	58
다.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	61
2. 품목분류제도 .....	62
가. 품목분류 개요 .....	62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63
IV. 관세율 제도 .....	65
1. 관세율 종류 .....	65
가. WTO 세율 .....	66
나. 특혜·FTA/ECA세율 .....	67
다. 할당관세 .....	68
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	71
마. 특별 세이프가드 .....	74
2. 세율 적용 우선순위 .....	78
3. 관세율 수준 .....	79
4. 관세율 구성 .....	83
V. 감면 및 환급제도 .....	86
1. 감면제도 .....	86
가. 특정면세 .....	86
나. 세관승인면세 .....	88
2. 환급제도 .....	91
VI. 원산지 제도 .....	93
1. 개요 .....	93

2. 원산지규정 .....	94
가. 특혜 원산지규정 .....	95
나. 비특혜 원산지규정 .....	96
3.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	98
VII. 보세제도 .....	101
1. 개요 .....	101
2. 보세제도 .....	102
가. 보세창고의 운영 및 관리 .....	102
나. 보세공장의 운영 및 관리 .....	107
다. 물류센터의 운영 및 관리 .....	110
라. 면세점의 운영 및 관리 .....	112
마. 기타 .....	114
VIII. 수출입 규제 .....	117
1. 개요 .....	117
2. 수입 규제 .....	118
가. 수입 금지 및 제한 .....	118
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 .....	123
3. 수출 규제 .....	125
가. 수출 금지 및 제한 .....	125
4. 중국에 대한 수출입 규제 .....	131
5. 주요 인증 .....	134
가. BSMI 인증 .....	135
나. CNS 인증 .....	136
다. TFDA 인증 .....	137
라. VSCC 인증 .....	139



IX. 행정구제제도 .....	141
1. 개요 .....	141
2. 행정구제제도 .....	142
가. 행정구제제도 .....	142
나. 기타 .....	144
X. 벌칙 .....	147
1. 개요 .....	147
2. 관세 형벌 및 행정 질서벌 .....	148
가. 「밀수징계조례」상 형벌 .....	148
나. 「관세법」상 행정 질서벌 .....	150
다. 「세관밀수방지조례」상 행정 질서벌 .....	157
XI. AEO 제도 .....	164
1. 개요 .....	164
2. AEO 신청자격 .....	165
가. AEO G .....	165
나. AEO S .....	166
3. AEO 신청절차 .....	167
가. AEO G .....	167
나. AEO S .....	168
4. AEO 혜택 .....	175
가. AEO G .....	175
나. AEO S .....	177
다. MRA .....	178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	179
I. 수입 통관절차 .....	179
1. 개요 .....	179
2. 수입 통관절차 .....	180
가. 수입신고 .....	180
나. 물품검사 .....	182
다. 세금납부 및 반출 .....	185
3. 기타 통관절차 .....	188
가. 우편물 .....	188
나. 해상 및 항공 특송물품 .....	190
다. 여행자 물품 .....	193
II. 수출 통관절차 .....	195
1. 개요 .....	195
2. 수출 통관절차 .....	196
가. 수출신고 .....	196
나. 물품검사 .....	198
다. 물품반출 및 기타 유의사항 .....	202
3. 기타 통관절차 .....	204
가. 우편물 .....	204
나. 해상 및 항공 특송물품 .....	205
다. 여행자 물품 .....	206
참고문헌 .....	211

# 표 목차

## 제1편

〈표 1-I-1〉 대만 산업별 명목GDP 비중 .....	5
〈표 1-II-1〉 대만 주요 경제 지표 .....	6
〈표 1-II-2〉 대만의 對세계 수출입 현황 .....	7
〈표 1-II-3〉 2019년 대만의 상위 10개 수출입물품 .....	8
〈표 1-II-4〉 2019년 대만 수출입액 기준 상위 10개국 .....	10
〈표 1-II-5〉 최근 10년간 대만의 FDI, ODI 및 對중국 투자액수 .....	11
〈표 1-II-6〉 최근 5년간 대만의 FDI 및 ODI 금액 .....	13
〈표 1-II-7〉 최근 3년간 대만의 對한국 ODI 투자액수 .....	15
〈표 1-II-8〉 최근 3년간 대만의 對한국 상위 5개 산업 ODI 투자액수 .....	16
〈표 1-II-9〉 ECFA로 인한 대만의 관세 감면액 .....	18
〈표 1-III-1〉 최근 10년간 대만의 對한국 수출입금액과 전년대비 증감률 .....	20
〈표 1-III-2〉 2019년 한국의 對대만 상위 10개 수출입 품목 .....	21
〈표 1-IV-1〉 대만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	27

## 제2편

〈표 2-I-1〉 대만 재정부 관무서 부서별 업무 .....	31
〈표 2-I-2〉 대만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세칙」 구조 .....	37

〈표 2-I-3〉 대만 통관 관련 기본법규 .....	37
〈표 2-I-4〉 대만 수출가공구 주요 산업 및 입주비용 .....	45
〈표 2-II-1〉 최근 3년간 대만 평균 관세율 .....	48
〈표 2-II-2〉 대만의 물품세율 .....	51
〈표 2-II-3〉 담배 및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 .....	53
〈표 2-II-4〉 「세관수수료 징수규칙」에 따른 특별비용 .....	55
〈표 2-III-1〉 「관세법」 제2장 제2절 완세가격 내용 .....	57
〈표 2-III-2〉 완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가산요소 .....	59
〈표 2-III-3〉 완세가격의 근거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59
〈표 2-IV-1〉 대만 관세율 종류 .....	65
〈표 2-IV-2〉 대만 관세율표 제1란(Column I) 적용 국가 목록 .....	66
〈표 2-IV-3〉 대만 관세율표 제2란(Column II) 적용 국가 목록 .....	67
〈표 2-IV-4〉 대만 할당관세(Tariff Quota) 종류 및 적용 품목 .....	68
〈표 2-IV-5〉 대만 WTO 할당관세(Tariff Quota) 부과 쌀 품목 .....	69
〈표 2-IV-6〉 대만 WTO 할당관세(Tariff Quota) 부과 품목(쌀 제외) .....	70
〈표 2-IV-7〉 대만 반덤핑관세 조사 대상 물품 및 국가 .....	73
〈표 2-IV-8〉 대만 2020년 가격에 기초한 특별 세이프가드 .....	76
〈표 2-IV-9〉 대만 2020년 수입량에 기초한 특별 세이프가드 .....	77
〈표 2-IV-10〉 대만 세율 적용 우선순위 .....	79
〈표 2-IV-11〉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구분 .....	80
〈표 2-IV-12〉 대만 MFN 관세율 수준 .....	80
〈표 2-IV-13〉 대만 관세율 분포-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	81
〈표 2-IV-14〉 대만 산업별 관세율 분포 .....	81
〈표 2-IV-15〉 대만 관세율표상 특별징수규정(CR) .....	84
〈표 2-IV-16〉 대만 관세율표 예시 .....	84

〈표 2-Ⅷ-1〉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수입제한 물품 목록 .....	120
〈표 2-Ⅷ-2〉 우리나라에 대한 대만의 수입규제 현황 .....	124
〈표 2-Ⅷ-3〉 경제부 국제무역국 수출제한 물품 목록 .....	126

## 그림 목차

### 제2편

[그림 2-I-1] 대만 재정부 관무서 조직도 ..... 34

[그림 2-IV-1] 대만 관세율 조회 ..... 83

# 제1편 개관

## I. 일반 개황<sup>1)</sup>

- 정식 국가명칭은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며 국제 행사에서는 Chinese Taipei를 사용하기도 함.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에서는 Chinese Taipei를 사용함<sup>2)</sup>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에서는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를 사용함<sup>3)</sup>
  
- 건국일(19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화민국력을 사용하며 2020년은 중화민국력 109년임

---

1) 외교부, 「대만개황(2019년 통계 기준)」, [http://overseas.mofa.go.kr/tw-ko/brd/m\\_1455/view.do?seq=1296016&srchFr=&a](http://overseas.mofa.go.kr/tw-ko/brd/m_1455/view.do?seq=1296016&srchFr=&a), 검색일자: 2020. 8. 18.

2) 외교부, 『대만 개황 2016』, 2016, p. 2.

3) 외교부(2016), p. 2.

## 2 제1편 개관

- 2020년 1월 기준 총인구 약 2,360만명이며 민족은 객가인과 기타 중국 민족을 포함한 95% 이상이 한족(Hoklo)이고 말레이폴리네시아(Malayo-Polynesian)이 2%를 차지하고, 동북아시아 및 중국 이민자들이 나머지 2%임
- 2018년 말 기준 민남인, 객가인, 외성인순으로 중국 본토 출신이 97.3% 이상을 차지하며 원주민은 2.3%를 차지함<sup>4)</sup>
  -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이주한 사람의 80% 이상이 푸젠성 출신이며 대만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대만의 민간신앙과 민속신앙의 대부분이 푸젠성에서 기원하였음<sup>5)</sup>
  - 푸젠성의 민남문화, 객가문화, 조산문화, 마조문화 등이 대만의 문화에 영향을 미침
- 국토 면적은 36,192km<sup>2</sup>이며 국토 최장 길이는 394km, 최대 폭은 144km로 상하로 긴 국토를 가지고 있음
- 경작 가능 면적의 비율은 24%로 지형 대부분이 산악지역임<sup>6)</sup>
- 길고 더운 여름과 짧고 습한 겨울이 특징인 아열대성 해양기후에 속함<sup>7)</sup>
  - 1년 평균 6~8회 정도 6월~9월 중에 태풍이 내습함
  - 연평균 70~100회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함
- 2019년 기준 대만의 현행 행정구역은 제1급 행정구역인 6개의 직할시(신베이시, 타이베이시, 타오위안시, 타오청시, 타오난시, 가오슝시)와 제2급 행정구역인 3개의 시(지룽시, 신주시, 자이시)와 12개의 현으로 나뉨
- 한편 행정구역은 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동부지역으로 나뉘짐
  - 북부지역: 타이베이시, 신베이시, 타오위안시, 지룽시, 신주시, 이란현, 신주현

4) KOTRA 타이베이무역관, 『타이베이 출장가이드』, 2019. p. 1.

5) 양평섭 외, 『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p. 157.

6) 외교부, 「국가/지역정보」,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2&titleNm=%EA%B5%25](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2&titleNm=%EA%B5%25), 검색일자: 2020. 8. 18.

7) 허재철 외, 「2020년 타이완 선거 이후 양안관계 전망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20권 제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p. 5.



- 중부지역: 타이중시, 먀오현, 장화현, 난터우현, 윈린현
  - 남부지역: 타이난시, 가오슝시, 자이시, 핑둥현, 핑후현
  - 동부지역: 타이둥현, 화롄현
- 2019년 기준 4개 행정구역별 인구수는 북부지역(1,074만 8,581명, 45.84%), 남부지역(684만 9,298명, 27.08%), 중부지역(580만 8,940명, 24.77%), 동부지역(54만 3,028명, 2.32%)임
- 화폐 단위는 신대만달러(New Taiwan dollar, NTD, 이하 신대만달러)로, 2020년 10월 13일 기준 1달러당 28.6130신대만달러이고 우리나라 화폐 1원당 0.0249신대만달러임<sup>8)</sup>
- 입헌민주공화제로 5권 분립의 정치체제(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를 채택함
- 총통이 대만을 대표하고 총통 아래에 5원(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고시원,<sup>9)</sup> 감찰원)을 두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형태임
  - 1947년 1월 1일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가 핵심 사상인 헌법을 반포함
  - 국경일은 10월 10일이며 쌍십절이라고 불림
- 국가 원수를 총통(President, 이하 총통)이라고 하며 4년 중임제이고 2020년 1월 11일 치러진 15대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재선에 성공함<sup>10)</sup>
- 정당은 2016년 입법위원 선거에 이어 2020년 1월 11일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이하 민진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

8)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quote/USDTWD:CUR>; <https://www.bloomberg.com/quote/KRWTWD:CUR>, 검색일자: 2020. 10. 13.

9) 대만 고시원(考試員)에서는 공무원 선발, 고용, 승진, 퇴직금 업무 등을 관장하며 직업 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국가 5원 중 하나임(외교부(2016), p. 25.)

10) 『한겨레』, 「차이잉원 대만 총통 압도적 재선…민진당 입법원 단독 과반 확보」, 2020. 1. 12.,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24098.html](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24098.html), 검색일자: 2020. 8. 18.

#### 4 제1편 개관

- 공용어는 표준 중국어(Mandarin)이나 중국이 사용하는 간체자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자인 번체자를 사용함
  - 이외에 대만 방언인 민남어, 중국 남방지역 방언인 객가어를 사용함
  
- 종교는 불교, 도교, 기독교, 천주교를 주요 신앙으로 삼으며 불교 및 도교가 각각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기독교와 천주교가 합해서 약 4%를 차지함<sup>11)</sup>
  
- 대만과 중국의 양안관계(Cross-Strait Relations)는 대만의 국민당 혹은 민진당 간의 정권교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0년 초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과 민진당의 과반의석 확보로 인해 전반적으로 양안관계 냉각이 예상됨
  - 양안관계는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용어로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대륙인 서안과 대만인 동안이 마주보고 있는 것에서 명명됨<sup>12)</sup>
  - 차이잉원 총통과 민진당이 정권을 잡았던 14대 집권시기에 정치 및 사회문화 분야의 양안관계는 냉각되었으나,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는 차이잉원 총통과 민진당의 집권시기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 바 있음<sup>13)</sup>
  
- 2019년 9월 기준 대만은 총 15개국과 수교<sup>14)</sup>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37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함
  -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후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파나마,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등 7개국이 대만과 단교함
  
- 한국은 1948년 8월 대만과 최초로 수교하였으며 대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1992년 8월 한국이 중국과 수교한 동시에 대만과 단교를 하였음

11) KOTRA 타이베이무역관(2019), p. 1.

12) 박정하, 「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 동향 및 전망」, 『국제경제리뷰』, 제2019-16호, 한국은행, 2019, p. 4.

13) 허재철 외(2020), p. 3.

14) 『YTN』, 「남태평양 키리바시, 대만과 단교...대만 수교국 15개로 줄어」, 2019. 9. 20.,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0116551074>, 검색일자: 2020. 8. 18.

- 2010년대에 들어서 양국 간 경제·문화교류가 확대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임
- 한국과 대만의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대만과의 무역수지는 2014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하다가 2018년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하였음<sup>15)</sup>
  - 對세계 주요 수출입품목 구조가 비슷해 경쟁관계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산업 내 교역이 많아 상호보완성이 높은 국가임
    - 반도체, 기초유분, 정밀화학원료, 기구부품, 기타석유화학제품 등 2018년 기준 양국의 10대 수출입품에서 절반 이상이 동일 품목임
- 최근 5년간 대만의 산업별 GDP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제조업이 대략 30%를 차지함
  - 3차 산업에서는 도소매업의 비중이 전체 GDP의 15% 정도로 가장 높으며 금융 및 보험업의 비중이 6%로 뒤를 이음
  - 2차 산업에서는 제조업이 GDP의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1-1-1〉 대만 산업별 명목GDP 비중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농업(1차 산업)	1.76	1.87	1.82	1.69	1.77
제조업(2차 산업)	36.29	36.87	36.83	36.45	35.81
서비스업(3차 산업)	61.95	61.27	61.35	61.86	62.42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5-3. 산업별 GDP」, <https://eng.stat.gov.tw/ct.asp?xItem=33339&ctNode=3570&mp=5>, 검색일자: 2020. 10. 2.

15) KOTRA 타이베이무역관(2019), p. 9.

## II. 경제 개황

### 1. 주요 경제지표

-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Executive Yuan, 이하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목GDP와 실질 GDP는 우상향이며 평균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고 평균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전년대비 GDP 상승률은 2.75%이고 2019년 상승률은 2.71%임
  - 2017년 GDP 상승률은 3.31%에 비해 2018년과 2019년은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았으나 GDP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5년 동안 대만의 평균 실업률은 3.7~3.9% 정도임

〈표 1-11-1〉 대만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명목GDP(백만달러)	534,474	543,002	590,780	608,186	610,872
실질GDP(백만달러) <sup>1)</sup>	17,183,235	17,555,268	18,136,589	18,634,482	19,139,231
1인당 명목GDP(달러)	22,780	23,091	25,080	25,792	25,893
전년대비 GDP증감율(%)	1.47	2.17	3.31	2.75	2.71
외환보유고(십억만달러)	4,260	4,342	4,515	4,618	4,781
평균 인구(천명)	23,319	23,364	23,404	23,425	23,440

〈표 1-Ⅱ-1〉의 계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실업률(%)	3.8	3.9	3.8	3.7	3.7
평균 고용률(%)	48.0	48.2	48.5	48.8	49.1
CPI 증감률(%) <sup>2)</sup>	-0.30	1.39	0.62	1.35	0.56

주: 1) 2016년 기준

2) 2016년 소비자물가를 100으로 두고 계산한 증감률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2020. 9., pp. 14~15; pp. 76~77, [https://eng.stat.gov.tw/public/data/dgbas03/bs2/yearbook\\_eng/yearbook2019.pdf](https://eng.stat.gov.tw/public/data/dgbas03/bs2/yearbook_eng/yearbook2019.pdf); <https://eng.stat.gov.tw/lp.asp?CtNode=2410&CtUnit=1016&BaseDSD=7&mp=5>, 검색일자: 2020. 10. 2.

## 2. 대만의 對세계 수출입 동향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했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인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음

〈표 1-Ⅱ-2〉 대만의 對세계 수출입 현황

(단위: 천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2008	177,388,318	0.0	231,550,162	0.0	-54,161,844
2009	139,208,470	-21.5	155,054,002	-33.0	-15,845,532
2010	192,841,257	38.5	244,246,537	57.5	-51,405,280
2011	221,490,920	14.9	263,312,339	7.8	-41,821,419
2012	216,745,980	-2.1	265,338,384	0.8	-48,592,404
2013	305,128,943	40.8	270,613,896	2.0	34,515,047
2014	313,206,166	2.6	273,746,564	1.2	39,459,602
2015	280,010,327	-10.6	225,140,819	-17.8	54,869,508
2016	280,489,766	0.2	230,956,303	2.6	49,533,463

〈표 1-Ⅱ-2〉의 계속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2017	317,780,978	13.3	259,808,739	12.5	57,972,239
2018	335,806,350	5.7	286,482,221	10.3	49,324,129
2019	330,537,050	-1.6	281,732,422	-1.7	48,804,628
2020(1~6월)	158,125,107	0.0	204,487,110	53.9	-46,362,003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총괄」, <http://stat.kita.net/stat/istat/twts/TwtsWholeList.screen>,  
검색일자: 2020. 9. 23.

- 2019년 대만 상위 수출입 물품으로는 반도체 및 반도체 관련 기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상위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상위 수출물품은 반도체 및 기타 관련 기계 이외에도 기타 석유제품 등이 있음

〈표 1-Ⅱ-3〉 2019년 대만의 상위 10개 수출입물품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기타 전자집적회로	82,314	3.4	기타 전자집적회로	25,554	-6.3
2	전자집적회로 메모리	11,838	3.6	석유와 역청유(瀝靑油) (원유로 한정함)	21,257	-9.1
3	기타 석유와 역청유,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10,335	-4.9	전자집적회로 메모리	18,528	2.4
4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0,110	36.7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12,612	96.1
5	솔리드 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7,218	12.9	천연가스	7,294	-8.3
6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6,138	31.2	전자집적회로 중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7,280	47.7

〈표 1-11-3〉의 계속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7	기타 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그 밖의 광학기기	5,750	-9.0	기타 석유와 역청유,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6,768	-32.8
8	인쇄회로	5,289	-5.4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 적회로·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자료: <a href="http://news.kotra.or.kr/common/proc/kotranews/globalHsCodeList.do?searchLvl=3&amp;searchHsCode=848690">http://news.kotra.or.kr/common/proc/kotranews/globalHsCodeList.do?searchLvl=3&amp;searchHsCode=848690</a> )	5,391	39.5
9	기타 부분품	5,193	-18.7	유연탄	4,927	-33.0
10	기타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	4,642	58.3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3,788	19.1

주: 품목기준은 HS코드(6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품목별」, <http://stat.kita.net/stat/istat/twts/Twts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0. 9. 23.

- 중국은 대만의 제1위 수출입국가로 대만은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편임
-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신남향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대만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제조기지를 옮기려는 시도들을 보이고 있음
-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신남향정책은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 10개국, 남아시아 6개국,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경제협력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대만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sup>16)</sup>

- 한편 2017~2018년도에는 홍콩이 제2위 수출국이었고 2019년에는 홍콩으로 수출이 2018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2018년 대비 16.8% 증가하여 미국이 제2위 수출국이 되었으며 미국으로부터 수입 금액도 전년보다 3.1% 늘어남
-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제6위 수출국이었으나 수입기준으로 보면 제4위국이었음
  - 이는 2018년 대비 9.1% 수입이 감소한 것이고 수출은 6.7% 증가하였음

〈표 1-Ⅱ-4〉 2019년 대만 수출입액 기준 상위 10개국

(단위: 천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국가명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1	중국	92,098,008	-4.8	중국	57,455,193	6.8
2	미국	46,422,481	16.8	일본	44,083,030	-0.1
3	홍콩	40,485,793	-2.6	미국	36,086,414	3.1
4	일본	23,410,206	1.4	한국	17,746,864	-9.1
5	싱가포르	18,208,431	5.0	말레이시아	10,445,715	12.9
6	한국	17,040,435	6.7	독일	9,406,966	-5.6
7	베트남	10,782,831	-0.2	싱가포르	7,925,573	-5.8
8	말레이시아	9,410,086	-11.3	네덜란드	7,894,189	103.3
9	독일	6,538,754	-7.4	사우디아라비아	7,745,404	-10.4
10	필리핀	6,163,263	-31.0	호주	7,694,070	-20.1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대만-국가별」, <http://stat.kita.net/stat/istat/twts/TwtsCtrl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0. 9. 23.

16) 박정하(2019), p. 5.



### 3. 외국인 투자 동향<sup>17)</sup>

#### 가. 대만의 FDI

-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Investment Commiss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이하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63억 2,030만 4천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9.77%가 감소한 수치임
- 투자 금액 기준으로 제조업(12억 8,411만 9천달러)과 금융·보험업(18억 4,754만 2천달러)이 투자를 가장 많이 받았음
- 투자 건수 기준으로는 도소매업이 1,085건으로 전체 투자 건수 2,575건의 42% 정도를 차지함
- 2018년 FDI 실적은 2007년 이래 최고치로 114억 4,024만달러를 기록하였음

〈표 1-Ⅱ-5〉 최근 10년간 대만의 FDI, ODI 및 對중국 투자액수

(단위: 천달러)

연도	해외직접투자 액수 <sup>1)</sup>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액수	중국으로 투자한 액수 <sup>2)</sup>	중국자본의 대만 투자액수
2009	4,797,891.22	3,005,553.60	7,142,593.29	37,486.00
2010	3,811,565.41	2,823,451.24	14,617,872.25	94,345.00
2011	4,955,434.76	3,696,827.04	14,376,624.48	51,625.00
2012	5,558,981.46	8,098,641.18	12,792,077.12	331,583.00
2013	4,933,451.10	5,232,265.90	9,190,090.32	349,479.00
2014	5,770,024.16	7,293,683.10	10,276,569.66	334,631.00
2015	4,796,846.80	10,745,194.74	10,965,485.35	244,067.00

17)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Monthly Report(September 2020)," 2020. 10. 20., [https://www.moeaic.gov.tw/news.view?do=data&id=1472&lang=en&type=business\\_ann](https://www.moeaic.gov.tw/news.view?do=data&id=1472&lang=en&type=business_ann), 검색일자: 2020. 10. 12.

〈표 1-Ⅱ-5〉의 계속

연도	해외직접투자 액수 <sup>1)</sup>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액수	중국으로 투자한 액수 <sup>2)</sup>	중국자본의 대만 투자액수
2016	11,037,061.00	12,123,094.00	9,670,731.60	247,628.00
2017	7,513,192.00	11,573,208.00	9,248,862.14	265,705.00
2018	11,440,234.00	14,294,562.00	8,497,730.00	231,242.00
2019	11,195,975.00	6,851,155.00	4,173,090.00	97,180.00
2020(1~7월)	4,403,039.00	5,702,998.00	3,539,851.00	58,158.00

주: 1) 중국자본을 포함한 외국인 해외직접투자 액수를 의미함

2) 홍콩과 마카오로 투자한 액수를 포함함

자료: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Statistics Chart," [https://www.moeaic.gov.tw/business\\_category.view?seq=0&lang=en](https://www.moeaic.gov.tw/business_category.view?seq=0&lang=en), 검색일자: 2020. 10. 19.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만으로의 해외직접투자를 액수 및 건수를 대륙별로 살펴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아시아가 대만에 투자한 건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투자액수 기준으로는 유럽이 대만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함
  - 2019년 투자 건수 기준으로는 아시아가 2,796건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 건수의 68%를 차지하고, 북아메리카가 354건으로 9%를 차지함
    - 1952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건수 비중으로는 아시아(53%), 중남미(32%), 북아메리카(14%), 유럽(9%), 오세아니아(7%), 아프리카(2%) 순임
  - 2019년 투자액수 기준으로 유럽이 38억 6,334만 7천달러(35%), 중남미가 32억 5,310만 6천달러(29%), 아시아가 23억 4,306만 8천달러(21%)를 대만에 투자함
    - 1952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5,645만 2,626천달러), 아시아(4,681만 9,213천달러), 중남미(3,824만 6,969천달러), 북아메리카(2,551만 4,352천달러), 아프리카(267만 8,114천달러) 순으로 대만으로의 누적 투자액수가 많음
- 2019년 기준 유럽에서 네덜란드가 가장 많은 금액인 229만 5,913천달러를 투자했고 중남미 국가 중 카리브해 영국령에서 312만 246천달러를 투자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270만 953천달러를 투자했음

- 1952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투자액수를 기준으로 네덜란드, 카리브해 영국령, 미국, 일본 순서로 많은 금액을 투자함
  - 2020년 1~9월 투자액수 기준 일본은 도소매업에 가장 많이 투자했으며 유럽에서는 네덜란드(23만 9,716천달러)보다 영국(32만 3,285천달러)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에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함
  - 카리브해 영국령에서는 128만 5,328천달러를 투자했으며 제조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순으로 투자금액이 많음
- 중국 자본은 1952년부터 2019년 누적 투자액 기준, 금융·보험업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으나 2020년 1~9월 기준으로 주로 대만의 도소매업에 투자함

## 나. 대만의 ODI

- UNCTAD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만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와 해외직접투자(Outward Direct Investment, 이하 ODI)의 추이에서 ODI 금액이 FDI 금액보다 많음을 알 수 있음

〈표 1-11-6〉 최근 5년간 대만의 FDI 및 ODI 금액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유입(inflow)	전년대비 증가율	유출(outflow)	전년대비 증가율
2015	2,391	-15	14,709	16
2016	9,261	287	17,946	22
2017	3,291	-64	11,552	-36
2018	6,998	113	18,058	56
2019	8,213	17	11,861	-34

주: 자산/부채 기준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UNCTAD, 2020,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wir2020\\_en.pdf](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wir2020_en.pdf), 검색일자: 2020. 9. 24.

- 중국에 압도적으로 많은 액수를 투자하였으나 2010년 전체 해외투자액수의 84%를 차지한 후 감소하는 추세임
  - 주된 원인은 미·중 통상분쟁과 대만의 신남향정책의 기조로 인한 아세안·남아시아 진출 확대전략의 영향으로 특히 미국과 베트남으로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임<sup>18)</sup>
    - 2019년 대만 기업에게 본국 회귀투자 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유턴기업에 토지 및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 중인 결과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대만으로 회귀투자를 결정한 중국 진출 기업의 對 대만 투자 신청규모가 6천억신대만달러를 초과함<sup>19)</sup>
  
- 2018년 투자 금액 기준으로 중국(37.3%), 카리브해 영국령(26%), 미국(9%), 네덜란드(4.9%), 베트남(4%) 순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음
  
- 대만은 중국과 수교한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장쑤성(江苏省)에 가장 많이 투자해 왔으나 2020년 1~9월에는 푸젠성(福建省)에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함<sup>20)</sup>
  - 푸젠성은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이주한 화교들의 80% 이상이 출신인 지역으로 대만과 지리적·문화적으로 연관된 지역임
  - 중국 중앙정부는 ECFA를 계기로 대만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푸젠성을 시범지역으로 지정<sup>21)</sup>했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서 푸젠성을 해상 실크로드의 기점으로 삼으며 대만은 푸젠성 항만 인프라 투자 및 해운센터 공동건설을 지원함<sup>22)</sup>

18) 허재철 외(2020), pp. 12~13.

19)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대내외저세) 차이잉원 총통, 美 <<TIME>>지 인터뷰 실시」, 2020. 1. 10., [http://overseas.mofa.go.kr/tw-ko/brd/m\\_1456/view.do?seq=134719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http://overseas.mofa.go.kr/tw-ko/brd/m_1456/view.do?seq=134719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검색일자: 2020. 10. 13.

20)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회위원회, “Monthly Report(2020. 9)-STATISTICS ON APPROVED MAINLAND INVESTMENT BY AREA,” [https://www.moeaic.gov.tw/news.view?do=data&id=1472&lang=en&type=business\\_ann](https://www.moeaic.gov.tw/news.view?do=data&id=1472&lang=en&type=business_ann), 검색일자: 2020. 10. 21.

21) 양평섭 외(2012), pp. 156~158.

22) 김홍원 외, 『중국 ‘일대일로’중점지역의 추진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pp. 13~16.

- 중국과 맺은 ECFA가 전면 실시된 이후, 대만에서 푸젠성으로 투자한 액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나 2020년 1월부터 9월 투자액수는 장쑤성(13억 7,290만 5천달러)보다 7천만달러정도 더 증가함
- 對중국 투자를 제외한 업종별 투자분야는 금융·보험(62%), 비철금속 제조(9.5%), 도·소매(4.5%), 기계설비 제조(4.2%), 금속제품 제조(4.1%) 순으로 투자액수가 많음
- 중국으로 투자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전자부품(21.7%) 제조업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도·소매업, 화학재료, 컴퓨터·전자제품, 비철금속 제조업 순임

#### 다. 대만의 對한국 ODI

- 대만이 한국에 투자하는 산업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편이며 주로 M&A보다는 그린필드 투자로 한국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그린필드 투자(Green field Investment)란 국외자본이 투자할 때 용지를 직접 매입하고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를 의미하며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브라운필드 투자(Brown field Investment)인 M&A방식과 대조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sup>23)</sup>

〈표 1-11-7〉 최근 3년간 대만의 對한국 ODI 투자액수<sup>1)</sup>

(단위: 백만달러)

KSIC분류	투자종류	2017	2018	2019	합계
전체 산업 <sup>2)</sup>	전체	13,761,391	17,267,824	3,012,906	34,042,121
	M&A	6,795,052	5,218,634	1,302,839	13,316,525
	그린필드	6,966,339	12,049,175	1,710,067	20,725,580

23) 『매일경제』, 「[新경제용어] 그린필드(Green field Investment)」,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0/11/595565/>, 검색일자: 2020. 9. 27.

〈표 1-11-7〉의 계속

KSIC분류	투자종류	2017	2018	2019	합계
제조업	전체	5,609,541	6,994,734	938,136	13,542,411
	M&A	3,582,427	1,946,482	423,343	5,952,252
	그린필드	2,027,114	5,048,252	514,793	7,590,159
서비스업	전체	7,980,460	10,163,157	1,338,708	19,482,326
	M&A	3,064,134	3,195,903	150,808	6,410,846
	그린필드	4,916,326	6,967,238	1,187,900	13,071,464

주: 1) 투자액수는 도착액수 기준임

2) 전체 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수산·광업,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http://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검색일자: 2020. 9. 25.

- 최근 3년간 대만의 한국 ODI 투자액을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화학공업 분야와 운송용 기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 정보통신, 도·소매(유통) 분야에서 활발히 투자하고 있음

〈표 1-11-8〉 최근 3년간 대만의 對한국 상위 5개 산업 ODI 투자액수

(단위: 백만달러)

KSIC분류		2017	2018	2019	합계
제조업	화공	2,181,349	1,273,043	210,392	3,664,784
	운송용 기계	673,081	4,580,088	99,693	5,352,861
서비스업	도·소매(유통)	1,090,862	1,304,313	769,384	3,164,559
	정보통신	883,388	2,833,134	93,945	3,810,467
	금융·보험	3,233,570	3,400,620	360,091	6,994,281

주: 전체 통계에서 상위 5개 산업과 투자 액수만 추출한 것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http://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검색일자: 2020. 9. 25.

#### 4. 양안관계

- 양안관계는 대만의 국민당이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에게 패배한 뒤 시작되었으며 국민당이 대만을 통치하면서 약 30년간 중국과 대립관계를 유지했음<sup>24)</sup>
- 양안은 1992년 9·2 합의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해석은 각자 의견을 존중하자는 데 합의함<sup>25)</sup>
  - 9·2 합의는 양안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인식을 나타내지만 합의 내용이 문서로 발표되지 않았고 하나의 중국에서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는지 중화민국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함<sup>26)</sup>
    - 중국은 평화통일 및 일국양제를 통일 정책으로 제시한 반면, 대만은 삼불정책(불접촉, 불담합, 불타협)과 삼민주의(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제시함
- 1996년 총통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국민당과 민진당의 정권교체가 반복되면서 양안 관계가 축소되거나 확대됨을 반복하였음
  - 국민당은 양안의 안정적인 관계를 위하여 중국 본토와 교류 및 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민진당은 당 현장에 대만 독립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에 신중 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냄<sup>27)</sup>
- 한편 양안 간 교역은 중국과 대만의 WTO가입을 계기로 상호 교역이 크게 확대되었음<sup>28)</sup>
  - 특히 홍콩이 자유무역지역으로서 양안 간 거래 비용을 낮추고 정치적 제약 요인을

24) 허재철 외(2020), p. 4.

25) 박정하(2019), p. 4.

26) 허재철 외(2020), p. 3.

27) 공유식·강준영, 「타이완 차이잉원의 탈중국정책-양안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탐라문화』, 제5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pp. 389~412(허재철 외, 2020, p. 3에서 재인용)

28) 대만 중화경제연구원 전문가와의 인터뷰, 타이베이, 2019. 10. 2.(허재철 외, 2020, p. 12에서 재인용)

완화하는 역할을 하면서 중개무역지로 양안 간의 무역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음

- 2010년에는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이하 ECFA)를 체결하였음
  - 800여 개 품목의 관세 단계적 철폐, 원자력 안전 협력 협의, 5대 신흥산업(LED 조명, 전기자동차, 저온물류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함<sup>29)</sup>
  - 조기수확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이하 EHP)은 2011년 1월부터 발효하여 관세양허가 가능한 일부 대만산 539개 품목, 중국산 267개 품목부터 조기 영세율화하는 방안임
    - ECFA로 인해 대만이 對중국 수출에서 농산품 중심으로 200억달러 정도 관세 혜택을 얻고 있음<sup>30)</sup>

〈표 1-Ⅱ-9〉 ECFA로 인한 대만의 관세 감면액

(단위: 억달러)

연도	EHP 수출액	관세감면액
2017년	227.41	11.16
2018년	236.29	11.80
2019년 1~7월	116.32	5.88

자료: 외교부, 「(경제동향) ECFA의 효과 및 종결 가능성」, 2019. 12. 13., [http://overseas.mofa.gov.kr/tw-ko/brd/m\\_1458/view.do?seq=134666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http://overseas.mofa.gov.kr/tw-ko/brd/m_1458/view.do?seq=134666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자: 2020. 10. 4.

29) 허재철 외(2020), p. 13

30) 『新頭殼』, 「若中國官方片面取消ECFA 經濟部: 影響5%出口」, 2019. 10. 2., <https://newtalk.tw/news/view/2019-10-02/306102>, 검색일자: 2020. 10. 2.; 林祖嘉, 「大選後的台灣經濟展望」, 『國政分析』, 2020. 1. 15, <https://www.npf.org.tw/3/22177>, 검색일자: 2020. 10. 2.(허재철 외, 2020, p. 13에서 재인용)



- 중화권(중국-대만-홍콩)의 역내 무역 교류에서 2001년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대만의 무역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1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콩, 중국-대만의 형태로 무역구조가 변화함<sup>31)</sup>
- 대만 경제는 중국으로 부품 및 반제품을 수출해 중국에서 완성품을 생산한 뒤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의 최대 수출 지역임<sup>32)</sup>
- 대만의 공급사슬 구조상 미중무역전쟁에서 대만도 적지 않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함
  - 특히 대만의 반도체 및 IT제품 등 전자산업은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sup>33)</sup>

---

31) 양평섭 외(2012), pp. 64~71.

32) 박정하(2019), p. 8.

33) 『연합경제』, 「미중 무역전쟁에 대만도 긴장...“가장 큰 손실입을 국가”」, 2018. 7. 5.,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5134900009>, 검색일자: 2020. 10. 19.

### Ⅲ.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 1. 수출입 동향

- 2019년 대만 對한국 무역수지는 -52백만달러로 적자였으나 2018년에는 4,046백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였음
- 2016년부터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은 (+)였으나 2019년에는 (-)였음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만은 제6위 수입국이자 제4위 수출국임

〈표 1-Ⅲ-1〉 최근 10년간 대만의 對한국 수출입금액과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2010	14,830	56.1	13,647	-9.9	1,183
2011	18,206	22.8	14,694	-1.5	3,512
2012	14,815	-18.6	14,012	-10.3	803
2013	15,699	6.0	14,633	-7.2	1,066
2014	15,077	-4.0	15,690	10.8	-613
2015	12,004	-20.4	16,654	-0.3	-4,650
2016	12,220	1.8	16,403	4.4	-4,183

〈표 1-III-1〉의 계속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2017	14,898	21.9	18,073	18.2	-3,175
2018	20,784	39.5	16,738	-9.5	4,046
2019	15,666	-24.6	15,718	15.1	-52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국가의 수출입」,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DetailPopup.screen>, 검색일자: 2020. 9. 23.

## 2. 수출입 주요 품목

- 한국과 대만의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대만과의 무역수지는 2014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8년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하였음
- 한국과 대만의 주요 수출입 품목으로는 반도체, 기초유분, 정밀화학원료, 기구부품, 기타석유화학제품 등 2019년 기준 양국의 10대 수출입물품이 유사함

〈표 1-III-2〉 2019년 한국의 對대만 상위 10개 수출입 품목

(단위: 천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sup>1)</sup>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기타 석유와 역청유,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5,068,410	113.7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6,738,840	-3.6
2	메모리	3,718,648	103.7	기타 전자집적회로	1,796,964	-8.6
3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2,362,222	10.4	메모리	824,064	-22.5
4	파라-크실렌	674,543	117.5	인쇄회로	495,846	-6.2

〈표 1-Ⅲ-2〉의 계속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sup>1)</sup>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5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204,036	-13.4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와 발광다이오드	357,388	37.8
6	인쇄회로	337,724	31.2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238,110	31.7
7	벤젠	426,942	7.0	기타 부분품 <sup>2)</sup>	44,202	41.2
8	부분품과 부속품	285,070	65.5	카메라용·영사기용· 사진확대기용·사진축 소기용	259,975	-38.3
9	제7003호·제7004호· 제7005호의 유리	172,025	31.7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6,580	31.8
1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18,469	41.9	기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118,476	91.0

주: 1) 품목기준은 HS코드(6단위)임

2)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내통계-국가의 수출입」, [http://stat.kita.net/stat/kts/ctr/CtrlItemImpExpList.s](http://stat.kita.net/stat/kts/ctr/CtrlItemImpExpList.screen)  
creen, 검색일자: 2020. 9. 23.

## IV. 대만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 1.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 대만은 2020년 기준 총 8개의 FTA 또는 경제협력협정(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이하 ECA)을 체결했으며 상대국은 총 9개국이며 엘살바도르와 단교하면서 수교국은 15개국임<sup>34)</sup>
  - 최근 대만과 수교했던 중미 5개국(파나마,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에서 파나마와 엘살바도르는 중국과 수교함과 동시에 대만과 단교함
  - 이는 중국이 대만 수교국을 상대로 자국과 수교할 것을 압박하면서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 대만-파나마 FTA는 2004년 1월 최초 발효되어 파나마의 방직과 소고기 등 전체 수입의 70%에 해당하는 6,200개 항목에 대해 면세하였고 대만의 보안장비, 화학제품 등 4,610개 항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sup>35)</sup>
  - 파나마는 중국과 수교하게 되면서 대만과 단교하였으나 FTA는 유지하기로 합의함
  
- 과테말라와 체결한 FTA는 2006년 발효해서 양국 간 교역이 2005년 1억 3천만달러

34) 대만 ECA FTA공식 포털, 「경제합작협정-배경소개」, <http://fta.trade.gov.tw/index.asp>, 검색일자: 2020. 10. 4.

3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p. 22.

였던 것에 비해 61% 증가한 2억 9백만달러를 기록했음<sup>36)</sup>

- 대만산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관세 철폐, 과테말라산 농산물(견과류, 과일, 장식용 잔디, 나무 등)에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재협상을 거쳐 2020년 4월 1일 재발효했음
  
- 대만-니카라과 FTA는 2004년 8월부터 협상개시에 합의하고 2004년 9월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가 2007년 10월 대만에서 양측의 협정 비준서 교환식이 개최됨<sup>37)</sup>
  - 니카라과는 3,374개 대만산 품목에 대한 면세 우대를 즉각 실시하고 대만은 5,797개 니카라과산 품목에 관세를 면제함
  - 니카라과와의 FTA를 통해 미국과 니카라과 간 체결된 중 미주자유무역협정(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CAFTA)을 활용할 수 있어 미국 시장 개척을 확대할 목적임
  - 2008년 발효 후 2017년 11월 3일 니카라과와 대만 정부는 FTA협정의 재검토를 통해 관세 면제 혜택을 확대했음<sup>38)</sup>
  
- 대만-엘살바도르-온두라스 3국 간에 체결된 FTA에서 엘살바도르는 즉시 3,500개 대만산 품목에 관세를 면제하고 대만은 엘살바도르산 5,622항목에 관세를 즉시 면제하기로 서명함<sup>39)</sup>
  - 한편 엘살바도르가 2018년 8월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의 외교를 단절하여 2008년 체결된 FTA를 2019년 3월 15일 철폐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은 FTA협정 철폐를 잠정 중단할 것을 명령함
  - FTA 협정으로 인해 엘살바도르 사탕업계는 연간 8만톤에 달하는 對대만 수출 물량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FTA협정 철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할

36) *Taiwan Today*, “4 Taiwan-Guatemala FTA decisions take effect,” 2020. 4. 1., <https://taiwantoday.tw/news.php?unit=6,7,8&post=174732>, 검색일자: 2020. 10. 6.

37) 외교부, 「대만-니카라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서 교환」, 2007. 10. 12., [http://overseas.mofa.go.kr/tw-ko/brd/m\\_1452/view.do?seq=880904&srchFr=&am](http://overseas.mofa.go.kr/tw-ko/brd/m_1452/view.do?seq=880904&srchFr=&am), 검색일자: 2020. 10. 2.

38) *Focus Taiwan*, “Taiwan, Nicaragua review free trade pact, expand benefits,” 2017. 11. 3., <https://focustaiwan.tw/business/201711030017>, 검색일자: 2020. 10. 6.

39) 외교부, 「대만,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와 FTA 체결(2007. 5. 7.)」, 2007. 5. 14., [http://overseas.mofa.go.kr/tw-ko/brd/m\\_1452/view.do?seq=880892&srchFr=&](http://overseas.mofa.go.kr/tw-ko/brd/m_1452/view.do?seq=880892&srchFr=&), 검색일자: 2020. 10. 8.

것을 우려하여 대법원에 청구함<sup>40)</sup>

- 반면 대만과 온두라스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FTA를 통해 온두라스는 대만산 약 3,881항목에 즉시 관세 면제를 실시했고 대만은 온두라스산 6,135개 항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면제했음
  - 10년 후 대만은 93%의 품목을 온두라스에 완전 개방하고 온두라스는 70.3%의 품목을 대만에 완전 개방하기로 서명함
  
- 중국과 대만은 2010년 6월 29일 ECFA를 체결하였고 2011년 1월부터 EHP를 통해 대만은 총 539개 품목, 중국은 총 267개 품목에 대해 조기자유화 양허를 받았음<sup>41)</sup>
  - ECFA 체결로 양안 간 경제 및 외교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으나 2020년 초 대만의 총통선거 과정에서 ECFA 중단우려가 제기되기도 함
    - 다만 양측 정부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
  - ECFA로 인한 대만의 관세감면액은 지난 10년간 총 70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중국의 관세감면액은 6억달러로 대만에 미친 관세감축효과가 약 10배 큼
  - 조기수확제품의 對중국 수출 증가율은 6.01%이고 대만 전체 제품의 수출 증가율은 3.16%로 對중국 수출 제품의 증가율이 전체 제품 수출 증가율에 비해 2배 가량 높아 ECFA가 종결된다면 대만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대만과 뉴질랜드는 2011년 10월 25일부터 ECA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한 지 1년 10개월만인 2013년 7월 10일 대만-뉴질랜드 경제협력협정(Agreement between New Zealand 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on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ZTEC)을 체결했음<sup>42)</sup>

40) Reuters, "El Salvador top court suspends scrapping of Taiwan trade accord," 2019. 3. 14., <https://www.reuters.com/article/us-el-salvador-taiwan-idUSKCN1QU340>, 검색일자: 2020. 10. 6.

41) 허재철 외(2020), p. 13.

42) 대만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co-host reception to celebrate Taiwan-New Zealand ECA," 2013. 7. 17., [https://en.mofa.gov.tw/News\\_Content.aspx?n=1EADDCFD4C6EC567&sms=%205B9044CF1188EE23&s=68BC50146C47CB1B](https://en.mofa.gov.tw/News_Content.aspx?n=1EADDCFD4C6EC567&sms=%205B9044CF1188EE23&s=68BC50146C47CB1B), 검색일자: 2020. 10. 12.

- 비수교국과 맺은 첫 경제협력이며 뉴질랜드는 대만의 12대 교역국임
-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대만과 최초로 경제협력을 체결하였으며 양국이 체결한 대만-싱가포르 경제협력협정(Agreement between Singapore 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on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STEP)은 2014년 4월 19일 발효됨
  - 싱가포르는 대만의 5대 교역국이자 4대 수출국이며 8대 수입국이고 담배나 주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없음
- 대만-파라과이 ECA는 2017년 7월 12일 체결했으며 2018년 2월 발효되었고 양국 수교 60년만에 맺은 협정으로 파라과이는 남미지역 중 유일한 수교국임
  - 남미공동시장(MERCOSUR, 이하 남미공동시장)과 남미공동시장의 FTA 체결국인 제3국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목적임<sup>43)</sup>
  - 총 73개 품목중 대만은 54개 품목, 파라과이는 19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인하에 합의함
  - 파라과이는 대만산 19개 품목에 대해 남미공동시장보다 낮은 관세율 혜택을 약속함
- 대만과 스와질란드(이하 에스와티니) ECA는 수교 50주년을 맞아 2018년 6월 8일 체결하였음
  - 양자간 ECA는 직접적인 교역확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만은 에스와티니를 아프리카 시장 개척의 교두보로 삼고자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예상됨<sup>44)</sup>
    - 에스와티니는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43) KOTRA 해외시장뉴스, 「대만-파라과이 경제협력협정 체결」, 2017. 8. 4.,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0164>, 검색일자: 2020. 10. 4.

44) KOTRA 해외시장뉴스, 「대만-스와질란드 경제협력협정 곧 발효」, 2018. 11. 13.,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0968>, 검색일자: 2020. 10. 4.



이하 SADC),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이하 COMESA),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이하 AfCFTA) 회원국으로 에스와티니와의 ECA를 통해 대만은 아프리카 약 20개국 시장개척에 유리해졌음

- 마셜제도(Marshall Islands)는 1990년 중국과 수교하였으나 대만과 1998년 수교하면서 중국과 단교하였고 대만과 마셜제도는 2019년 10월 25일 ECA를 체결함

〈표 1-IV-1〉 대만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협정	발효일	만료일 <sup>1)</sup>
대만-파나마 FTA	2004년 1월 1일	2013년
대만-과테말라 FTA	2006년 7월 1일	2020년
대만-니카라과 FTA	2008년 1월 1일	2022년
대만-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 FTA	2008년 3월 1일(엘살바도르) 2008년 7월 15일(온두라스)	2027년
대만-중국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2010년 9월	2020년
대만-뉴질랜드 경제협력협정(AZTEC)	2013년 12월 1일	2025년
대만-싱가포르 경제협력협정(ASTEP)	2014년 4월 19일	2028년
대만-파라과이 ECA	2018년 2월 28일	-
대만-에스와티니 ECA	2018년 12월 27일	-
대만-마셜제도 ECA	2019년 10월 25일	-

주: 1) 만료일은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파라과이, 에스와티니, 마셜제도와 체결한 ECA는 만료일이 입력되어 있지 않아 기입하지 않음

자료: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FTAs signed with trading partners," <https://www.trade.gov.tw/english/Pages/List.aspx?nodeID=672>, 검색일자: 2020. 10. 2.

## 2. 협상 중인 무역협정

-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 성공으로 인해 대만 정부가 향후 동남아시아 10개국과 남아시아 6개국,<sup>45)</sup> 오세아니아 2개국<sup>46)</sup>과 무역교류를 확대하며 신남향정책 추진을 강화할 것

으로 예상함

-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를 중심으로 신남향정책을 통해 산업 공급망의 통합, 현지 내수시장 개발, 인프라 건설 협력 확대 및 새로운 경제무역의 파트너십 확립을 추진 중임
    -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형 종합농업단지를 설립했고 대만을 대표하는 6개 대형 종합병원이 ASEAN 6개국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다만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신남향정책 도입 이전부터 FTA 협상 의지를 표명하거나 타당성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실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음<sup>47)</sup>
  - 한편 대만의 신남향정책은 한국의 신남방정책 대상국과 중첩되어 있어 경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음<sup>48)</sup>
- 2006년 10월 도미니카공화국과 FTA체결 협상을 하고 추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7년 FTA체결을 위한 재협약<sup>49)</sup>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으나 2018년 5월 1일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정식 수교를 맺음<sup>50)</sup>
- 대만-EU FTA는 2008년 협상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EU 측은 정치적 인 이슈를 문제로 FTA 체결을 반대했음<sup>51)</sup>

45)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부탄

46)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47) TradeNavi(종합무역정보서비스), 「주요국별 FTA 추진 동향-대만」, <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117>, 검색일자: 2020. 10. 4.

48) 허재철 외(2020), p. 17.

49) KOTRA 해외시장뉴스, 「도미니카공화국, 대만과 FTA 및 쿠바와 AAP 체결 추진 중」, 2017. 5. 30.,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8960>, 검색일자: 2020. 10. 4.

50) 『연합뉴스』, 「도미니카, 中수교 발표 한시간 전 대만에 단교 통보」, 2018. 5. 2., <https://www.yna.co.kr/view/AKR20180502100251009>, 검색일자: 2020. 10. 4.

51) KOTRA 해외시장뉴스, 「대만-EU, FTA 대신 TEM 체결 유력」, 2008. 10. 9.,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781/globalBbsDataAllView.do?dataIdx=456>

- 대만은 對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FTA 체결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에 이어 최근 미국과의 FTA 체결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sup>52)</sup>
-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TPP)을 탈퇴하자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CPTPP)에 가입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15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함<sup>53)</sup>

### 3. 기타 협정

- 1992년 한국과 대만의 단교로 인해 양국 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었으나 2004년 9월 1일 대만과 항공협정이 체결된 결과 정기 항공 노선이 운영되고 있음<sup>54)</sup>
- 반면 한국과 대만은 이중과세방지협약, 투자보장협정 및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세관 상호지원협정은 체결되어 있지 않음<sup>55)</sup>

---

69&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earchIndustryCatIdx=&page=245&row=100, 검색일자: 2020. 10. 4.

52) Shannon Tiezzi, "Tsai Clears the Way for a US-Taiwan Trade Agreement", *The Diplomat*, 2020. 8. 29., <https://thediplomat.com/2020/08/tsai-clears-the-way-for-a-us-taiwan-trade-agreement/>, 검색일자: 2020. 10. 4.

53) KOTRA 해외시장뉴스, 「대만, CPTTP 가입 위해 15개 품목 관세인하」, 2019. 7. 9.,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76192>, 검색일자: 2020. 10. 4.

54) 외교부, 「우리나라의 항공협정 체결 현황」, <http://www.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10308110543637.hwp&rs=/viewer/result/202103>, 검색일자: 2020. 10. 4.

55) 외교부, 「우리나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 <http://www.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10305044045078.hwp&rs=/viewer/result/202103>, 검색일자: 2020. 10. 4.; 외교부, 「우리나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황」, <http://www.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10305045157704.hwp&rs=/viewer/result/202103>, 검색일자: 2020. 10. 4.; 외교부, 「우리나라의 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 현황」, <http://www.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10305045512225.hwp&rs=/viewer/result/202103>, 검색일자: 2020. 10. 4.; 외교부, 「우리나라의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현황」, <http://www.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10305044958941.hwp&rs=/viewer/result/202103>, 검색일자: 2020. 10. 4.

## 제2편 통관제도

### I. 통관 관련 조직 및 관련 법

#### 1. 통관조직<sup>56)</sup>

- 대만 재정부(Ministry of Finance)는 관세업무를 포함한 국유재산 관련 재정 기획, 국제금융, 회계, 통계, 국세, 정부조달 등 국가재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sup>57)</sup>
- 중화민국 건국 이전 청나라 통치기에 세관총세무사서에서 최초로 통관 및 수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중화민국 건국 이후 「재정부 관세총국 조직 조례」를 1980년 8월 2일 발표하면서 재무부 관세총국으로 명칭이 개칭됨
  - 중화민국력 102년 1월 1일 행정원을 조직 개혁하면서 재정부 관무서를 설립함
- 대만 재정부 관무서(Customs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 이하 재정부

---

56) 대만 재정부 관무서, "Function," [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2115?cntId=cus\\_16\\_2115\\_2115\\_735](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2115?cntId=cus_16_2115_2115_735), 검색일자: 2020. 10. 5.

57) 대만 재정부, "Organization & Functions," <https://www.mof.gov.tw/Eng/multiplehtml/6967>, 검색일자: 2020. 10. 5.

관무서)에서 수출입 통관업무 및 관세 징수, 밀수 및 부정 수출입 단속, 보세구역 관리, 관세 정책 홍보·기획·감독, 무역통계 등 관세와 통관 관련 업무를 관할하며 한국의 관세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재정부 관무서 본부에는 총국장과 제1직무대리·제2직무대리 부국장이 있으며 6개의 조(department)와 비서실을 포함한 6개의 실(office)로 구성됨
  - 통관업무조(Department of Customs Clearance Affair)
  - 관무정보조(Department of Information Management)
  - 검업조사조(Department of Audit Affairs)
  - 세칙법제조(Department of Tariffs and Legal Affairs)
  - 관무조사조(Department of Investigation)
  - 종합기획조(Department of Planning)
- 재정부 관무서에는 4개의 직속세관이 있음
  - 지룽세관(Keelung Customs, 이하 지룽세관), 타이베이세관(Taipei Customs, 이하 타이베이세관), 타이중세관(Taichung Customs, 이하 타이중세관), 가오슝세관(Kaohsiung Customs, 이하 가오슝세관)

〈표 2-1-1〉 대만 재정부 관무서 부서별 업무

관무서 부서	부서별 세부 과	담당 업무
통관업무조	수입업무과	통관, 세금과 요금 징수와 면제, 수송 수단, 창고와 관세 사뿐만 아니라 공장 보세창고, 면세점(해외 섬 포함), 물류센터, 수출 처리 지역, 과학 기반 산업 공원, 자유무역 지대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에 관여함
	수출업무과	
	통관 관련 업자관리과	
	수수료업무과	
관무정보조	조사기획과	세관통관 정보처리 및 세관 IT 인프라 관련 업무
	정보과	
	과학기술조사과	
	리스크관리과	
	주세포탈규정과	
	약물탐지견훈련과	

〈표 2-1-1〉의 계속

관무서 부서	부서별 세부 과	담당 업무
검입조사조	관세평가기획과	수입품의 관세평가, 수입·수출 상품의 통관 사후심사 업무, 자유무역항만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음
	관세평가사후조사과	
	보세업무과	
	자유무역업무과	
세칙법제조	제1품목분류과	수입·수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담당하며 「관세법」과 관련 규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배상법(State Compensation Law)」 <sup>1)</sup> 적용을 관리함
	제2품목분류과	
	제3품목분류과	
	품목분류기획과	
	법제과	
관무조사조	정보전략기획과	관세행정, 신속한 수출입 통관 및 물류서비스, AEO, 수출입 무역통계 시스템, CPT포털, 각종 재정부 관무서 네트워크 및 인프라 설계·관리·감독
	수입응용서비스과	
	수출응용서비스과	
	행정정보서비스과	
	정보통신자원관리과	
	정보통신인프라과	
종합기획조	평가과	관세 업무, 특별관세와 국제관세 협력문제의 기획 및 평가
	국제사무과	
	특별관세과	
	기획과	
비서실	문서과	공식적인 인장 배서와 공식 문서 파일 정리와 서신 교환, 총무, 출납원 문제, 시설의 정비, 홍보 등을 담당함
	공관과	
	기록보관과	
	사무과	
	출납과	
통계실	종합과	수출입 무역 데이터와 기타 통계 관련 업무의 정보수집, 컴파일, 보고서 작성
	수입과	
	수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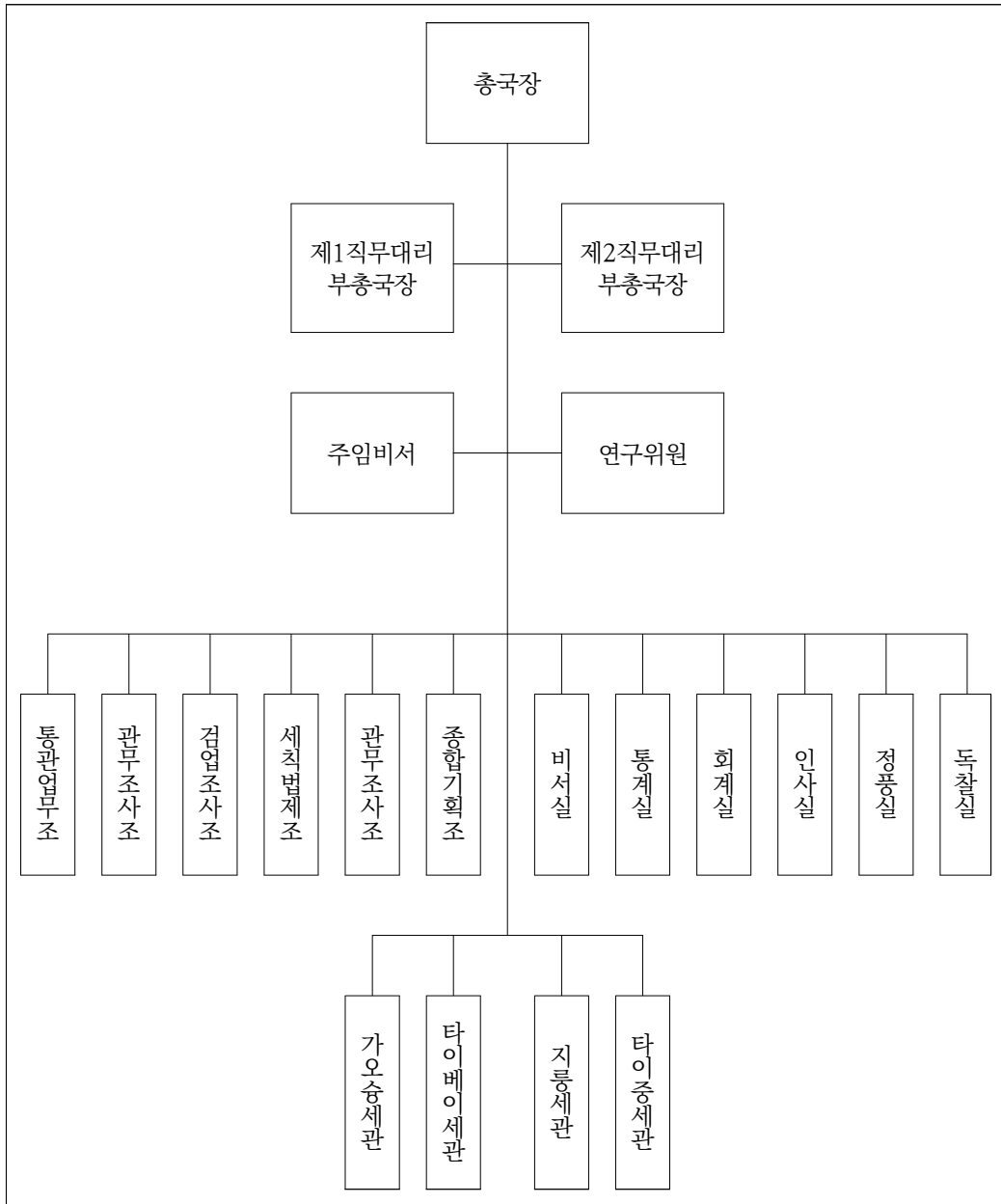
〈표 2-1-1〉의 계속

관무서 부서	부서별 세부 과	담당 업무
회계실	세금회계과	회계, 예산 및 감사 관련 업무를 전담
	세입과	
	세출과	
인사실	인사과	세관 직원과 현장파견 세관직원 감독
	근무평가과	
	급여과	
정풍실	예방과	세관 공무원의 법규 준수 상태를 평가하고 청렴 윤리, 부정부패를 단속하며 재산 신고를 담당함
	조사과	
독찰실	제1독찰과	세관 공무원의 윤리 준수, 기강 유지 관리
	제2독찰과	
	제3독찰과	
	제4독찰과	

주: 1) 대만의 행정법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 "Organization Chart," [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2115?cntId=cus16\\_2115\\_2115\\_734](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2115?cntId=cus16_2115_2115_734), 검색일자: 2020. 10. 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4개의 직속세관은 12개 분국 및 지국을 세부적으로 관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수입관세 및 물품세, 부가가치세, 담배 및 주류세 징수
  - 수출입 통관
  - 밀수 방지 및 밀수품, 운송, 대리인 관리
  - 보세공장 및 보세창고 관리 및 감독
  - 수출입 물품 창고와 컨테이너 장치장 감시 및 관리
  - 세관의 감시선 및 통신장비의 유지 관리
  - 기타 정부기관 지원 및 관련 기관의 규정 실행

[그림 2-1-1] 대만 재정부 관무서 조직도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 "Organization Chart," [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2115?cntId=cus16\\_2115\\_2115\\_734](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2115?cntId=cus16_2115_2115_734), 검색일자: 2020. 10. 1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지룽세관은 2019년 관세수입(customs revenue)이 686억신대만달러로 전국 관세 수입의 55.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징수(tax collection)는 약 1,551억신대만 달러로 4대 지역세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함<sup>58)</sup>
  - 2019년 총1,489건의 밀수 행위를 적발해 압수했으며 그 금액은 104억 6천만 신대만달러에 달함
  
- 가오슝세관은 대만 남부의 해상 및 항공화물을 모두 처리하는 유일한 세관이며 4개의 세관 중 가장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함<sup>59)</sup>

## 2. 통관 관련 법

### 가. 대만의 법률체계

- 대만의 법은 「중앙법규기준법(Central Regulation Standard Act, 이하 중앙법규기준법)」<sup>60)</sup>에 따라 법률은 법, 룰, 조례, 통칙으로 구분됨<sup>61)</sup>
  - 법률은 입법원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며 총통의 공포로 시행됨
  - 원칙적으로 법은 일반적인 규정을, 조례는 특별규정을 규정하며 율은 전쟁 시 따라야 하는 규정들을 가리키나 현재는 폐지되었고, 통칙은 조직을 규정함<sup>62)</sup>
  - 명령은 행정기관이 공포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성격은 규정, 규칙, 세칙, 방법,

58) 대만 지룽세관, 「機關業務」, <https://keelung.customs.gov.tw/singlehtml/3096>, 검색일자: 2020. 12. 24.

59) 대만 가오슝세관, “Characteristics,” <https://ekaohsiung.customs.gov.tw/singlehtml/1409>, 검색일자: 2020. 10. 10.

60) 대만국가법령센터, 「중앙법규기준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A0030133>, 검색일자: 2020. 10. 12.

61) 「중앙법규기준법」 제2조

62) 세계법제정보센터, 「대만의 법률 및 입법체계」, 2016. 5. 11., p. 7., [http://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39250&AST\\_SEQ=299&ETC=4](http://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39250&AST_SEQ=299&ETC=4), 검색일자: 2020. 10. 10.

강요, 표준 또는 준칙으로 구분되며 헌법과 법률의 규정과 위배될 수 없음<sup>63)</sup>

- 「관세법(Customs Law, 이하 관세법)」<sup>64)</sup>은 대만의 통관 관련 주요 법으로 재정부 관무서 및 직속세관이 수출입화물 통관과 관세 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따름<sup>65)</sup>
  - 1967년 8월 8일 제정되었고 2018년 4월 13일에 개정되었으며 총 제7장 제103조로 구성됨
  
- 「관세법」은 밀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고 위반 사항에 대한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목적으로 개정됨<sup>66)</sup>
  - 밀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교토협약 등 국제적인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를 따르기 위해서 「관세법」 제17조, 제84조 및 제96조를 수정하고 「세관밀수방지조례(Customs Anti-smuggling Act, 이하 세관밀수방지조례)」<sup>67)</sup> 초안을 제정하여 2018년 5월 11일부터 전면 적용하였음
  - 신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국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84조 제2항(누락신고 부분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을 신설하였고, 제96조(수입금지품목의 대만 내 물품 처분기간)에서 수입금지품목의 대만 내 물품 처분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였음
  
- 「관세법 시행세칙(Enforcement Rules of the Customs Act, 이하 관세법 시행세칙)」<sup>68)</sup>은 「관세법」에 명시된 사항들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63) 세계법제정보센터(2016), p. 8.

64) 대만국가법령센터, 「관세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50001>, 검색일자: 2020. 10. 13.

65) 「관세법」 제1장 제1조

66) 대만 행정원, “Customs Act to be amended for enhanced efficiency,” 2012. 12. 13., <https://english.ey.gov.tw/Page/61BF20C3E89B856/ac5ca4e8-3cee-4d7f-8b18-d4ed4ab7767d>, 검색일자: 2020. 10. 10.

67) 대만국가법령센터, 「세관밀수 방지조례」,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50029>, 검색일자: 2020. 12. 4.

68) 대만국가법령센터, 「관세법 시행세칙」,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50002>, 검색일자: 2020. 12. 4.

〈표 2-1-2〉 대만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세칙」 구조

「관세법」			「관세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통관절차	제1절	세관신고 및 검험	제2장	통관절차	제1절	세관신고 및 검험
		제2절	완세가격			제2절	완세가격
		제3절	납세기한과 행정구제				
제3장	관세	제1절	면세	제3장	관세우대	제1절	면세
		제2절	보세			제2절	보세
		제3절	세금환급			제3절	세금환급
		특별관세	제4장	특별관세			
		벌칙	제5장	벌칙			
		집행	제6장	집행			
		부칙	제7장	부칙			

자료: 대만 「관세법」; 대만 「관세법 시행세칙」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 재정부 관무서 제정 명령

- 통관 관련 기본법규(General Laws) 중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세칙」에서 대부분의 통관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표 2-1-3〉 대만 통관 관련 기본법규

기본법규	발표일
「세관미수방지처벌감면표준」(海關緝私案件減免處罰標準)	2018. 9. 3.
Standards of Minor Breaches for the Application of Customs Anti-Smuggling Act	
「관세법 시행세칙」(關稅法施行細則)	2018. 8. 31.
Enforcement Rules of the Customs Act	
「관세법」(關稅法)	2018. 5. 9.
Customs Act	

〈표 2-1-3〉의 계속

기본법규	발표일
「세관밀수방지조례」(海關緝私條例)	2018. 5. 9.
Customs Anti-smuggling Act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작업규정」 <sup>1)</sup> (進口貨物估價預先審核作業規定)	2018. 4. 19.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進口貨物原產地預先審核實施辦法)	2017. 7. 17.
Regulations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Advance Ruling on the Country of Origin of Imported goods	
「세관수출입통관 사후조사 실시방법」 <sup>2)</sup> (海關事後稽核實施辦法)	2017. 6. 7.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시방법」(進口貨物估價預先審核實施辦法)	2017. 6. 1.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Customs Valuation Advance Ruling on Imported Goods	
「세관수출입통관 사후조사 작업규정」 <sup>3)</sup> (海關事後稽核作業規定)	2017. 2. 21.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조치 실시방법」(平衡稅及反傾銷稅課徵實施辦法)	2016. 2. 2.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세관집행 할당관세 작업규정」 <sup>4)</sup> (海關執行關稅配額作業規定)	2015. 11. 6.
「세관수수료 징수규칙」(海關徵收規費規則)	2015. 9. 25.
Regulations Governing Collection Of Customs Service Fees	
「수입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시방법」(進口貨物稅則預先審核實施辦法)	2015. 4. 27.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Advance Tariff Classification Ruling on Imported Goods	
「관세CCC코드통일 및 품목분류 변경 시 주의사항」 <sup>5)</sup> (海關辦理統一及變更進口貨物稅則號別應注意事項)	2015. 4. 22.
「세관밀수방지 기계 사용방법」 <sup>6)</sup> (海關緝私器械使用辦法)	2015. 1. 26.
「수입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주의사항」 <sup>7)</sup> (進口貨物稅則預先審核注意事項)	2013. 3. 4.
「관리통제물품 항목 및 관리 통제방식」 <sup>8)</sup> (管制物品管制品項及管制方式)	2012. 7. 26.
「밀수징계조례」(懲治走私條例)	2012. 6. 13.
The Smuggling Penalty Act	

주: 1. 대만 재정부 관부서 증문판 웹페이지상 검색 결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규정들은 정식 영문 번역 규정명을 제공하지 않아 원문을 기재함

1) 대만 재정부법규검색포털,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작업규정」, <https://law-out.mof.gov.tw/LawContent.aspx?id=GL000266#lawmenu>, 검색일자: 2020. 10. 8.

2)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세관수출입통관 사후조사 실행방법」,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G0350055>, 검색일자: 2020. 10. 8.

- 3) 대만 재정부법규검색포털, 「세관수출입통관 사후조사 실시방법 작업규정」, <https://law-out.mof.gov.tw/LawContent.aspx?id=FL006366>, 검색일자: 2020. 10. 8.
- 4) 대만 재정부법규검색포털, 「세관집행 할당관세 작업규정」, <https://law-out.mof.gov.tw/LawContentSource.aspx?id=FL006344>, 검색일자: 2020. 10. 8.
- 5) 대만 재정부법규검색포털, 「관세 CCC 코드통일 및 품목분류 변경시 주의사항」, <https://law-out.mof.gov.tw/LawContent.aspx?id=GL009833>, 검색일자: 2020. 10. 8.
- 6)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세관밀수방지 기계 사용방법」,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50038&flno=1>, 검색일자: 2020. 10. 8.
- 7) 대만 재정부법규검색포털, 「수입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주의사항」, <https://law-out.mof.gov.tw/LawContent.aspx?id=GL009441>, 검색일자: 2020. 10. 8.
- 8) 대만 재정부 관무서, 「관리통제 물품항목 및 관리 통제방식」, [https://web.customs.gov.tw/News\\_Content.aspx?n=FB76F1E6517A12DC&sms=417FF20CE950A8AC&s=AFCCD607CAEFA1A0](https://web.customs.gov.tw/News_Content.aspx?n=FB76F1E6517A12DC&sms=417FF20CE950A8AC&s=AFCCD607CAEFA1A0), 검색일자: 2020. 10. 8.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 「關務法規-基本法規」, <https://web.customs.gov.tw/multiplehtml/34>, 검색일자: 2020. 10. 6.

### 3. 기타 관련 법 및 기관

#### 가. 대만 경제부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Bureau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이하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에서는 국가경제 정책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이하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는 외국산 물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경제부가 조직한다고 명시하고 있음<sup>69)</sup>
  -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하기 위해 대만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 조사를 담당함<sup>70)</sup>
- 대만의 11자리 품목분류 고유 번호인 CCC코드(The Commodities Classification

69) 「무역법」 제18조

70)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 “Oranization & Duties,” [https://www.moeaitc.gov.tw/ITC/english/content/wfrmContent.aspx?menu\\_id=139](https://www.moeaitc.gov.tw/ITC/english/content/wfrmContent.aspx?menu_id=139), 검색일자: 2020. 11. 3.

of the Republic of China Code, 이하 CCC코드)를 공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실시할 경우, 재정부 관무서와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동조하여 품목분류 코드를 결정하고 있음

- 「무역법(Foreign Trade Act, 이하 무역법)」<sup>71)</sup>은 2019년 12월 3일자로 개정되었고 대만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s Affairs, 이하 대만 경제부)에서 주관하며 대외 무역을 발전시키고 무역 자유화, 국제화 정신,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유 무역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담긴 법률임
  - 자유무역관리 및 수입구제(제2장), 무역촉진 및 지도(제3장), 벌칙(제4장), 수출입업자 불법행위 규정(제17조)
  - 제20조의2에 따르면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수출업자의 수출업무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무역법세칙(Enforcement Rules of the Foreign Trade Act, 이하 무역법세칙)」<sup>72)</sup>에서 「무역법」에 다른 내용들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음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Ministry of Economics Affairs, 이하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sup>73)</sup>에서 제정한 국가표준(Chinese National Standard, 이하 CNS)에 부합하는 식품 및 의약품만 대만 내에서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함
  - CNS는 강제성을 띠지는 않으나 외국 수출업체의 경우 신청인은 대만에 거주하는 내국인 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만에 거주하는 대리인이 필요함<sup>74)</sup>

71)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무역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090004>, 검색일자: 2020. 10. 13.

72)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무역법 세칙」,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090011>, 검색일자: 2020. 12. 4.

73)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Plans and Policies & Organization Chart,” <https://www.bsmi.gov.tw/wSite/ct?xItem=4074&ctNode=9145>, 검색일자: 2020. 10. 6.

7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2013), p. 40.

## 나. 대만 위생복지부

- 대만 위생복지부 질병관제서(Taiw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이하 대만 위생복지부 질병관제서)가 지정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세정제, 식품기구 및 용기 등은 수입허가인증을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함
  - 수입허가인증은 5년의 유효기한이 있으며 만기 3개월 전 연장신청이 가능함
  
- 「식품안전위생관리법(Act Governing Food Safety and Sanitation, 이하 식품안전 위생관리법)」<sup>75)</sup> 제17조에 의거하여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inistry of Health, 이하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의 식품위생기준을 갖춘 식품만이 대만 내에서 유통가능하며 수입식품 역시 식품 위생기준을 따라서 검역검사가 실행되고 있음<sup>76)</sup>
  - 한편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명시된 대로 식품 라벨링(labeling) 표기사항에 맞춰 품명, 내용물, 중량, 식품첨가물 명칭, 국내업체 명칭 및 전화 번호 주소, 원산지(국), 유효일자, 식품영양표시, 기타 위생서가 공고한 표기사항 등을 증문으로 표기해야 함<sup>77)</sup>
  - 「식품안전위생관리법시행세칙(Enforcement Rules of the Act Governing Food Safety and Sanitation, 이하 식품안전위생관리법시행세칙)」<sup>78)</sup>에서 「식품안전 위생관리법」상에 명시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음

## 다. 과학공업단지

- 과학공업단지(Science-based Industrial park)<sup>79)</sup>는 대만 과학기술부(Ministry of

75)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L0040001>, 검색일자: 2020. 10. 12.

76)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

77)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시행세칙」 제22조; 제24조

78)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시행세칙」,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L0040003>, 검색일자: 2020. 12. 3.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대만 과학기술부)가 설립한 거대한 산업 클러스터로 대만 정부에서 입주업체에게 관세 면제, 통관 지원 등 관세 행정뿐만 아니라 기타 행정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음

- 대만의 국토에 따라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눠서 과학공업단지를 개발함
  - 신주과학공업단지(Hsinchu Science Park, 이하 신주과학공업단지)는 국립칭화대(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국립자오통대학교(National Chiao Tung University) 및 국가정책연구원인 산업기술연구원(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과 인접해 산-학-연이 연계되어 있는 클러스터로 IT분야 중심의 단지임
  - 중부과학공업단지(Central Taiwan Science Park, 이하 중부과학공업단지)는 공항 및 항만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2018년 3월 기준 187개 기업과 9개 인큐베이션 센터, 6개의 연구기관이 위치해 있고 인공지능, 로봇, IoT, 그린에너지(green energy) 중심의 과학공업단지임
  - 남부과학공업단지(Southern Taiwan Science Park, 이하 남부과학공업단지)는 입주업체 직원들의 가족도 생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설립되어 있으며 쇼핑몰을 포함한 체육시설 등 여가 생활 단지를 조성했다는 것이 특징임
  
- 신주과학공업단지는 IoT, IT산업 중심단지로 특히 반도체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신주, 롱탄(Longtan Science Park), 주난(Jhunan Science Park), 통루어(Tongluo Science Park), 이란(Yilan Science Park), 신주 바이오메디컬(Hsinchu Biomedical Science Park) 단지로 구성되어 있음<sup>79)</sup>
  - 롱탄: 광전자(optoelectronics) 및 웨이퍼(wafer) 소재 제조산업 중심
  - 주난: 생명공학(biotechnology), 통신, 광전자 공학 중심
  - 통루어: 통신 및 우주전자(aero-electronics) 산업 중심

79) Science-based Industrial Park 혹은 Science Park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

80) 대만 과학기술부, "Introduction to the Hsinchu Science Park," <https://www.most.gov.tw/folksonomy/list/a365d856-3247-4937-8c76-0488f488d6ee?l=en>, 검색일자: 2020. 12. 3.



- 이란: 디지털 콘텐츠, 지식기반 통신산업 중심
- 신주 바이오메디컬 단지: 최첨단 바이오 메디컬산업 중심
- 중부과학공업단지는 6대 첨단산업(광전자, 집적회로, 생명공학, 정밀기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그린에너지)을 중심으로 타이중(Taichung Park), 후웨이(Huwei Park), 호우리(Houli Park), 얼린(Erlin Park), 충싱(Chung Hsing Park)으로 구성되어 있음<sup>81)</sup>
  - 타이중: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및 지역적 아름다움의 보존(preservation of a local look)이 목표임
  - 후웨이: 대만 고속철도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건강 및 자연 중심의 과학단지
  - 호우리: 광전자 공학 제조업체 중심의 과학공업단지
  - 얼린: 정밀기계 산업에 중점을 둔 과학공업단지
  - 충싱: 문화 창조 산업 및 첨단 연구 및 개발 중심
- 남부과학공업단지는 IC, 광전자, 생명공학, 정밀기계,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산업을 중심이며 가오슝(Kaoshung Science Park, 이하 가오슝 과학공업단지), 타이난(Tainan Science Park, 타이난 과학공업단지) 단지로 구성됨<sup>82)</sup>
  - 가오슝 과학공업단지: IT장비를 결합한 스마트 헬스케어 및 바이오 메디컬 중심의 산업단지임
  - 타이난 과학공업단지: 반도체 직접회로 산업 및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디스플레이 산업 등 전자제품의 소재·장비·부품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임

## 라. 대만 자유무역지역

- 대만 정부는 국제무역의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투자 유치, 최신 기술 도입, 일자리

81) 대만 과학기술부, "Introduction to the Central Taiwan Science Park," <https://www.most.gov.tw/folksonomy/list/fdf1fe1c-6cce-40e7-b9ff-69b3d917e219?l=en>, 검색일자: 2020. 12. 3.

82) 대만 과학기술부, "Introduction to the Southern Taiwan Science Park," <https://www.most.gov.tw/folksonomy/list/f43d9f1d-6012-4f77-b07a-dcab5b417aed?l=en>, 검색일자: 2020. 12. 3.

증가를 목표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함

- 입주기업들에게 수출입자유화와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수입관세 면제, 임대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외국물품들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내수목적으로 대만에 반입되는 시점에 관세를 부과함<sup>83)</sup>
  
- 대만의 자유무역지역은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EPZ, 이하 수출가공구)와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 이하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sup>84)</sup>
  - 「수출가공구 설치관리조례(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 이하 수출가공구 설치관리조례)」<sup>85)</sup>에서 수출가공구의 설립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 설치관리조례(Act f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s, 이하 자유무역지역 설치관리조례)」<sup>86)</sup>에 자유무역지역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는 해당 조례를 따른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sup>87)</sup>
  
- 수출가공구는 대만의 중서부 및 남서부 지역에 총 10개가 지정되었고 1966년부터 주요 산업 전환 과정을 통해서 생산·물류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발전함
  - 수출가공구는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산업단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대만 경제부 수출가공구 관리처(Export Processing Zone Administration, EPZA, 이하 수출가공구 관리처)가 관리하고 있는 4개의 분점에는 타이중(Taichung), 충강

83) 원중학·마정화·정경화, 『자유무역지역 현황 및 관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8, p. 56.

84) 강성훈·양지영·김미정, 『자유무역지역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7, p. 49.

85)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수출가공구 설치관리조례」,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050001>, 검색일자: 2020. 12. 3.

86)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유무역지역 설치관리조례」,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A0020051>, 검색일자: 2020. 12. 26.

87) 「자유무역지역 설치관리조례」 제2조

(Chungkang), 핑퉁(Pintung), 가오슝(Kaoshung) 등이 있음

- 수출가공구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발전을 목표로 입주기업들은 기계장비류 및 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Business Tax), 물품세(Commodity Tax) 등을 면제받을 수 있음<sup>88)</sup>

〈표 2-1-4〉 대만 수출가공구 주요 산업 및 입주비용

(단위: 신대만달러/㎡/1달)

지역	수출가공구	유형	면적(㎢)	입주비용	공공시설 건설비용	주요산업
타이중	Taichung EPZ	생산단지	0.262	9.15	5.38	광전자산업
	Chungkang EPZ		1.77	7.89	7.85	패널디스플레이, 정밀 장비 및 부품
	Taichung Software-base Technology Park	소프트웨어 단지	0.05	13.33~18.55	7.81	ICT서비스산업 등 지식산업, 문화산업(디지털 콘텐츠), 중국어 전자 상거래, 클라우드산업, 디자인, R&D
가오슝	Nantze EPZ	생산단지	0.978	12.08	기존 면적: 면제 (확장면적: 7.56)	직접회로구조 및 테스트·공정 장비산업
	Nantze 2nd EPZ		0.085	17.5	15.79	
	Kaohsiung EPZ	생산단지	0.724	10.5	기존 면적: 1.669, (확장면적: 10.472)	LCD산업
	Chengkung Logistics Park	물류단지	0.084	66	-	보세창고 물류센터, 국제컨벤션센터, 전시센터, 비즈니스센터, 가공이전센터(Process Transfer Center) 를 결합한 국제 통합 운송 단지
	Kaohsiung Software-based Technology Park	소프트웨어 단지	0.079	50	7.841	정보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R&D, 디자인

88) 「수출가공구 설치관리조례」 제13조

〈표 2-1-4〉의 계속

지역	수출가공구	유형	면적(km <sup>2</sup> )	입주비용	공공시설 건설비용	주요산업
가 오 슝	Linkuang EPZ	생산단지	0.09	12.5	8.01	액정패널 및 부품 제조
핀 퉁	Pingtung EPZ		1.24	1.42	8.57	태양광산업, 수처리 및 금속제조품산업

자료: 대만 경제부 투자포털, “Export Process Zone,” <https://investtaiwan.nat.gov.tw/showPageeng249?lang=eng&search=249&menuNum=8>, 검색일자: 2020. 12. 1.

- 자유무역지역은 물류 중심형으로 가오슝 항만(Port of Kaohsiung), 타이중 항만(Port of Taichung), 타오위안 국제 공항(Taoyuan International Airport), 타이베이 항만(Port of Taipei), 안핑 항만(Port of Anping), 킵룽 항만(Port of Keelung), 수아오 항만(Port of Suao)으로, 총 7곳임
- 대만 교통부 항공항만국(Maritime and Port Bureau,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설립 및 운영을 관할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에도 제조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출가공구에 비해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물류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sup>89)</sup>
- 「자유무역지역 설치관리조례」 제5장(세제혜택)에서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음

89) 송주미, 『자유무역지역 유형별 Biz Model 구축 및 연계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p. 29(송주미,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세행정 전략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p. 77에서 재인용)

## Ⅱ. 관세 신고와 납부

### 1. 관세의 과세요건

#### 가. 과세물건

- 「관세법」에서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수입세이며 우편을 제외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세칙」에 따라 관세를 부과함
- 「관세법」은 수출입 전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 규칙은 「관세법 시행세칙」에서 언급하고 있음
- 다만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sup>90)</sup>

#### 나.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이하 CIF가격)를 의미함<sup>91)</sup>

---

90) 「관세법」 제3조

91) 「관세법」 제29조

- 대만의 관세제도는 증가세와 종량세, 복합세가 있음
  - 증가세는 수입화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완세가격(Customs Value, 이하 완세가격)에 세율을 곱한 값임
  - 종량세는 수입화물의 수량·중량·용적 등을 기준으로 수량(중량)에 단위세액을 곱한 값으로 주로 농산품에 적용됨
  - 복합세는 동일 과세코드 내에서 증가세와 종량세를 동시 적용해 과세함

〈표 2-11-1〉 최근 3년간 대만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sup>4)</sup>
평균 명목세율 <sup>1)</sup> (Average Normal Rate)	농산품	14.66	14.91	15.12	15.12
	공산품	4.23	4.21	4.18	4.16
	전체품목	6.35	6.36	6.39	6.37
평균 실질세율 <sup>2)</sup> (Average Effective Rate)	농산품	8.43	7.88	7.41	-
	공산품	1.17	1.13	1.04	-
	전체품목	1.57	1.48	1.34	-
가중평균 명목세율 <sup>3)</sup> (Trade Weighted Average Rate)	농산품	9.89	9.40	9.54	-
	공산품	1.57	1.49	1.43	-
	전체품목	1.98	1.86	1.78	-

주: 1) 대만 관세율 합계를 관세적용품목 수로 나눈 것으로 수입물량의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음

2) 상품별 관세의 세수입을 수입금액으로 나눠 산출함

3) 수입물량의 가중치를 고려한 명목 세율임

4) 2019년 수치는 미집계됨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 "Table of Average Tariff rates of imported goods," 2019. 3. 5., [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3349?cntId=cus16\\_180141\\_3349](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3349?cntId=cus16_180141_3349), 검색일자: 2020. 10. 6.

## 다. 납세의무자

- 「관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의무인은 수하인, 선하증권 또는 물품소유인임<sup>92)</sup>

92) 「관세법」 제6조

## 라. 과세환율

-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화물은 그 외환가격을 신대만달러로 환산하여 계산함<sup>93)</sup>
  - 환율은 재정부 관무서가 외환시장의 당기 환율을 참고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한 것을 따름

## 2. 관세 신고와 납부

### 가. 신고

- 「관세법」 수입물품의 신고는 납세의무인이 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이 세관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sup>94)</sup>
  - 한편 수출물품의 신고는 수출인이 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이 통관 완료 또는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세관에 수속해야 된다고 명시함
  - 도착한 날은 수입물품을 실은 운송수단 종류에 따라 다름
    - 수입물품을 실은 운송선이 대만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 수입물품을 실은 운송기가 대만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 우편물의 경우, 우체국에서 우편 수거 통지를 발송한 날짜 또는 우체국 소인 날짜
    - 환적물품의 경우, 물품을 적재하는데 사용되는 운송도구가 먼저 국가의 하역해안에 도착하여 입국목록을 제출한 날
  
- 수입자는 직접신고 혹은 관세사(Customs broker)가 수입신고 및 납세 등을 대행해주는 위탁신고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수하인은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함

---

93) 「관세법」 제39조

94) 「관세법」 제16조

- 수출입 통관신고는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CPT포털(CPT Single Window, 이하 CPT포털)에서 수입화물이 도착한 후 15일 이내에 수입 통관신청을 완료해야 함<sup>95)</sup>
  - CPT포털은 통관 작업의 일원화를 위해 구축된 수출입업무 전반을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자무역서비스임<sup>96)</sup>
  - 온라인으로 신고했을 경우, 자료 전송일을 기준으로 하고 서면 양식으로 신청한 경우, 서면 자료 도착일 기준으로 함
  - 관련 네트워크 사업을 경영하려는 업자는 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CPT포털사이트와 관련된 관리, 등기, 신청 및 준수사항 등은 재정부가 정함

## 나. 납부

- 납세의무인은 세금납입증을 받은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그 처분이 확정되어 세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sup>97)</sup>
  - 화물의 환급 또는 훼손으로 인한 비용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납부해야 함
- 원칙적으로는 관세를 부과해야 통관할 수 있으나 「관세법」 별도 규정에 따라 납부하기 전에 사전통관이 가능함

---

95) 「관세법」 제10조

96) 대만 CPT포털, “About CTP,” <https://portal.sw.nat.gov.tw/PPL/eng>, 검색일자: 2020. 10. 10.

97) 「관세법」 제43조



###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 가. 물품세

- 「물품세법(Commodity Tax Act, 이하 물품세법)」<sup>98)</sup>에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는 물품은 모두 물품세가 부과되며 선적 후 15일까지 납부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sup>99)</sup>
- 기타 과세대상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raw material)
  - 수출물품
  - 판매용이 아닌 전시용품
  - 군사 지원을 위한 물품
  - 대만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se)의 승인을 받아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 「군용물품관세면제방법(Regulations for Exemption of Commodity Tax on Goods for Military Use, 이하 군용물품관세면제방법)」<sup>100)</sup>에서 군용물품으로 사용되는 고무타이어, 시멘트, 판유리, 오일 및 가스, 전자제품, 차량 등은 물품세율이 면제된다고 명시함<sup>101)</sup>

〈표 2-11-2〉 대만의 물품세율

(단위: %)

물품 종류	물품세율
고무 타이어	10 혹은 15
음료	8 혹은 15
시멘트	1톤당 280~600신대만달러

98)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세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40076>, 검색일자: 2020. 10. 13.

99) 「물품세법」 제3조

100)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군용물품관세면제방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40018>, 검색일자: 2020. 10. 12.

101) 「군용물품관세면제방법」 제3조

〈표 2-11-2〉의 계속

물품 종류	물품세율
유리	10
오일 및 가스	1kL당 110~6,380신대만달러 혹은 1톤당 690신대만달러
전자제품	10~20
차량	15~30

자료: PWC Worldwide Tax Summaries, "Commodity tax," <https://taxsummaries.pwc.com/taiwan/corporate/other-taxes>, 검색일자: 2020. 10. 5.

## 나. 특정물품 및 서비스세

- 대만 정부는 300만신대만달러 이상의 수입 승용차, 전용 제트, 헬리콥터 혹은 30.48 미터(100피트)를 초과하는 요트에는 10%의 특정물품 및 서비스세(The Specifically Selected Goods and Services Tax Act, 이하 특정물품 및 서비스세)를 부과함<sup>102)</sup>
  - 「특정물품 및 서비스세 조례(The Specifically Selected Goods and Services Tax Act, 이하 특정물품 및 서비스세 조례)」<sup>103)</sup>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
- 50만신대만달러 이상의 야생동물 제품(거북이 껍질, 매부리, 산호, 상아, 털을 이용한 제품 포함), 고급가구, 환불 불가한 회원권 등에도 10%의 세금이 부과됨<sup>104)</sup>
  - 2016년 1월 1일부로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특정물품 및 서비스세가 부과되지 않음

## 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 및 비부가가치 영업세법(Value-added and Non-Value-added Business Tax Act, 이하 부가세법)」에 따르면 비(非)부가가치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

102) PWC Worldwide Tax Summaries, "Commodity tax," <https://taxsummaries.pwc.com/taiwan/corporate/other-taxes>, 검색일자: 2020. 10. 5.

103)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물품 및 서비스세 조례」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40128>, 검색일자: 2020. 10. 28.

104) 「특정물품 및 서비스세」 제2조

물품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나 물품들은 모두 부가세(Value Added Tax, 이하 부가세) 부과 대상임<sup>105)</sup>

- 따라서 수입물품에 부가되는 부가세는 5%이며,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해야 하며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 및 기타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세율을 곱해서 계산함<sup>106)</sup>

### 라. 담배·주류세

- 「담배주류세법(Tobacco and Alcohol, 이하 담배주류세법)」<sup>107)</sup>에 따라 담배와 술에 과세할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공기의 오염에 따른 유해성으로 인해 「담배 건강복리세법(Regulations of the Tobacco Health and Welfare Surcharg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sup>108)</sup>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고 있음<sup>109)</sup>

〈표 2-11-3〉 담배 및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

담배 종류	담배세	담배건강복리세	주종		주류세
일반담배	1,590NTD/ 1,000개	1,000NTD/ 1,000개	양 조 주	맥주	26NTD/1리터
				기타	1리터당 알코올 성분에 따라 7NTD/1도
담배가루	1,590NTD/ 1kg	1,000NTD/1kg	증류주		1리터당 알코올 성분에 따라 2.5NTD/1도
시가	1,590NTD/ 1kg	1,000NTD/1kg	합성주		알코올 성분이 용량 대비 20% 이상인 경우 185NTD
기타 담배상품	1,590NTD/ 1kg	1,000NTD/1kg	요리용		9NTD/1리터
			기타 주류		1리터당 알코올 성분에 따라 7NTD/1도
			알코올		15NTD/1도

자료: 대만 「담배주류세법」; 대만 「담배건강복리세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05)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 및 비부가가치 영업세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40080>, 검색일자: 2020. 10. 12.

106) 「부가세법」 제41조

107)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담배주류세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30010>, 검색일자: 2020. 10. 12.

108)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담배 건강복리세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L0070029>, 검색일자: 2020. 10. 12.

109) 한상국, 『주요국의 조세제도-대만편』, 한국조세연구원, 2011, pp. 272~279.

## 마. 무역진흥서비스비

- 대만 「무역법」 제21조 및 「무역법세칙」 제17조에 근거하여 무역진흥서비스비(Trade Promotion Service Fee, 이하 무역진흥서비스비)를 1993년부터 세관 수출입물품에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CIF의 0.04%를 납부해야 함<sup>110)</sup>
  - 보세창고, 보세공장, 물류센터, 수출가공구, 과학공업단지, 면세상품 및 「관세법」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무역서비스진흥비가 면제됨
  - 미납 시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해당 화물의 수출입을 잠정 정지시킬 수 있음<sup>111)</sup>

## 바. 「세관수수료 징수규칙」에 따른 특별비용

- 「세관수수료 징수규칙(Regulations Governing Collection of Customs Service Fees, 이하 세관수수료 징수규칙)」<sup>112)</sup>에 따라 세관의 수출입 운송 도구 및 물품에 대한 특별 서비스 및 허가 증명에 대한 특별비용을 부과해야 함
  - 「관세법」 제101조에 의거해 징수하는 비용을 의미함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연장이나 초과납부한 비용에 대한 환급(return)을 요구하거나 기타 과오납 벌금(fine)에 대한 규정은 「규정요금법(the Charges and Fees Act, 이하 규정요금법)」<sup>113)</sup>을 적용할 수 있음<sup>114)</sup>

110) 「무역법」 제21조; 「무역법세칙」 제17조

111) 「무역법」 제30조

112)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세관수수료 징수규칙」,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50025>, 검색일자: 2020. 10. 12.

113)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규정요금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40107>, 검색일자: 2020. 12. 4.

114) 「세관수수료 징수규칙」 제33조

〈표 2-II-4〉 「세관수수료 징수규칙」에 따른 특별비용 (단위: 신대만달러)

비용 항목	법령근거	적용범위	비용
특별검사비	제3조 제15조	(1) 세관이 허가한 창고, 컨테이너 집산지, 항공화물 집산지, 선적 부두 이외 지역에서 화물 검역을 실시할 경우 (2) 선박(항공) 근처에서 수출입물품 반입 및 반출 검역이 실시되는 경우 (3) 화주가 수출입물품에 대한 재검 또는 특별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4) 화주의 부실로 인해 제2차 검역을 요청하는 경우 (5) 근무시간 외 검역을 요청하는 경우	1,300/1부
특별감사비	제4조	- 선박 1척 감시 - 창고 화물 집산지 감시 비용 - 보세운수도구 및 기타 감시비용 감시 - 근무시간 외 감시요청	2,000 1,000 450 450
컨테이너 봉합비	제5조	- 컨테이너 봉합 비용 - 자율관리(autonomous management) 실시 컨테이너 - passive e-seal	100/컨테이너 50/컨테이너 200/컨테이너
보세구역 내 이송비	제6조	(1) 수입화물 이송 - 화물컨테이너창고 입고 및 출고 비용 - 창고 컨테이너 집산지 또는 항공 - 화물 집산지에서 선박까지 이동 - 선박 항공화물 선적 하역	600
보세구역 내 이송비	제6조	- 타 항구 이송 및 내륙 창고 이송 - 물품 환적	
		(2) 다른 관할 구역 이동 시	
		- 150km 이하 - 150km 이상 250km 미만 - 250km 이상	700 1,000 1,200
선적서류 입력대행비	제8조	- 세관통관서류 - 적하목록(manifest) - 기타 서류	200/1부 200/1page 100/1부
증명서 발급 및 수정비	제11조 제12조	- 세관의 요청에 의해 증명서를 발부 시 징수되는 비용을 징수함	100/1부
물품 보관비	제13조	- 항공 및 선박 여객이 휴대한 물품을 보관하는 비용을 징수함 - 세관 창고 3일 이내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4일 째 부터 징수	250/건, 일별

〈표 2-11-4〉의 계속

비용 항목	법령근거	적용범위	비용
등기증 및 자격증 발부비	제14조	- 컨테이너 집산지, 항공화물 집산지, 면세점 보세창고 물류센터, 보세공장 등을 이용할 경우 세관이 허가한 등기증 및 자격증을 발부함	2,000/1부
보세창고 운영비	제17조 제32조	- 보세창고 및 컨테이너 집산지 등은 월별 운영 서비스 비용을 징수함	6,000/1달
통관관련 정보제공비	제30조	- 용역보고서, CD 및 세관 신고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요청시 서비스 수수료 부과	
		- 데이터 사용료(온라인)	250/1달
		- 데이터 사용료(오프라인)	1000/1달
		- 통관과 관련없는 정보	2000/1piece

자료: 「세관수수료 징수규칙」;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인도네시아』,  
2013., pp. 23~24를 바탕으로 저자 수정

### Ⅲ.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제도

#### 1. 관세평가제도

##### 가. 관세평가

- 대만 재정부 관무서는 과세물건의 가격, 수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관세를 부과함
  -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 세금을 종가세,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한 세금을 종량세, 가격과 수량 모두를 기준으로 부과하면 혼합세라고 함
  - 완세가격은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CIF가격을 의미하며 이를 과세표준으로 가격과 수량 등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계산함<sup>115)</sup>

〈표 2-Ⅲ-1〉 「관세법」 제2장 제2절 완세가격 내용

법조항		내용	
제2장 통관 절차	제2절 완세 가격	제29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제30조	완세가격의 근거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제31조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제32조	유사한 물품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115) 「관세법」 제2장 제2절

〈표 2-Ⅲ-1〉의 계속

법조항		내용		
제2장 통관 절차	제2절 완세 가격	제33조	국내 판매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계산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제35조	조사 자료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제36조	제1항	과세가격 사전심사 작업과정
				완세가격 확정방법 설명
		제37조	국외운송 및 가공물품 재수입의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38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2장 통관 절차	제2절 완세 가격	제39조	완세가격 화폐 및 환율	
		제40조	분리 및 재조립해야 되는 물품의 경우	
		제41조	반제품 물품의 경우	
		제42조	완세가격 조사를 위한 조치	

자료: 「관세법」 제2장 제2절

## 나. 과세가격 결정방법

### 1)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완세가격은 동 수입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계산 근거로 가산요소를 완세가격에 포함하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임<sup>116)</sup>
  - 거래가격은 구매자(buyer)가 물품을 대만으로 수입하기 위해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의미함
  - 객관적이고 측정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완세가격을 측정함

116) 「관세법」 제29조



〈표 2-III-2〉 완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가산요소

가산요소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인건비, 수속비용, 용기 및 포장비용
② 구매자가 무상으로 또는 인하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한 등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사용되는 물품 또는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수입물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부속품 및 유사품</li> <li>- 동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도구, 금형, 모형 및 유사품</li> <li>- 동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모되는 재료</li> <li>- 동 수입물품의 생산에 있어 국외의 공정, 개발, 공법, 설계 및 유사 노동력</li> </ul>
③ 거래 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한 권리금 및 보수
④ 구매자가 사용하거나 처분한 수입물품에 있어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금액
⑤ 수입항구까지의 운반비용, 하역비 및 선적비
⑥ 보험비용

자료: 「관세법」 제29조

〈표 2-III-3〉 완세가격의 근거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완세가격의 근거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① 구매자가 동 수입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제한을 받는 경우 다만, 대만 혹은 중계판매지역의 제한에 대해서 수입물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② 수입물품의 거래에 부가조건이 있어 그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③ 거래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사용 또는 처분하는 일부 수익이 판매자에게 귀속되고 그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④ 구매자, 판매자 쌍방이 다음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자, 판매자의 일방이 타방의 중계인, 이사 또는 심사인인 경우</li> <li>- 구매자, 판매자 쌍방이 동일한 사업 파트너인 경우</li> <li>- 구매자, 판매자 쌍방이 고용관계인 경우</li> <li>- 구매자, 판매자의 일방이 직·간접적으로 또는 타방의 5% 이상의 표결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통제하는 경우</li> </ul>
⑤ 구매자, 판매자 일방이 직·간접적으로 타방을 통제하는 경우
⑥ 구매자, 판매자 쌍방이 제3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통제당하는 경우
⑦ 구매자, 판매자 쌍방이 공동으로 직·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제하는 경우
⑧ 구매자, 판매자 쌍방이 배우자 또는 친척 등 내적인 친족관계인 경우

자료: 「관세법」 제30조

**2)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관세법」 제29조에 따라 완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다만 국내 판매가격과 계산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적용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가)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 「관세법」 제29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 물품의 수출 시 또는 수출 전, 후에 국내에 판매된 동종 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확정할 수 있음
- 동종 물품은 그 생산 국가,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상업적 신용도가 동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의미함

나)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 「관세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동 물품의 수출 시 또는 수출 전, 후 대만에 판매한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확정할 수 있음
- 유사 물품이란 동 수입물품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그 생산국 및 기능이 상동하고 특성 및 원재료가 유사하거나 거래상 호환대체가 가능한 물품을 의미함

다) 국내 판매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 상기 세 가지 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국내 판매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계산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적용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 국내 판매가격이란 동 수입물품,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이 동 수입물품의 수입 시 또는 수입 전, 후 국내에서 그 수입원상이 첫 번째 거래단계이고 특수한 관계가 없는 자에게 최대수량으로 판매한 단위가격에 따라 확정된 후 다음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를 말함
  - 동 수입물품, 동급 또는 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이윤, 비용 또는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

- 물품 수입 시 납입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
- 물품 수입 후 발생하는 운임비, 보험비 및 그 관련 비용
- 수입물품이 원상태로 수입되어 판매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동 단위가격에 가공 후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상기 비용을 공제함

라) 계산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 「관세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완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계산가격에 따라 확정할 수 있음
- 계산가격이란 다음 비용의 총합을 의미함
  - 동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자본금 및 비용
  - 수출국이 대만에 동 수입물품, 동급 또는 동류 물품을 생산판매한 정상적인 이윤과 일반적인 비용
  - 수입항구까지의 운임비, 하역비, 선적비 및 보험비

마) 조사 자료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 「관세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완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조사한 자료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다.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시방법(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Customs Valuation Advance Ruling on Imported Goods, 이하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시방법)」<sup>117)</sup>에 따라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17)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시방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50068>, 검색일자: 2020. 10. 12.

-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은 「관세법」 제36조에 따라 세관에 과세가격 사전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sup>118)</sup>
  - 신청서와 판매계약서, 상업송장, 신용장, 지급증명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신청인은 제출한 서류가 불완전하다고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remedy) 접수해야 함
  - 세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함
    - 국내외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90일 이내로 연장 가능함
    - 다만 세관은 마감일 전에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세관은 사전심사 신청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함<sup>119)</sup>
  - 무역거래가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 심사대상인 물품이 현재 분쟁 중인 상품과 동일 혹은 유사한 경우
  - 신청자가 제공한 중요한 정보가 부정확(incorrect)하거나 위조된 것으로 입증된 경우
  - 세관에게 부적격하다고 심사판정받은 경우

## 2. 품목분류제도

### 가. 품목분류 개요

- HS코드는 부(Section), 류(Chapter), 호(Heading) 및 소호(Subheading) 총 6단위

118)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1조

119)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6조

숫자로 표시된 국제공통단위임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에서 1983년 무역구조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진보를 반영하여 상품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대한 통일시스템에 관한 국제협약(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을 체결함
- 'HS협약'에 따라 국제품목분류표인 HS코드를 결정함
- 대만 재정부와 행정원 주계총처를 포함한 대만 정부는 1983년 8월 HS협약을 기반으로 HS코드를 도입하기 시작해 198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었으며 2017년 개정된 HS2017 기반으로 현재 품목분류하고 있음<sup>120)</sup>
- HS코드(6자리) 뒤에 5단위 대만 고유 품목분류 번호를 덧붙여 총 11자리의 CCC코드에 따라 수출입품목을 분류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1장~제97장은 4단위 1,222항목, 6단위 5,387항목, 8단위 9,128항목으로 구성됨
  - 제98장(관세할당물품)은 총 8단위 32항목임

##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1) 개요

- 납세의무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수입화물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세관은 서면으로 답변해야 함<sup>121)</sup>
  -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번호와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서에 기입해야 하는데 대만 세관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관세율 산정을 도와주고 있음

120) 대만 재정부 관무서, "The Timeline of Our Adoption of HS," [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3349?cntId=cus16\\_181425\\_3349](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3349?cntId=cus16_181425_3349), 검색일자: 2020. 10. 10.

121) 「관세법」 제21조

## 2) 신청 절차

- 「수입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시방법(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Advance Tariff Classification Ruling on Imported Goods, 이하 수입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시방법)」<sup>122)</sup>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입한 신청서와 물품의 샘플, 카탈로그나 매뉴얼 등 물품의 성격, 특징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보충 서류를 함께 지역세관에 제출하면 됨<sup>123)</sup>
  - 물품설명, 원산지(생산지국), 물품번호, 물품의 구성요소 및 재료, 생산과정, 주요 기능, 특징 및 사용처, 환적 여부
- 다만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아직 생산되지 않았거나 디자인하는 과정에 있다면, 혹은 「관세법」 제13조(사전통관), 제17조(세관통관) 및 제18조(사후재심사)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거절될 수 있음<sup>124)</sup>
- 신청자가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며 내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와 품목분류를 위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늦어도 120일 이내에는 답변하기로 함<sup>125)</sup>
- 재심청구가 가능한데, 세관은 재심청구 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함<sup>126)</sup>
-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부여받은 품목분류번호가 세관에 의해 수정되는 경우, 수정된 분류가 물품에 손실을 야기한다면 90일까지 타당성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sup>127)</sup>

122)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시방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40077>, 검색일자: 2020. 10. 12.

123) 「수입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4조

124) 「수입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6조

125) 「수입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7조

126) 「수입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8조

127) 「수입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9조

## IV. 관세율 제도

### 1. 관세율 종류

- 대만의 관세율은 WTO관세율, FTA·ECA협정국과 특정 개발도상국에게 적용되는 특혜 관세율, 기본세율, 감면관세, 할당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셰이프가드 등이 있음

〈표 2-IV-1〉 대만 관세율 종류

관세 종류	내용
WTO세율	관세율표 제1란(Column I)에 표시되어 있는 관세율로, 우리나라 등 WTO 회원 가입국 및 대만과 상호 우대관계를 맺은 29개 국가에 적용하는 세율임
특혜·FTA/ECA세율	관세율표 제2란(Column II) FTA·ECA을 체결한 국가 또는 특정 개발도상국(LDCs)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적용됨
기본세율	관세율표 제1란 및 제2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세율
감면관세 (Exemption of Duty)	산업, 경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혹은 특정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 일시 수입물품, 재수입 물품 등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면제해 주는 관세를 의미함
할당관세 (Tariff Quota)	수입물품에 쿼터(Quota)를 설정하여 그 수량 범위 이내로 수입되는 경우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됨
보복관세 (Retaliatory Duty)	수출국가가 대만에 수출하는 화물 또는 운송수단에 적재한 화물에 대해 차별대우를 실시하여 대만의 물품 또는 운송수단에 적재한 물품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동 국가의 시장에서 불리한 경우, 동 국가가 수출하는 화물 또는 운송수단이 적재한 화물을 대만에 반입할 때, 재정부가 별도로 적정 보복관세를 결정할 수 있음 <sup>1)</sup>

〈표 2-Ⅳ-1〉의 계속

관세 종류	내용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수입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수입국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임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y)	수출국 기업의 부당하게 낮은 금액(원가 이하, 이하 덤핑가격)의 수출로 인하여 수입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수입국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이하 덤핑마진)에 대하여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임
세이프가드 (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으로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임

주: 「관세법」 제70조  
 자료: Trade 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 「대만 관세 종류」,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044&natnCd=TW>, 검색일자: 2020. 11. 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가. WTO 세율

- WTO 회원국 및 대만과 상호 우대관계에 있는 29개국에 적용하는 세율임
  -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한국과 별도의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WTO 세율을 적용함

〈표 2-Ⅳ-2〉 대만 관세율표 제1란(Column 1) 적용 국가 목록

WTO 회원국(163개국)	상호호혜국(29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앙고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바레인 왕국,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볼리비아 다민족공화국, 보스와니아,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캄보디아, 차드,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유럽연합,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대한민국, 쿠웨이트, 키르기스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라트비아,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아메리칸 사모아, 앵귤라,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에티오피아, 홀리 시, 이란, 이라크, 레바논, 대리비아 아랍 사회주의 인민 자마히리야, 마셜 제도, 모나코, 몬세라트,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푸에르토리카, 소말리아,



〈표 2-Ⅳ-2〉의 계속

WTO 회원국(163개국)	상호호혜국(29개국)
몰디브, 몰타,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공화국, 몽골리아,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제도,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르완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솔로몬제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수리남, 스와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구유고슬라비아마케도니아공화국,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합중국, 우루과이, 바누아투공화국,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에리트레아, 수단, 시리아 아랍공화국, 타히티, 적도 기니, 키리바시, 팔라우, 상투메프린시페민주공화국, 투발루 코모로, 알제리, 코소보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경제부 국제무역국, *Customs Import Tariff and Import and Export Commodity Classific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2017. 6., pp. 9~14., <https://www.trade.gov.tw/Pages/Detail.aspx?nodeID=989&pid=618707>, 검색일자: 2020. 10. 10.

### 나. 특혜·FTA/ECA세율

- 대만과 FTA 및 ECA를 체결한 국가와 UN 개발정책위원회가 규정한 저개발국가 47개국에 적용되는 세율임

〈표 2-Ⅳ-3〉 대만 관세율표 제2란(Column II) 적용 국가 목록

협정국(10개국)	UN 개발정책위원회 규정 저개발국가(47개국)
파나마, 과테말라, 니카라과, 살바도르, 온두라스 중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파라과이, 에스와티니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부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키리바시,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세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동티모르, 토고, 투발루, 우간다, 탄자니아연합공화국, 바누아투, 예멘, 잠비아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경제부 국제무역국(2017), pp. 15~17.

## 다. 할당관세

- 할당관세(Tariff Quota)는 대만과의 협정이 체결된 WTO 회원국들에 적용되는 WTO 할당관세, FTA/ECA 협정국들에 적용되는 FTA/ECA 할당관세로 총 2가지임
- 대만은행(Bank of Taiwan, 이하 대만은행)은 대만 재정부에 의해 할당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받았음
  -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Council of Agriculture, 이하 행정원 농업위원회)로부터 대만은행은 당국의 쌀 할당량을 낙찰(opening tender)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음

〈표 2-Ⅳ-4〉 대만 할당관세(Tariff Quota) 종류 및 적용 품목

할당관세 종류	세부종류	내용
WTO 할당관세	선착순 선정 방식 <sup>1)</sup>	E. 사슴벨벳, F. 동양 배, G. 바나나
	입찰방식 <sup>2)</sup>	H. 팥, I. 우유, J. 땅콩, K. 마늘, L. 마른 표고버섯, M. 말린 원추리속, N. 어린 코코넛, O. 빈랑자, P. 파인애플, Q. 망고, R. 포멜로, T. 말린 용안, Y. 쌀
FTA/ECA 할당관세	뉴질랜드	E. 사슴벨벳
	파나마	A. 닭고기, B. 돼지 뱃살, P. 파인애플, V. 고등어, W. 전갱이속, X. 정어리
	니카라과	J. 땅콩

주: 1) A. 닭고기, B. 돼지 뱃살, C. 돼지 내장, D. 가금 내장은 2005년 1월 1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음

2) U. 설탕은 2005년 2월 7일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서 제외되었고, S. 감, V. 고등어, W. 전갱이속 및 X. 정어리는 2008년 1월 1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음

자료: 대만은행, "Tariff Rate Quota," [https://www.bot.com.tw/English/EInternational\\_Trade/Tariff\\_Rate\\_Quota/Pages/default.aspx](https://www.bot.com.tw/English/EInternational_Trade/Tariff_Rate_Quota/Pages/default.aspx), 검색일자: 2020. 10. 2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1) WTO 할당관세

- WTO 할당관세는 할당수입량을 선착순 신청 방식(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 과 입찰 방식(a competitive process)으로 선정하는 경우로 나뉨
- E, F, G품목은 정해진 관세 할당량에서 최고 20% 수량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신청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함
  - 처음 2년 간은 선착순으로 할당량을 배정하며 2년 후에는 신청자가 실제로 수입했던 평균 수입량만큼 할당량을 부여받게 됨
    - 실제 수입량별로 할당 후 남은 쿼터량은 선착순으로 재배정함
  - 할당관세를 신청하려면 할당관세율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입업자 또는 신청자의 통상업 등록증(commercial industrial registration) 사본과 우체국 송금 수수료(1천신대만달러) 데이터 원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 대만은행 홈페이지<sup>128)</sup>에서 WTO 할당관세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관세할당증명서(關稅配額證明書)를 받을 수 있음

〈표 2-IV-5〉 대만 WTO 할당관세(Tariff Quota) 부과 쌀 품목

품명		CCC코드	
쌀	벼	98251100	제9825.11.00.00호에 해당하는 벼
	현미	98251200	제9825.12.00.00호에 해당하는 현미
	백미	98251300	제9825.13.00.11, 9825.13.00.12 및 9825.13.00.20호에 소속된 쌀과 깨진 쌀
쌀 제조 식품 (A)		98252100	제9825.21.00.00호에 속하는 찹쌀가루
		98252200	제9825.22.00.00호에 해당하는 기타 쌀가루
		98253100	제9825.31.00.00호에 해당하는 껍질을 벗겨낸 쌀과 기타 쌀가루
		98253200	제9825.32.00.00호에 해당하는 쌀 알갱이
		98254000	제9825.40.00.10호 및 9825.40.00.20호에 속하는 기타 가공한 쌀
	98255000	제9825.50.00.00호에 해당하는 쌀 전분	
쌀 제조 식품 (B)		98256000	제9825.60.00.10, 9825.60.00.21, 9825.60.00.22 및 9825.60.00.30호의 조화와 다른 방식으로 조제된 식품으로, 쌀 함유량이 30% 이상인 경우
		98257100	제9825.71.00.10, 9825.71.00.20, 9825.71.00.30, 9825.71.00.41, 9825.71.00.42, 9825.71.00.50, 9825.71.00.62, 9825.71.00.63, 9825.71.00.

128) 대만은행, 「關稅配額申請書及表格」, [https://www.bot.com.tw/Trade/TradeWTO/WTO\\_applyform/Pages/default.aspx](https://www.bot.com.tw/Trade/TradeWTO/WTO_applyform/Pages/default.aspx), 검색일자: 2020. 12. 4.

〈표 2-Ⅳ-5〉의 계속

품명	CCC코드	
쌀 제조 식품 (B)	98257100	64, 9825.71.00.65, 9825.71.00.70호 및 9825.71.00.80호에 속하는 평균 이나 제조된 식품으로 쌀 함유량이 30% 이상인 경우
	98257200	제9825.72.00.10 및 9825.72.00.20호의 기타 조제식품의 쌀 함유량이 30% 이상인 경우

자료: 대만은행, 「臺灣銀行 110年度 廠商申請輸入關稅配額注意事項 (二) (標售權利金)」, p. 13., [https://www.bot.com.tw/Trade/TradeWTO/WTO\\_msg/msg2/Pages/default.aspx](https://www.bot.com.tw/Trade/TradeWTO/WTO_msg/msg2/Pages/default.aspx), 검색일자: 2020. 10. 23.

〈표 2-Ⅳ-6〉 대만 WTO 할당관세(Tariff Quota) 부과 품목(쌀 제외)

품명	CCC코드	
E. 시슴벨벳	9805000	제9805.00.00.00호에 속하는 한약용을 포함한 기타 녹용
F. 동양 배	9818000	제9818.00.00.00호에 해당하는 기타 신선 배
G. 바나나	9814000	제9814.00.00.11, 9814.00.00.12, 9814.00.00.21, 9814.00.00.22호에 속하는 바나나
H. 팔	9808000	제9808.00.00.10, 9808.00.00.20, 9808.00.00.30, 9808.00.00.40, 9808.00.00.51, 9808.00.00.52, 9808.00.00.60, 9808.00.00.70, 9808.00.00.81, 9808.00.00.82호에 속한 기타 팔으로 만든 제조품
I. 우유	98061000	제9806.10.00.11, 9806.10.00.12, 9806.10.00.21, 9806.10.00.22, 9806.10.00.33, 9806.10.00.34, 9806.10.00.35, 9806.10.00.36, 9806.10.00.41, 9806.10.00.42, 9806.10.00.43, 9806.10.00.49, 9806.10.00.51, 9806.10.00.52, 9806.10.00.61, 9806.10.00.62호에 해당하는 액상 기름류(응고상태의 유제품 포함)
	98062000	제9806.20.00.10, 9806.20.00.20, 9806.20.00.90에 해당하는 우유
J. 땅콩	98071000	제9807.10.00.11, 9807.10.00.12, 9807.10.00.20, 9807.10.00.90호에 해당하는 껍질 있는 땅콩
	98072000	제9807.20.00.11, 9807.20.00.12, 9807.20.00.21, 9807.20.00.22, 9807.20.00.30, 9807.20.00.90호에 해당하는 껍질 벗긴 땅콩, 땅콩가 루 및 알갱이
	98073000	제9807.30.00.10와 9807.30.00.20호에 해당하는 땅콩기름
	98074000	제9807.40.00.00호에 해당하는 혼합 견과류 또는 씨안, 땅콩 함유량 20% 초과한 것
K. 마늘	98091000	제9809.10.00.00호에 해당하는 재배용 통마늘
	98092000	제9809.20.00.10 및 9809.20.00.90호에 해당하는 마늘
L. 마른 표고버섯	98100000	제9810.00.00.00호에 해당하는 말린 표고버섯

〈표 2-IV-6〉의 계속

품명	CCC코드	
M. 말린 원추리속	98110000	제9811.00.00.00호에 해당하는 말린 원추리속 잎
N. 코코넛	98120000	제9812.00.00.10호에 속하는 기타 코코넛에 해당하는 것
		제9812.00.00.19호에 해당하는 기타 코코넛
		제9812.00.00.20호에 해당하는 껍질을 벗긴 코코넛
O. 빈랑지	98130000	제9813.00.00.00호에 해당하는 빈랑지
P. 파인애플	98150000	제9815.00.00.10 및 9815.00.00.20호에 해당하는 파인애플
Q. 망고	98160000	제9816.00.00.10 및 9816.00.00.20호에 해당하는 망고
R. 포멜로	98170000	제9817.00.00.00호에 해당하는 포멜로
T. 말린 용안	98200000	제9820.00.00.00호에 해당하는 말린 용안 혹은 용안

자료: 대만은행, 「臺灣銀行 110 年度 廠商申請輸入關稅配額注意事項(一) 甲: 先申請先分配」, p. 16., [https://www.bot.com.tw/Trade/TradeWTO/WTO\\_msg/msg1/Pages/default.aspx](https://www.bot.com.tw/Trade/TradeWTO/WTO_msg/msg1/Pages/default.aspx), 검색일자: 2020. 10. 23.; 대만은행, 「臺灣銀行 110 年度 廠商申請輸入關稅配額注意事項(二) (標售權利金)」, p. 12., [https://www.bot.com.tw/Trade/TradeWTO/WTO\\_msg/msg2/Pages/default.aspx](https://www.bot.com.tw/Trade/TradeWTO/WTO_msg/msg2/Pages/default.aspx), 검색일자: 2020. 10. 23.

## 2) FTA·ECA 할당관세

□ 대만이 체결한 FTA·ECA에 따라 해당하는 할당관세 대상 물품과 수량, 신청방법 등이 다름

- 대체로 선착순 선정 방식으로 할당함
- 대만은행에서는 뉴질랜드, 파나마, 니카라과를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 품목과 신청방법 등을 고시하고 있음

### 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 반덤핑관세는 수입물품을 정상 시장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해 대만 산업에 타격을 줄 경우, 세관이 정상 관세 이외의 별도로 징수하는 관세를 의미함<sup>129)</sup>

129) 「관세법」 제69조

-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조치 실시방법(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sup>130)</sup>에 따라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조치를 실시함
  - 「관세법」 제69조의4에 따라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입품에 대한 보조금 여부 조사는 대만 재정부가 하며 보조금 및 덤핑수입물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 조사는 대만 경제부가 함
    - 피해 여부 조사는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일임함<sup>131)</sup>
    - 대만 재정부 관무서는 해당 물품에 덤핑이 존재하는지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함<sup>132)</sup>
  
- 수입화물을 수출하거나 제작하는 국가가 물품의 제조, 생산, 판매 운수 과정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대만의 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 관세를 징수하는 것 이외에 세관은 평형세(상계관세)를 징수할 수 있음<sup>133)</sup>
  - 다만 상계관세의 징수는 수입화물이 수령하는 보조금 액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징수범위, 대상, 세율, 징수개시 또는 징수정지 일자는 재정부가 유관기관과 협의한 뒤 공고하고 실시함
  - 징수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인 그 신청인의 자격, 요건, 조사, 인정, 의견진술, 안건 처리절차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실시방법은 재정부가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기초하며 행정원이 결정한다고 명시함
  
- 덤핑 거래의 증거(evidence)와 다음을 포함한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의 연관성, 국내 산업의 피해 정도를 신청서에 제출해야 함<sup>134)</sup>

130)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조치 실시방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50034>, 검색일자: 2020. 10. 23.

131)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조치 실시방법」 제3조

132) 대만 재정부 관무서, “Cargo Clearance-How to apply-B. The authorities,” [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1913?cntId=cus16\\_184737\\_1913](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1913?cntId=cus16_184737_1913), 검색일자: 2020. 11. 30.

133) 「관세법」 제67조

134) 대만 재정부 관무서, “Cargo Clearance-How to apply-D. Application format and content,” [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1913?cntId=cus16\\_184737\\_1913](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1913?cntId=cus16_184737_1913), 검색일자: 2020. 12. 1.

- 사건의 개요
- 신청자의 자격에 대한 정보(information)
- 국내 유사물품의 생산자 및 생산량, 생산 물품의 가치(production value)
- 덤핑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full description)
- 국내 수입업자 및 원산지/수출국(들)의 수출업자 혹은 생산자 명부
- 대만으로 수출한 가격, 수출 및 원산지국에서 판매하는 국내가격과 덤핑 마진
- 덤핑에 해당하는 물품이 국내 유사물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 덤핑에 해당하는 물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덤핑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증가 조건

〈표 2-IV-7〉 대만 반덤핑관세 조사 대상 물품 및 국가

조사 대상 품명	원산지/수출 국가	CCC코드	관련 문서
세라믹 타일 <sup>1)</sup>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69041000003, 64049000006, 69072100212, 69072100221, 69072100310, 69072100329, 69072100418, 69072100427, 69072100515, 69072100524, 69072100613, 69072100622, 69072100711, 69072100720, 69072100917, 69072100926, 69072200211, 69072200220, 69072200319, 69072200328, 69072200417, 69072200426, 69072200514, 69072200523, 69072200612, 69072200621, 69072200710, 69072200729, 69072200916, 69072200925, 69072300210, 69072300229, 69072300318, 69072300327, 69072300416, 69072300425, 69072300513, 69072300522, 69072300611, 69072300620, 69072300719, 69072300728, 69072300915, 69072300924	- 2020년 10월 28일 조사 실시 공고 - 신청서
특정 알루미늄 포일 <sup>2)</sup>	중국	76071120006, 76071190001	- 2020년 8월 4일 조사 실시 공고

- 주: 1) 마감제 세라믹 타일은 포함되지 않고 벽 타일, 바닥 타일, 포장 등의 세라믹 타일 등에 해당하며 유리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내열 온도가 1500℃ 미만인 것이 조사 대상에 해당함  
(a) 무게별 수분 흡수 계수가 17%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b) 각 측면 길이는 7cm 이상이고 (c) 두께가 21mm 미만인 것
- 2) 다음과 같은 특정 알루미늄 포일은 반덤핑관세 조사 대상임  
(a) 알루미늄의 순도가 99.36%를 초과해서 99.9%에 해당한 것 (b) 두께가 0.005~0.007mm 미만인 경우 (c) 말아 두었으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 (d) 부조세공을 하지 않은 것 (e) 라미네이트되지 않았거나 지지되지(backed) 않은 것 (f) 무게, 길이, 폭과 관계없이 코일에 감겨 있거나 감겨 있지 않은 것 (g) 한 면은 밝고 다른 한 면은 무광택인 것
-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 "Anti-dumping," [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1913?cntId=cus16\\_179394\\_1913](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1913?cntId=cus16_179394_1913), 검색일자: 2020. 11. 30.

## 마. 특별 세이프가드

- 「WTO 농업협정문(WTO Agricultural Agreement)」에 따르면 특별 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물량이 기준 이상으로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기준 이하로 급격히 떨어져 국내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 관세 이외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sup>135)</sup>
- 긴급수입제한제도(safeguard)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에 구체적인 피해가 있어야 하는 반면, 특별 세이프가드제도는 국내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발동됨
- 대만의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농업협정문」 제5조에 따라 발동수준을 채택하며 이는 1990년부터 1992년의 평균 CIF가격으로 함<sup>136)</sup>
  - 만약 1990~1992년의 수입 기록이 없는 물품일 경우, 주변국의 CIF가격을 따르거나 관세 산정을 위한 예상 외국 가격으로 대체함
- 일반적으로 수량에 기초한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와 가격기준에 기초한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며 대만의 경우, 두 가지 조치 모두 존재함

135) 박노형 외, 『新 국제경제법』, 박영사, 2013., pp. 197~198.

136) 대만 재정부 관무서, 「농산물품과정관세 주의사항(Regulations for imposition of the additional duty on agriculture products)」, <https://webfile.customs.gov.tw/Download.ashx?u=LzAwMS9VcGxvYVWQvMTYvY2tmaWxlL2RjZmQ2NzJhLTdiNDAtNDUxNS1hN2U1LTU2ODg2NDQxMzkwOC5wZGY%3d&n=UmVndWxhdGlbnMgZm9yIGltcG9zaXRpb24gb2YgdGhlIGFkZGI0aW9uYWwgZHV0eSBvbiBhZ3JpY3VsdHVyZSBwcm9kdWN0cy5wZGY%3d&icon=.pdf>, 검색일자: 2020. 11. 30.



- 다만 수량에 기초한 특별 세이프가드와 가격에 기초한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중에서 더 높은 세액을 적용함<sup>137)</sup>
- 수량에 기초한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때, 수량기준 초과 여부 계산에 다음과 같은 수입량은 포함됨<sup>138)</sup>
  - 우편물소포로 발송되는 수입품이나 여행자 휴대물품은 수입물량에 포함됨
  - 다만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입물품은 수입물량에 포함되지 않음
  - G1 수입신고서(외국 수입물품) 및 D2 수입신고서(보세창고에서 수입된 물품)는 삼각무역물품, 압류 물품, 폐기물, 반품 처리 물품, 재수출품 등을 제외하고 누적 수입량에 포함함(관세 처리 코드 90, 91, 92, 94, 71)
  - 수입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후 세관이 해당 물품이 관세 추가납부의 범위에 해당됨을 확인했을 경우, 그 수입량을 누적 수입량에 포함하며 누적 수입량이 발동 수준에 도달한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함<sup>139)</sup>
- 관세 신고 총 수입량이 발동 수준을 동시에 초과하는 경우, 추가 부과 관세 면제에 해당하는 수입량은 개별(item) 관세 신고의 수입량 비율에 따라 계산함<sup>140)</sup>
  - 추가 부과 관세액은 수입 관세의 33.3%임
  - 납부 기한은 누적 수입량이 발동 수준에 도달한 날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 까지임
- 대만 재정부는 2021년 1월 땅콩을 포함한 기타 농산물품에 대해 가격 및 수입량에 기초한(volume-based and price-based) 특별 세이프가드를 가동한다고 통고함<sup>141)</sup>

137) 「관세법」 제72조

138) 「농산물품과징관세 주의사항」 제4조

139) 「농산물품과징관세 주의사항」 제4조의1

140) 「농산물품과징관세 주의사항」 제4조의1

141) 대만 재정부 관무서, “Customs Notice-On January 18, 2021, the Ministry of Finance announced the volume-based and price-based special safeguard for peanuts and other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period of implementation is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21,” <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1868?cntId=9274281d9ae74e149d26238c4d4ca821>, 검색일자: 2020. 11. 23.

- CPT포털에서 해당 연도에 부과된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검색할 수 있음

〈표 2-Ⅳ-8〉 대만 2020년 가격에 기초한 특별 세이프가드

(단위: 신대만달러/KGM)

물품 설명		품목번호	기준가격
땅콩	껍질 속의 땅콩	12023010, 12024100, 20081111, 20081191	11.8
	가루 및 식사류, 빵은 땅콩, 혼합 견과류	12023020, 12024200, 12089011, 12089021, 20081112, 20081192, 20081942	18.1
	땅콩기름	15081000, 15089000	25.9
배		08083090	54.0
마늘		07032010, 07032090, 07129040	9.7
빈랑나무 매열		07032010, 07032090, 07129040	50.0
닭고기	다리 및 날개	02071311, 02071411, 02109912, 16023210	30.0
	기타 부위	02071100, 02071200, 02071319, 02071419, 02109919, 16023220	42.0
액체 우유		04011010, 04012010, 04014010, 04015010, 04029910, 04011020, 04012020, 04014020, 04015020, 04029920, 04029992, 04039029, 04039040, 04039059, 04039090, 18069053, 18069055, 19019025, 19019027	17.0
팥		07102910, 07133200, 11061010, 20049010, 20055110, 20055910, 20060011, 20060025	14.4
말린 표고버섯		07123920	302.15
포멜로		08054020	10.4
감		08107000	23.4
말린 원추리속		07129050	13.7
돼지 뺏살		02031911, 02031991, 02032911, 02032991	30.0
쌀	벼	10061000	6.0
	현미	10062000	7.0
	백미	10063000, 10064000	8.0
	쌀 가공품	11029011, 11029019, 11031930, 11032010, 11041910, 11042920, 11081910	9.0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 "Table 1- Price-based SSG of 2021," [https://eweb.customs.gov.tw/siinglehtml/3298?cntId=cus16\\_3298\\_3298](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3298?cntId=cus16_3298_3298), 검색일자: 2020. 11. 24.

〈표 2-Ⅳ-9〉 대만 2020년 수입량에 기초한 특별 세이프가드

(단위: 톤, %)

물품 설명		품목번호	평균 국내 소비량 <sup>1)</sup>	평균 수입량 <sup>1)</sup>	시장 접근 기회	기준 발동 수준	국내 소비 변화량 <sup>2)</sup>	발동수준
닭고기	다리 및 날개	02071311, 02071411, 02109912, 16023210	324,346.4	172,503.8	53.19	105	58,845.7	215,629.8
	기타 부위	02071100, 02071200, 02071319, 02071419, 02109919, 16023220	231,192.5	4,841.9	2.09	125	19,127	6,052.4
액체우유	신선우유	04011010, 04012010, 04014010, 04015010, 04029910	343,845.3	34,556.8	10.05	110	28,282.4	43,196
	기타 액체우유	04011020, 04012020, 04014020, 04015020, 04029920, 04029992, 04039029, 04039040, 04039059, 04039090, 18069053, 18069055, 19019025, 19019027	142,343.1	11,366.5	7.99	125	25,402.5	14,208.1
내장	가금류 내장	02071399, 02071429, 02072690, 02072729, 02074490, 02074590, 02075490, 02075590, 02076030, 02076090, 02109929, 05040022, 16023120, 16023290, 16023920, 16029040	42,255.3	398.7	0.94	125	1,104.2	498.4
	가축류 내장	02063020, 02064930, 05040021, 16024930	112,766.5	18,198.0	16.14	110	2,974.6	22,747.5
팔		07102910, 07133200, 11061010, 20049010, 20055110, 20055910, 20060011, 20060025	14,743.0	4,018.9	27.26	110	-1,412.3	4,219.8
말린 표고버섯		07123920	5,846.8	281.8	4.82	125	369.2	352.3
포멜로		08054020	82,389.3	0.3	0.00	125	-322.1	0.3
감		08107000	69,219.4	31.3	0.05	125	21,111.6	39.1

〈표 2-Ⅳ-9〉의 계속

물품 설명	품목번호	평균 국내 소비량 <sup>1)</sup>	평균 수입량 <sup>1)</sup>	시장 접근 기회	기준 발동 수준	국내 소비 변화량 <sup>2)</sup>	발동수준
말린 원추리속	07129050	380.4	3.4	0.89	125	-73.5	3.6
돼지 뺏살	02031911, 02031991, 02032911, 02032991	73,964.9	16,420.3	22.20	110	69.9	18,132.2
쌀	10061000, 0062000, 10063000, 0064000, 11029011, 11029019, 1031930, 1032010, 11041910, 1042920, 11081910, 8069061, 18069071, 8069092, 19019091, 19021110, 19021910, 19022010, 19023020, 19041020, 19042011, 19042021, 19049010, 21069098	1,208,489.8	136,928.4	11.33	110	4,961.4	155,582.6

주: 1)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균치

2) 2017년과 2018년의 국내 소비 변화량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 "Table 1- Volume-based SSG of 2021," [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3298?cntId=cus16\\_3298\\_3298](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3298?cntId=cus16_3298_3298), 검색일자: 2020. 11. 23.

## 2. 세율 적용 우선순위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가 관세 이외에 1순위로 추가적으로 적용되며, 2순위로 관세율표 제2란에 기재되어 있는 특혜 및 FTA/ECA세율이 적용됨
- 한국을 포함한 관세율표 제1란에 기입되어 있는 WT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WTO 세율은 3순위로 적용되며 마지막으로 관세율표 제3란의 기본세율이 적용됨

〈표 2-IV-10〉 대만 세율 적용 우선순위

순위	세율 종류	구분	요건
1순위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셰이프가드	덤핑, 보조금 지급 등에 다른 추가 관세의 부과 → 기본세율에 일정률을 추가하여 부과함	- 부과 대상의 조사 및 선정 -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의 물품별로 부과 - 현재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대상 없음
2순위	특혜·FTA세율 (Column II)	FTA, ECA 등 협정 상대국에 부과 →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 또는 0세율이 적용	- 특혜세율 적용 요건 등의 충족 -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경우 적용 - 현재 우리나라는 협정 대상국이 아님
3순위	WTO세율 (Column I)	WTO 회원국 및 대만과 우대관계를 체결한 국가에 적용 → 특혜·FTA세율과 경합 시, 낮은 세율 우선 적용함	- WTO 회원국 또는 대만과 우대 관계를 체결한 국가에 적용 -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 적용 하는 관세율에 해당함
4순위	기본세율 (Column III)	상기 세율에 해당사항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함	

자료: Trade Navi(종합무역정보서비스), 「대만-적용세율 우선순위」,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046&natnCd=TW>, 검색일자: 2020. 11. 3.

### 3. 관세율 수준

- WTO·ITC·UNCTAD가 WTO 회원국들의 평균관세율을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 한국, 미국, 중국은 2018년 전체 수입액에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수준이 높음
  - 농산물에 대한 가중평균 MFN관세율은 한국이 81.9%로 대만(10.5%)과 중국(12.5%)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 한편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은 대만이 1.6%로, 미국(2.2%)보다도 낮고 한국과 중국은 비슷함

〈표 2-IV-11〉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구분

농산물	비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 동물(1류), 육류(2류) 및 이를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16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5류)</li> <li>- 낙농제품(4류)</li> <li>- 채소(7류), 과일(8류), 수액(13류), 기타 식물성 생산품(14류)</li> <li>- 커피 등 차(9류, 18류)</li> <li>- 곡물 및 그 조제품(10류, 11류, 19류, 21류)</li> <li>- 종자 및 기름(12류, 15류)</li> <li>- 설탕 및 과자류(17류)</li> <li>- 음료 및 담배(22류, 24류)</li> <li>- 면섬유(52류)</li> <li>- 기타 농산물(23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3류)</li> <li>- 광물 및 금속제품(25류, 26류, 31류, 68~71류, 72~76류, 78~83류)</li> <li>- 석유제품(27류)</li> <li>- 화학제품(44~45류, 47~49류, 94류)</li> <li>- 목제품 및 종이(44~45류, 47~49류, 94류)</li> <li>- 직물 및 의류(50~63류, 65류)</li> <li>- 고무, 가죽, 신발 등의 제품(40류, 41~43류, 64류)</li> <li>- 기계류(84류)</li> <li>- 전자기기(85류)</li> <li>- 승용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수송기기(86~89류)</li> <li>- 기타 제조업 제품(46류, 66류, 67류, 90~93류, 95~97류)</li> </ul>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0*, pp. 40~41. <https://www.intracen.org/uploadedFiles/intracenorg/Content/Publications/World-Tariff-Profiles-2020.pdf>, 검색일자: 2020. 10. 10.

〈표 2-IV-12〉 대만 MFN 관세율 수준

구분		기준연도	대만	한국	미국	중국
전체품목	단순평균	2019	6.6	13.6	3.3	7.6
	가중평균	2018	2.0	8.0	2.3	4.4
	수입액	2018	273.4	522.0	2,447.9	1,976.3
농산물	단순평균	2019	17.3	56.8	4.7	13.9
	가중평균	2018	10.5	81.9	4.6	12.5
	수입액	2018	12.6	27.8	135.1	123.4
비농산물	단순평균	2019	5.0	6.6	3.1	6.5
	가중평균	2018	1.6	3.9	2.2	3.9
	수입액	2018	260.7	494.2	2,312.7	1,852.9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0*, pp. 28~33.

- 무관세 비율도 비농산물이 농산물에 비해 높으며 농산물에는 15~25% 정도의 WTO 양허관세율 및 MFN실행관세율 부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0~5% 사이의 낮은 관세율이 가장 많이 적용됨

- 0% 초과 5% 이하 비농산물에 대한 MFN실행관세율이 약 39.6%의 품목에 적용되었으며 WTO양허관세율은 약 37.8%의 품목에 적용됨

〈표 2-Ⅳ-13〉 대만 관세율 분포-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단위: %)

구분		무관세	0%초과 5%이하	5%초과 10%이하	10%초과 15%이하	15%초과 25%이하	25%초과 50%이하	50%초과 100%이하	100% 초과
농 산 물	WTO 양허관세	24.0	15.0	12.5	10.9	25.6	7.9	1.5	2.7
	2019년 MFN 실행관세	25.2	14.3	12.8	11.2	24.9	8.1	1.4	2.0
	2018년 수입액	36.1	12.3	20.0	8.3	16.0	5.9	0.5	0.8
비 농 산 물	WTO 양허관세	31.4	37.8	19.6	7.5	3.2	0.5	0	0
	2019년 MFN 실행관세	31.1	39.6	17.8	7.3	3.8	0.5	0	0
	2018년 수입액	73.7	18.5	3.9	1.3	2.6	0.1	0	0

주: 관세율별 전체 품목 비중(%)을 나타낸 수치임  
 자료: WTO·ITC·UNCTAD(2020), p. 174.

- 산업별 관세율 분포를 살펴보면 설탕 및 과자류가 WTO 양허관세 평균관세율이 55%로 가장 높으며, 비농산물중에서는 어류 및 수산물이 19.2%로 가장 높음
- 반면 MFN실행관세율은 곡물 및 그 조제품의 평균관세율이 29.5%로 가장 높음

〈표 2-Ⅳ-14〉 대만 산업별 관세율 분포

(단위: %)

품목	WTO 양허관세			MFN 실행관세			수입액 기준	
	평균 관세율	무관세 비중	최대 관세율	평균 관세율	무관세 비중	최대 관세율	비중	무관세 비중
동물제품	16.1	3.2	45	16.2	3.2	45	0.6	0.2
낙농제품	17.6	0	78	17.4	0	76	0.2	0

〈표 2-Ⅳ-14〉의 계속

품목	WTO 양허관세			MFN 실행관세			수입액 기준	
	평균 관세율	무관세 비중	최대 관세율	평균 관세율	무관세 비중	최대 관세율	비중	무관세 비중
과실 및 채소, 식물제품	24.3	9.3	>1,000	24.1	9.9	>1,000	0.6	10.7
커피, 차	8.5	41.7	32	8.5	41.7	32	0.2	41.3
곡물 및 그 조제품	30.3	6	374	29.5	11	363	1.1	29.4
종자, 기름	16.1	55.7	338	15.8	55.7	338	0.6	87.7
설탕 및 과자류	55	0	143	15.5	5.9	28	0.2	3.7
음료, 담배	16.3	17.3	40	15.9	17.3	40	0.6	53.9
면섬유	0	100	0	0	100.0	0	0.1	100
기타 농산물	3.9	58.8	500	3.6	61.5	500	0.4	52.7
어류 및 수산물	19.2	3.8	148	19.2	3.6	122	0.6	13.8
광물, 금속	2.9	52.7	13	2.7	56.6	13	18.4	86.2
석유제품	5.2	6.9	10	2.1	44.9	5	12.2	95.2
화학제품	2.8	25.8	20	2.8	25.5	20	13.4	44
목제품, 종이제품	0.4	94.1	13	0.4	94.5	13	1.8	94.1
직물	7.5	3.2	13	7.3	3.2	13	1	2.5
의류	11.7	0	12	11.7	0	12	0.7	0
가죽, 신발 등	5.6	13.3	10	5.1	14.1	10	0.9	11.7
비전기기계	3.6	28.3	20	3	25.7	18	12.8	67.1
전기기계	3.5	36.2	15	3.4	28.5	15	23.9	87.9
운송기기	7.9	26.8	30	8.1	26.2	30	4.4	30.4
기타 제조업 제품	3	39.6	10	2.9	35	10	5.3	77.2

주: 관세율별 전체 품목 비중(%)을 나타낸 수치임  
 자료: WTO·ITC·UNCTAD(2020), p. 174.



## 4. 관세율 구성

- 대만의 관세율은 제1란(Column I), 제2란(Column II), 제3란(Column III)으로, 총 세 가지임
  - 제1란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163개 WTO 회원국과 29개 상호호혜 관계(reciprocal relationship)에 적용함
    - 제2란은 대만과 FTA 혹은 ECA를 체결한 국가와 저개발국가에 적용함
    - 저개발국가는 UN 개발정책위원회(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CDP, 이하 UN 개발정책위원회)가 선정한 47개국을 의미함
    - 중국과 같이 제1란과 제2란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낮은 세율을 따름
  - 제3란은 제1란과 제2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에 적용함
- 관세율은 CPT포털에서 CCC코드를 입력하거나 중문 혹은 영문 물품명을 입력란에 기입하여 조회할 수 있음
  - 한편 수입물품의 CCC코드 4자리부터 10자리를 입력하여 관세율을 조회할 수도 있음

[그림 2-IV-1] 대만 관세율 조회

The screenshot shows the 'CPT SINGLE WINDOW Customs Clearance Service' portal.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Online Application' and 'Information Search System'. The left sidebar has 'Online Information Queries' and 'Container/Cargo Status Tracking'.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GC451) Tariff Database Search System' and features a search form with the following fields:

- Tariff No.: (Please enter 2 to 10 digits. Ex : 01 · 0101 · 0101110000)
- Description(Chinese): (Enter part of Chinese Description to do full-text query. Ex : 雞 · 酒 · 糖)
- Description(English): (Enter part of English Description to do full-text query. Ex : fowls · alcohol · cotton)
- Import/Export Regulations: (Please enter 3 digits. Ex : 121 · MPI)
- Tariff Valid Date: 2020/10/11 (Date format : yyyy/MM/dd EX:2010/10/20)

At the bottom of the form are 'QUERY' and 'CLEAR' buttons.

자료: 대만 CPT포털, "(GC451) Tariff Data base Search System," <https://portal.sw.nat.gov.tw/APGQ/>, 검색일자: 2020. 10. 12.를 저자가 캡처함

- 관세율표에는 CCC코드, 물품명, 단위, 제1란·제2란·제3란 관세율, 특별규정과 품목 분류번호별 수입 및 수출 규정이 기재되어 있음
  - 특히 품목분류별 수출입규정은 약어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파악해야 됨
  - 특별징수규정(Customs Requirements, 이하 특별징수규정)은 물품세 혹은 주류세 등 기타 과세나 관세 환급이 적용될 경우 표시함

〈표 2-Ⅳ-15〉 대만 관세율표상 특별징수규정(CR)

특별징수 규정 코드	코드 설명	특별징수 규정 코드	코드 설명
B	주류세에 해당함	N	특정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
B*	부분적으로 주류세에 해당함	R	관세 환급 불가
C	주류세 및 담배건강보조세에 해당함	R*	부분관세 환급 불가
D*	일부 수입국은 소 도축 전에 FTA 체결국 정부가 발행한 사육 농장과 도축장 관련 문서들을 추가로 동봉해야 함	T	물품세 납부에 해당하는 물품
G	특별 세이프가드에 적용됨	T*	부분적으로 물품세 납부에 해당하는 물품
L*	특정물품 및 서비스세에 부분적으로 해당됨	Z	수입물품의 수량을 '0'으로 통관하는 품목분류번호(the Tariff Heading)

주: \*는 부분 혹은 일부만 적용되는 품목을 의미함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경제부 국제무역국(2017), pp. 19~20.

〈표 2-Ⅳ-16〉 대만 관세율표 예시

中華民國輸 出入 貨品分類號列 CCC Code	檢 查 號 碼 CD	貨 名	Description of Goods	單 位 Unit	國定稅率 Tariff Rate			稽 徵 特 別 規 定 CR	輸 入 及 輸 出 規 定 Imp. & Exp. Regulations	
					第 一 欄 Column I	第 二 欄 Column II	第 三 欄 Column III		輸 入 Imp.	輸 出 Exp.
0101		馬 驢 騾及馱驢 一馬：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Horses :							

〈표 2-IV-16〉의 계속

中華民國輸 出入 貨品分類號列 CCC Code		檢 查 號 碼 CD	貨 名	Description of Goods	單位 Unit	國定稅率 Tariff Rate			稽徵 特別 規定 CR	輸出入規定 Imp. & Exp. Regulations	
稅則號別 Tariff No.							第一欄 Column I	第二欄 Column II		第三欄 Column III	輸入 Imp.
0101.21			純種繁殖用	Pure-bred breeding animals							
0101.21. 00	00	3	馬, 純種繁 殖用	Live horses, pure-bred breeding animals	HED KGM	2.5%	免稅Free (PA,GT,NI, SV,HN, NZ,SG)	2.5%	401 B01	441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경제부 국제무역국(2017), p. 74

## V. 감면 및 환급제도

### 1. 감면제도

- 관세 감면이란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함
  - 감세란 납부의무를 일부 면제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부 면제를 의미함
  - 반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면세라고 함
  
- 대만의 감면제도는 세관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 신청으로 면세받을 수 있는 특정면세와 세관의 승인을 받고 면세받을 수 있는 세관승인면세로 구분할 수 있음

#### 가. 특정면세

- 「관세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세관의 사전 승인 여부의 필요 없이 면세신청으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음<sup>142)</sup>
  - 감면 사유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정부기관 등이 사용하는 물품

142) Trade 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 「대만-감면세율-대만 관세감면의 종류」,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065&natnCd=TW>, 검색일자: 2020. 11. 4.

- 교육·연구용품: 교육 또는 연구기관에서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수입하는 교육, 연구 또는 실험에 사용되는 물품과 국제 경기에 참가하는 체육단체의 훈련 및 경기용 기구(단, 완제품에 한함)
- 광고용품: 상업적 가치가 없는 광고용품이나 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이 면세범 위 이내인 물품<sup>143)</sup>
- 여행자 휴대품
- 소액 우편물: 일정 한도액 이하의 소액 소량 우편물의 경우 관세 부과가 면제되고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정부기관 등이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면제됨<sup>144)</sup>

- 총통 및 부총통이 사용할 물품
- 대만 내 각국의 대(영)사관 등이 수입하는 물품
- 외교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
- 군사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
- 정부기관 등에서 수입하는 구제 물자
- 외국정부 등에서 수여하는 훈장
- 공문서, 사문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대만 어선이 해외에서 채득한 수산물
- 인양한 침몰선 및 항공기
- 선용품 및 기용품<sup>145)</sup>
- 정부기관이 수입하는 방역용 약품 또는 의료기기
- 정부기관이 수입하는 긴급 구호 물품 및 기계류
- 대만 국적 선원이 반입한 개인 용품

143) 「관세법」 제49조의19

144) 「관세법」 제49조

145) 선용품 및 기용품이란 선박/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식료, 연료, 소모품 따위의 물품을 의미함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84%A0%EC%9A%A9%ED%92%88>, 검색일자: 2020. 12. 26.)

## 나. 세관승인면세

- 「관세법」 제50조부터 제57조는 관세 면제를 위해서 세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제55조는 수입화물 용도 변경 및 양도 시에 관세 추가납부 면제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음
  - 관세 감면 대상인 수입화물을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원 수입 시의 납세의무인 또는 현물 소유인이 양도 또는 용도 변경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 수입지 세관에 양도 또는 용도 변경 시의 가격과 세율에 따라 관세를 추가 납부함
  - 다만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세금의 추가납부가 면제됨
    - 재정부의 규정 연한을 초과하여 양도 및 용도 변경한 경우
    - 세관의 비준(approved)을 거쳐 원 화물을 재수출하는 경우
    - 기존에 발급받았던 증명서류를 발급한 기관이 세관의 조사를 거쳐 원 화물을 재수출하도록 결정한 경우
    - 양수인이 관세 감면 조건을 충족한 경우
  - 관세 분할납부 대상인 수입물품은 관세를 완납할 때까지 강제 집행(compulsory execution) 혹은 특별한 경우로 세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양도될 수 없음
  
- 다음 중 하나의 상황에 있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관세 부과가 면제됨<sup>146)</sup>
  - 운송 도중 물품이 손상, 변질 및 파손된 경우
  - 수입통관 이전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
  - 세관검사 시, 이미 물품의 누락 혹은 손상이 발생했고 물품 누락 혹은 손상의 원인이 창고 관리인원이나 화물관계인의 보관 부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 세관 통관 전에 납세의무인이 반송 수출하여 세관의 비준을 획득한 경우
  - 세관 통관 전에 화물의 성질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그 감소한 부분이 세관의 조사를 통하여 사실로 판명된 경우

---

146) 「관세법」 제50조

- 관세 부과된 수입화물의 손괴 또는 규격, 품질 등이 체결한 계약서상 내용과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여 국외의 업자가 배상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입화물은 관세 부과를 면제함<sup>147)</sup>
  - 해당 수입화물의 수입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관련 증빙을 제공하며 사실조사에 의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 한함
    - 다만 전항의 수입화물이 기계 설비(machinery or equipment)인 경우, 설치 완료하여 시운전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전항의 배상(compensation) 또는 교체(replacement)를 요구하는 화물은 세관이 비준(the approval notice)을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을 보고하여야 함
    -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이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은 6개월에 한함
  
- 다음과 같은 특정 화물을 수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또는 재정부가 결정하는 날 이전에 해당 특정 화물을 재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세됨<sup>148)</sup>
  - 재수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출 전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원수입인지 세관에 신청해야 함
    -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견본, 과학 연구용 물품, 실험용 물품, 전시용품
    - 예술 단체 복장 및 도구
    - 영화촬영 제작 기자재
    - 설치 및 수리에 필수적인 기계, 도구 혹은 완제품
    - 수입 화물용 컨테이너
    - 기타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물품 등
  
- 다음과 같은 특정 화물을 재수입할 경우, 수출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재정부가 정하는 일자 이전에 해당 화물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됨<sup>149)</sup>

147) 「관세법」 제51조

148) 「관세법」 제52조

149) 「관세법」 제53조

- 재수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출 전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원수입인지 세관에 신청해야 함
  - 견본, 과학 연구용 물품, 공정 기계
  - 영화 촬영 및 TV 촬영 제작과 관련된 도구 및 기계
  - 전시용 물품, 예술품
  - 수입 화물용 컨테이너
  - 예술 단체의 복장, 도구
  - 정부 기관이 국외의 영화 제작과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탁송하는 화물 및 그 밖의 재정부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유사한 물품 등
  
- A·T·A 까르네<sup>150)</sup>를 소지한 납세의무인은 까르네(carnet) 유효기간에 해당 물품을 재수입 혹은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sup>151)</sup>
  - 까르네 유효기간에 물품을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그 응납세는 까르네에 명기된 보증기구가 납입을 대신함
  - 다만 까르네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재수입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함
  - A·T·A 까르네가 발급된 물품의 범위, 보증기구의 보증책임, 서명발급, 관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것은 재정부가 정한다고 명시함
  
- 수출 목적의 제조용 물품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는 통관(entry)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할 경우 면세할 수 있으며 통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sup>152)</sup>
  - 수출용 물품에 사용되는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면제는 수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150) A·T·A 까르네는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임(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까르네 안내」, <https://cert.korcham.net/html/content.htm?serviceID=fNw3dsvySD+0zq08L1tqZA&location=/html/guide/carnet/carnet01>, 검색일자: 2020. 11. 10.)

151) 「관세법」 제54조

152) 「관세법」 제56조



- 수출용 완제품은 3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면제받을 때, 물품 수출 시 환급된 원재료를 수입하기 위해 납부한 관세는 전액 상환해야 함<sup>153)</sup>
  - 수리 또는 유지보수를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수출 보증을 받고 있는 전항의 재수입물품은 완제품 수출 시 환급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상환을 면제함
  - 다만 천재지변,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수출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재수출의 시한을 1년 이내로 함

## 2. 환급제도

- 관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을 의미하며 대만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sup>154)</sup>
  - 과·오납 징수 및 환급<sup>155)</sup>
  - 수입신고 수리 1년 이내에 법령이 해당 물품의 판매, 사용의 금지를 규정하여 금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원 화물을 재수출하여 반송하거나 세관의 감독하에 소각한 경우<sup>156)</sup>
  - 화물 인출 이전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세관의 조사에서 손실 또는 손괴를 입어 물품의 가치를 상실했음이 입증된 경우<sup>157)</sup>
  - 화물 인출 이전에 납세의무인이 반송 수출 또는 보세창고 보관을 신청하고 세관이 이를 비준한 경우<sup>158)</sup>

---

153) 「관세법」 제57조

154) 「관세법」 제63조

155) 「관세법」 제65조

156) 「관세법」 제64조의1

157) 「관세법」 제64조의2

158) 「관세법」 제64조의3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은 재정부가 공고한 환급불가 항목 및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가능 관세가 완제품의 선적가격에서 차지하는 재정부가 확정한 비율 또는 금액 이하인 경우, 환급하지 않음<sup>159)</sup>
  - 수출용 원재료 수입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수출 증빙서류를 첨부했을 경우 환급하며, 6개월을 초과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없음
  - 특수한 상황에 있어 재정부가 비준한 경우에 한해 1년 연기할 수 있음
  -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재정부가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원료 환급표준의 규정
    -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계산
    -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한, 보증 등
  
- 과·오납 징수 혹은 환급의 경우, 추가 납부 혹은 환급 기한은 1년으로 제한하며 추가 납부 또는 환급한 날짜까지 납입하거나 실제로 납입한 날의 체신금융 1년 정기예금의 고정이율에 따라 일수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일괄징수하거나 환급해야 함<sup>160)</sup>
  - 과·오납하여 징수한 경우, 세금 완납일 다음 날부터 계산함
  - 과·오납하여 환급한 경우에는 세금환급통지서(duty refund notice)를 발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함
  - 이자를 징수하거나 환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세관으로부터 추가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함
  - 기한 만료 후에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추가 납입일까지 연체한 세액에 일수별로 연체금 1만분의 5를 추가 징수함

---

159) 「관세법」 제63조

160) 「관세법」 제65조

## VI. 원산지 제도

### 1. 개요

-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은 크게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됨<sup>161)</sup>
  - 특혜 원산지규정은 FTA 또는 일반특혜 원산지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등 특혜관세를 부여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FTA 협정 대상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정하거나 GSP의 경우 각국이 일방적으로 규정함
  -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최혜국 대우, 반덤핑, 상계관세, 셰이프가드 적용, 원산지 표시, 통계자료 작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며 WTO 차원에서 통일된 원산지 기준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produced rule)과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rule)으로 나뉨<sup>162)</sup>
  - 완전생산기준이란 물품의 재료 및 생산공정이 전부 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나, 순수한 의미의 완전생산기준은 충족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함

161) 박노형 외(2013), pp. 341~342.

162) 박노형 외(2013), pp. 344~345.

- 실질적 변형기준이란 2개국 이상에서 제조 및 가공공정을 거친 국가들 중에서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음
  - 세번변경 기준(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원재료의 세번(稅番)과 최종 물품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변경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고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며 HS코드 2단위, 4단위, 6단위 변경기준으로 나뉨
  - 부가가치 기준(ad valorem percentages): 물품의 생산·가공공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 가공공정 기준(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s): 물품의 생산·가공공정에서 특정한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 2. 원산지규정

- 대만의 원산지 제도는 「관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수입물품원산지인정표준(Regulations Governing the Determination of Country of Origin of Imported Goods, 이하 수입물품원산지인정표준)」<sup>163)</sup>을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함
- 대만의 원산지규정은 저개발국가 원산지규정, 비특혜 원산지규정, 그리고 대만이 체결한 FTA/ECA에 따른 무역협정 원산지규정으로 나뉘짐
- 각각의 원산지 규정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163)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물품원산지인정표준」,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50047>, 검색일자: 2020. 12. 4.

## 가. 특혜 원산지규정

### 1) 저개발국가 원산지규정

- 저개발국가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for least-developed countries)은 「수입물품원산지인정표준」 제3장에 서술되어 있으며 완전생산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함
  - 저개발국가에서 완전히(wholly) 생산된 물품에 한해 저개발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함<sup>164)</sup>
    - 해당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
    - 해당 국가에서 수확한 야채(vegetable products)
    - 해당 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살아 있는 동물
    - 해당 국가에서 사냥 또는 낚시를 통해 얻은 물품
    - 해당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의해 바다에서 채취한 바다 낚시 및 기타 물품
    - 해당 국가에 착취권(the right of exploitation)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해저, 영해 밖 해저에서 채취된 물품
    - 해당 국가의 제조 또는 가공 작업에서 추출한 폐기물과 수거된 물품은 원료 회수에만 적합함
    - 상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물품으로부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만 생산된 물품
  - 물품의 생산이 둘 이상의 국가에서 이루어질 때 저개발국가에서 물품의 생산이 전체 물품 생산의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부여할 경우, 해당 물품을 저개발국가로 원산지를 인정함<sup>165)</sup>
- 저개발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우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164) 「수입물품원산지인정표준」 제6조; 제9조

165) 「수입물품원산지인정표준」 제8조

증명서(the certificate of origin)를 첨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운송조건을 충족해야 함<sup>166)</sup>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인증받아야 하며 증서의 서식은 대만 재정부에서 제정·고시함
- 수출국에서 대만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
- 운송 국가에서 하역(unloading) 또는 재적재(reloading) 이외의 작업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운송 또는 임시보관 목적으로 제3국을 통해 운송된 경우

## 2) 특혜 무역협정 원산지규정

□ 특혜 무역협정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for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은 대만이 체결한 FTA·ECA의 원산지 규정을 따라 원산지를 결정함<sup>167)</sup>

- 대만이 체결한 9개의 FTA·ECA마다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따로 두고 있으나 대체로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을 모두 적용하고 있음<sup>168)</sup>

□ 협정 대상국별로 원산지 증명서가 다르나 대체로 다음의 정보를 기입함

- 수출입자·제공자(producer)의 이름 및 주소, 이메일 주소 등
- 수출 수입기한
- 물품의 수량 및 설명, 목적
- 품목분류

### 나. 비특혜 원산지규정

□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완전생산기준과 최종 실질적

---

166) 「수입물품원산지인정표준」 제11조

167) 「수입물품원산지인정표준」 제12조

168) 대만 재정부 관무서, "Cargo Clearance-Rules of Origin-3. Rules of Origin for Free Trade Agreements," <https://eweb.customs.gov.tw/singlehtml/1911>, 검색일자: 2020. 11. 18.

변형기준(the 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고 있음<sup>169)</sup>

- 완전생산기준은 저개발국가 원산지규정과 동일하며 최종 실질적 변형기준에서는 세번변형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따르고 있음<sup>170)</sup>
  
- 대만은 원료, 제조, 가공과정이 2개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화물의 최종적인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함<sup>171)</sup>
  - 물품의 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해 HS코드가 변경되었으나 이미 중요 제조 과정을 마쳤거나 혹은 부가가치율이 35%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함
  - 원료를 가공 또는 제조한 이후 생산된 물품과 해당 원료의 CCC코드 6자리를 비교하여 숫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함
  
- 다음의 경우는 최종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명시함<sup>172)</sup>
  - 운송 또는 보관 기간 중 필요한 보존 작업
  -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송하기 위해 수행되는 분류(classification), 등급 지정, 재포장, 포장, 마킹(marking) 또는 라벨 재지정(re-labeling)
  - 물품의 제조 또는 혼합작업으로 완성된 물품이 조합 또는 혼합된 물품과 물품의 특성상 중대한 차이(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가 없는 경우
  - 간단한 절단(simple cutting), 연결, 제작(fabrication) 또는 조립을 포함하는 가공 작업
  - 상품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간단한 건조, 희석 또는 농축 작업

169) 「수입물품원산지인정표준」 제5조

170) 「수입물품원산지인정표준」 제7조

171) 「수입물품원산지인정표준」 제7조

172) 「수입물품원산지인정표준」 제7조

### 3.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Regulations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Advance Ruling on the Country of Origin of Imported Goods, 이하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sup>173)</sup>에 따라 납세의무자 혹은 그 대리인은 세관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원산지 사전심사는 관세율표 제2란에 명시되어 있는 특혜관세율(preferential tariff rate)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의 원산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의미함<sup>174)</sup>
- 재정부에서 원산지 사전심사 업무를 전담하고 기존 담당 세관부서는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 및 관련 원산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업무를 담당함<sup>175)</sup>
-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 및 샘플을 함께 세관에 제출하며 한 장의 신청서에 하나의 물품에 제한됨<sup>176)</sup>
  - 신청자가 부정확한(incorrect) 서류 및 샘플을 제출했을 경우, 세관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음<sup>177)</sup>
  - 다만 합리적인(reasonable)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며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 번만 가능함<sup>178)</sup>
- 다음의 경우에 세관은 사전에 신청자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음을 명시함<sup>179)</sup>
  - 부정확한 서류 및 샘플을 제출했을 경우 혹은 신청자가 기한에 보완(remedy)해

173)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media=print&pcode=G0350075>, 검색일자: 2020. 11. 11.

174)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2조

175)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11조

176)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3조

177)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4조

178)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4조

179)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5조



- 서 제출한 관련 서류 및 샘플이 부정확한 경우
- 신청자가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류(falsified)가 있을 경우
  -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가상(hypothetical)의 물품이거나 설계 단계 중에 있거나 아직 생산되지 않은 물품인 경우
  - 원산지사전심사 신청물품이 동일 수출업자나 제조업자에 의해 수출되는 원산지 사전심사를 받고 있는 물품이거나 원산지 논란으로 행정구제(administrative relief)를 받고 있는 물품인 경우
  - 신청자가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을 철회(withdraw)한 경우
- 세관은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혹은 보정한 서류를 받은 다음 날부터 2달 안에 서면으로 사전심사 결과를 회신하며 결과 회신기간은 2달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sup>180)</sup>
- 결과 회신 연장 시에 세관은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를 통지(inform)함
  - 사전심사 결과는 신청자가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년간 유효함
- 신청인은 세관이 통지한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관에 재심사(review)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적 구제절차(administrative remedy procedure)를 실시할 수 있음<sup>181)</sup>
-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가 신청자의 잘못된(erroneous) 혹은 거짓(ingenuine) 정보로 인해 변경된 경우 세관은 사전심사 결과를 철회(revoke)해야 함<sup>182)</sup>
- 원산지 사전심사를 거친 물품은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form)에 명시해야 하며 관할 세관은 세관에 도착한 물품이 원산지 사전심사에서 검토한 물품과 동일할 경우,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함<sup>183)</sup>

180)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6조

181)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7조

182)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9조

183)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8조

- 다만 원산지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원산지 사전심사로 결정된 원산지와 달라진 물품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세관은 사전심사 결과를 수정(modify)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notify)할 수 있음<sup>184)</sup>
  - 수정된 사전심사 결과는 사전심사 결과가 서면으로 발급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함
  - 수정된 사전심사 결과에 수입규제가 수반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수입규제를 적용함
  - 신청인이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원산지 판정의 변경이 손실을 초래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은 판결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연장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184)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10조

## VII. 보세제도

### 1. 개요

- 대만의 보세제도는 「관세법」 제3장 세금의 우대 제2절 보세 제58조에서 제62조까지 보세창고, 보세공장, 물류창고, 면세점에 대한 관세 환급 및 감면, 등록절차, 혜택, 제한, 물품의 처리, 통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제58조에서 보세창고의 설립과 운영 및 혜택, 제59조에서 보세공장의 설립과 운영 및 혜택, 제60조에서 제62조까지 물류센터 및 면세점 등의 설립과 운영 및 혜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보세창고, 보세공장, 물류센터, 면세점의 등록, 통관절차, 물품관리, 벌칙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해당 규정에서 다루고 있음
  - 보세창고의 등록, 통관절차, 물품관리, 벌칙 등에 대한 내용은 「보세창고 설립 및 관리방법(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Bonded Warehouses, 이하 보세창고 설립 및 관리방법)」<sup>185)</sup>에서 규정함
  - 보세공장의 등록, 통관절차, 물품관리, 벌칙 등에 대한 내용은 「세관 보세공장

---

185)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보세창고 설립 및 광고방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50006>, 검색일자: 2020. 8. 26.

관리방법(Regulations Governing Customs Bonded Factories),<sup>186)</sup> 이하 세관 보세공장 관리방법)에서 규정함

- 물류센터의 등록, 통관절차, 물품관리, 벌칙 등에 대한 내용은 「물류센터 물품 통관방법(The Regulations Governing Customs Clearance for Goods in Logistics Centers, 이하 물류센터 물품 통관방법)」<sup>187)</sup>에서 규정함
- 면세점의 등록, 통관절차, 물품관리, 벌칙 등에 대한 내용은 「면세점 설치 관리 방법(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Duty-free Shops, 이하 면세점 설치 관리방법)」<sup>188)</sup>에서 규정함

## 2. 보세제도

### 가. 보세창고의 운영 및 관리

- 수입물품을 수령하기 전 세관에 사전 허가를 득해 보세창고로 물품 저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 보관 시한 내에 재조립하여 재수출 또는 재수출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sup>189)</sup>
  - 사전에 세금 환급 취소에 대해 공고한 항목을 제외하고 재손질한 국내 물품을 보세창고에 저장한 후 수출 후 「관세법」 제63조의 규정(수출용 원자재 환급)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전항의 창고의 물품은 규정된 창고 저장기한 내에 물품소유인 또는 창고증권 소유인이 세관이 창고의 범위 내에서 구분, 분류, 분할, 조립 및 재포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186)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세관 보세공장 관리방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50005>, 검색일자: 2020. 8. 26.

187)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물류센터 물품 통관방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SearchContent.aspx?pcode=G0350049&kw1=logistic>, 검색일자: 2020. 8. 26.

188)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면세점 설치 관리방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Para.aspx?pcode=G0350036>, 검색일자: 2020. 8. 26.

189) 「관세법」 제58조

- 보세창고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기 및 보증금 납입을 신청해야 하며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설비의 설치, 보증금 액수와 종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물품의 저장, 관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하도록 함
- 등록 승인을 받은 창고는 2년 단위로 유효한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sup>190)</sup>
- 보세창고는 항만지역, 공항, 수출가공구, 과학기반산업단지, 농업과학기술단지, 항만 주변지역 또는 세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지역에 설립 가능함<sup>191)</sup>
  - 납입 자본금이 2천만신대만달러 이상인 유한 책임 회사로 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비, 24시간 촬영 카메라 장치를 갖추고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전자 데이터 전송을 통해 통관, 회계 업무, 화물 관리가 가능해야 함
  - 세관에 의해 건물이 도난 방지, 방화, 방수, 환기, 조명 등 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비를 갖춘 창고로 적합하고 용이한 작업장으로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아야 함
  - 24시간 촬영 가능한 메모리 카메라 장치 등을 갖추어야 함
  -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전자 데이터 전송을 통해 통관, 회계 업무, 화물 관리 및 기타 관련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보세창고에 컴퓨터 및 관련 네트워크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보세품의 최대 보관기간은 2년이며 연장은 불가하나 중요한 국내 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 필수 생활용품, 국내 건축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재료 또는 특수 목적으로 세관에서 승인한 기타 재료의 경우 예외로 함<sup>192)</sup>
  - 일반적인 보세물품의 보관기간은 2년이나 수출가공구, 과학기반산업단지, 농업과학기술단지 또는 보세공장에 공급된 보세창고에 보관된 외국물을 재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처음 보관용으로 인도한 날부터 2년의 보관기간을 개시함<sup>193)</sup>

190) 「보세창고 설립 및 관리방법」 제9조

191) 「보세창고 설립 및 관리방법」 제5조; 제6조

192) 「보세창고 설립 및 관리방법」 제45조

- 보세창고에서 보관이 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음<sup>194)</sup>
  - 일반 물품, 국제 무역을 위해 운송 차량에만 사용되는 자재 및 객실 물품, 국제 무역을 위해 운송 차량에만 사용되는 연료, 선박 또는 항공기 수리를 위한 장비 및 재료, 미네랄 오일, 위험물, 검사, 시험, 구분, 분류, 분할, 조립 및 재포장물품, 컨테이너 또는 펠릿 수리용 재료, 전시품, 면세점 판매물품, 세관이 보관하도록 승인한 기타 물품 등
  
- 보세창고에서 보관이 금지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sup>195)</sup>
  -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품
  - 마약 및 통제 약물
  - 총기,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중고차, 고철, 고철, 위험한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부품 및 구성품
  - 수입 통제하에 있는 물품, 검역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동식물 또는 그 제품
  - 관할 당국에서 발행한 승인문서가 없는 독성 화학물질, HCFC(HydroChloroFluoro-Carbon)와 같은 통제 화학물질, 방사성 물질
  - 수출 통제 지역으로 이동되는 전략적 최첨단 기술 물품
  - 보관기간 동안 공공위험 또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품, 보호 야생 동물 또는 그 제품, 다이아몬드
  - 관련 관할 당국에서 발표한 사전승인이 필요한 기타 물품
  - 재정부가 보세창고에 보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고시한 기타 물품
  
- 보세창고로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하역, 보관 등이 가능함<sup>196)</sup>

193) 「보세창고 설립 및 관리방법」 제2조

194) 「보세창고 설립 및 관리방법」 제3조

195) 「보세창고 설립 및 관리방법」 제4조

196) 「보세창고 설립 및 관리방법」 제16조~제19조 및 Bonded Warehouse Cargo Clearance,

- 외국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외국물품 보세창고 보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세관원과 함께 창고운영자가 표시와 수량을 확인하여야 함
  - 항공기 전용의 연료·재료·기내용품 또는 정비기기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보세창고에 하역 및 보관이 가능함
  - 기업 또는 보세공장, 물류센터로부터 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신고서 제출 후 전산 통관서 또는 보관 허가증을 이용하여 물품을 창고에 보관할 수 있음
  - 제조업자로부터 재결합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판매업자와 구매자가 함께 신고 후 전산 통관서를 이용하여 물품을 창고에 보관할 수 있음
- 세관 사무소는 보세창고에 보관된 보세물품에 대해 정기 또는 예정되지 않은 감사를 수행하도록 세관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음<sup>197)</sup>
-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다음의 사항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sup>198)</sup>
- 창고에서 운반 신청을 한 수출물품의 경우, 창고 운영자는 신고서를 제출 후 허가에 따른 표시 및 수량을 확인해야 함
  - 수출가공구 내 기업이나 과학기반산업단지 및 농업기술단지의 기업 또는 보세공장에 공급되는 보세창고로부터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신고서를 작성 후 창고운영자가 통관서류 또는 인도 허가에 따라 표시와 수량을 확인하여 창고에서 물품을 인도할 수 있음
  - 수출가공구 내 기업이나 과학기반산업단지 및 농업기술단지의 보세공장에 판매되는 자급창고로부터의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한 후 물품을 이관할 수 있음

<https://etaipei.customs.gov.tw/singlehtml/1336>, 검색일자: 2020. 8. 26.

197) 「보세창고 설립 및 관리방법」 제14조

198) 「보세창고 설립 및 관리방법」 제20조~제25조 및 Bonded Warehouse Cargo Clearance, <https://etaipei.customs.gov.tw/singlehtml/1336>, 검색일자: 2020. 8. 26.

- 보세창고에서 허용 가능한 작업은 다음과 같음<sup>199)</sup>
  - 검사 및 시험: 창고에 보관된 물품 검사 또는 시험
  - 구분: 보관물품을 재장착하거나 물품에 라벨을 부착
  - 분류: 물품의 성질, 형태, 크기, 색상 등 특성에 따라 보관 물품의 등급 분류
  - 분할: 저장한 물품을 분할시킴
  - 조립: 인력이나 공구를 이용하여 물품 조립
  - 재포장: 원래 포장을 변경하거나 저장된 물품을 재포장
  
- 보세창고 내 작업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할 수 있음<sup>200)</sup>
  - 재화의 본래의 성질이나 모양은 변경 후에도 본래의 모양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재손질 과정에서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무겁고 복잡한 기계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재손질 후 국내 구매주문서에 포함된 부적합 물품은 쓸모없는 재화로 폐기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 부적합 물품이 해외 구매주문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물품은 준거 규정에 따라 교환을 위해 반환하거나 위탁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 물품으로 폐기하고 폐기할 수 있음
  - 재손질 후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물품이 보세창고에서 작업 처리를 거치기 전 물품 소유자 또는 적하목록 보유자는 물품의 이름, 수량, 보관 일, 신고 번호, 재손질 범위 및 근로자의 이름을 세관에 신고해야 함
  - 세관의 허가에 따라 지정된 세관공무원의 감독하에 수리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음
  - 단 수출가공구역 내에 위치한 보세창고 및 자율관리 시행을 위해 세관이 승인한 보세창고는 세관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함

199) 「보세창고 설립 및 관리방법」 제34조

200) 「보세창고 설립 및 관리방법」 제34조



## 나. 보세공장의 운영 및 관리

- 수출 가공 공장은 세관의 승인과 감독하에 보세공장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보세공장에서 수출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위해 수입·저장한 원자재는 관세가 면제됨<sup>201)</sup>
  - 보세공장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제품 및 관세를 면제한 원료는 세관의 비준을 거쳐 물품 출고 형태에 따른 세금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고가 불가능함
  
- 보세공장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구비해야 하는 자격, 조건, 최저 자본금, 신청절차, 설비의 설치,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보세물품의 가공, 관리, 통관, 제품의 국내 판매에 있어 세금의 추가 납부절차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하도록 함<sup>202)</sup>
  - 보세공장은 자본금 5천만신대만달러 이상으로 적절하게 등록된 공장을 보유한 유한 회사로 3년간의 재무안정성, 수출 판매용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 원자재 및 완제품 보관에 적합한 창고를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세금 체납 또는 미납 벌금이 없거나 이에 상응하는 가치 담보 또는 보증을 제출해야 함
  - 공장 동에는 세관의 통제가 용이하고 경비원이 상주하는 경비실이 있어야 함
  - 수출 판매용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와 공장에 설치된 적절하고 완전한 안전시설이 세관의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원자재 및 완제품 보관에 적합한 검사를 거쳐 세관에서 승인한 별도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부피가 크고 위험한 보세품의 경우 세관에서 승인한 별도의 적절한 보관 장소가 있어야 함
  - 공장의 공장 건물 및 시설은 생산 기계 및 장비의 설치, 도난, 화재, 수해 방지 시설 설치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보세품 작업을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함

201) 「관세법」 제59조

202) 「세관 보세공장 관리방법」 제4조; 제5조

- 공장의 제품은 수출용이어야 하나 제품 일부(연간 총 생산량의 절반 이하)의 국내 판매가 세관 감독관에 의해 특별히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sup>203)</sup>
  - 수출 판매 및 공장에 설치된 시설의 안정성에 대해 세관의 검사 및 검증을 거쳐 확립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받아야 함
  - 또한 원자재 및 완제품 보관을 위해서는 세관 당국이 승인한 별도의 창고를 보유해야 함
  - 단 부피가 크고 위험한 보세품의 경우 세관에서 승인한 별도의 적절한 보관 장소가 필요함
  
- 보세공장은 비(非)보세품 사용에 대해 세관의 사전 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sup>204)</sup> 해외에서 원자재, 자가용 기계 및 장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 신청서로 신고 후 일반 물품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통관하도록 함<sup>205)</sup>
  - 비보세품은 국외 또는 보세 구역에서 수입한 자재를 사용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보세창고에서 생산한 물품 또는 과세 지역에서 구입한 자재를 의미함
  
- 보세공장은 지정된 지역에서 세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품 검사, 시험, 수리 및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기록을 보관하기 위한 회계장부 또한 세관의 사전 승인 및 확인 도장을 득해야 함<sup>206)</sup>
  
- 보세구역에서 보세공장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 및 운영되고 있음<sup>207)</sup>

203) 「세관 보세공장 관리방법」 제4조~제6조; 제40조 및 Bonded Factory Cargo Clearance, <https://etaipei.customs.gov.tw/singlehtml/1335>, 검색일자: 2020. 8. 31.

204) 「세관 보세공장 관리방법」 제27-1조

205) 「세관 보세공장 관리방법」 제28조

206) 「세관 보세공장 관리방법」 제24조

207) 「세관 보세공장 관리방법」 제31조~제33조; 제40조 및 Bonded Factory Cargo Clearance, <https://etaipei.customs.gov.tw/singlehtml/1335>, 검색일자: 2020. 8. 31.

- 수출가공구나 과학기반산업단지, 기타 보세공장에 있는 기업이 보세공장에 보세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동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함
  - 보세창고에 의하여 보세공장에 공급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의 소유자 또는 물품명세서의 보유자가 세관에 물품을 신고해야 함
    - 창고운영자는 세관담당관과 함께 확인 후 물품을 창고로부터 인도할 수 있음
  - 자급 보세창고에 의해 보세공장에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세관에 신고한 후 세관이 표시와 수량을 확인한 다음 창고에서 물품을 인도할 수 있음
  - 물류센터에서 보세공장에 물품을 공급할 시 공장과 센터가 전자적으로 세관에 신고한 후 물품 인도가 가능함
  - 과세지역에서 보세공장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국내 공급업체가 보세공장에 판매하는 가공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및 세금이 환급됨
- 보세공장에서 선적되어 출고되는 물품의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따라 관리 및 운영되고 있음<sup>208)</sup>
- 보세공장에서 수출하는 물품은 수출항의 세관에서 검사가 의무이며 보세공장에서 수출한 보세품이 어떠한 사유로든 반품 및 재수입되는 경우 보세공장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반품의 재수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과학기반산업단지의 기업이나 수출가공구 또는 다른 보세공장에 보세품을 판매하는 보세공장과 구매자가 공동으로 보세품의 수출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추가가공 및 수출이 가능함
  - 보세공장의 보세품은 직접 수출 또는 보세구역 밖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신청 후 세관 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반출이 가능함

208) 「세관 보세공장 관리방법」 제34조~제42조 및 Bonded Factory Cargo Clearance, <https://etaipei.customs.gov.tw/singlehtml/1335>, 검색일자: 2020. 8. 31.

- 국내 판매 가능한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해당 제품의 관세부과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관련 관세율에 따라 계산 및 평가됨

#### 다. 물류센터의 운영 및 관리

- 물류센터는 주로 보세물품의 창고업, 운송업 및 유통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세관에 의해 등록 승인을 받은 보세입지를 의미함<sup>209)</sup>
  - 물류센터는 세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점별로 등록, 관리, 통관 등을 처리하고 독립계좌를 설치하여 물품의 출입을 통제해야 함
  - 필요한 경우 물류센터 내에서 재손질 및 간단한 처리를 할 수 있음
  - 물류센터의 물품을 시험, 검사, 재손질 또는 단순 처리 목적으로 과세구역 또는 보세구역으로 배송하는 경우 세관의 승인이 필요함
- 보세물품의 저장, 중계운송 및 배송 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은 세관에 물류센터로 등기를 신청해야 함<sup>210)</sup>
  - 물류센터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기 및 보증금 납입을 신청해야 하며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최저자본금, 보증금 액수와 종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물품의 관리, 통관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하도록 함<sup>211)</sup>
  - 납입 자본금 1억 5천만신대만달러 이상의 유한 책임 회사로 국제항만, 국제 공항, 수출가공구, 과학산업단지, 농업기술단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전자 데이터 전송을 통해 통관, 회계 업무, 화물 관리가 가능해야 함
  - 국제항만, 국제공항, 수출가공구, 과학산업단지, 농업기술단지 내 또는 국제항구 또는 국제공항에 인접한 곳 또는 사례별로 세관이 정당하게 승인한 장소에 위치해야 함

209) 「물류센터 물품 통관방법」 제3조

210) 「관세법」 제60조; 「물류센터 물품 통관방법」 제5조

211) 「관세법」 제60조; 「물류센터 물품 통관방법」 제5조

- 세관 절차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효율적인 보안 시스템과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분리되거나 격리된 공간을 보유해야 함
  - 신청자는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전자 데이터 전송을 통해 통관, 회계 업무, 화물 관리 및 기타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류센터에 컴퓨터 및 관련 네트워크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출입문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전산화된 물품과 차량 출입 통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신청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보증금을 송금해야 하며 자율관리 조건을 준수해야 함
- 물류센터에 보관된 물품은 2년으로 보관기간에 제한을 둔 물품을 제외하고 보관 제한은 없으나, 2년 이상 보관된 물품의 경우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세관 요청 시 서면으로 기록을 제출해야 함
- 물류센터의 물품은 재손질 및 간단한 가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입된 물품의 수출 또는 재손질 및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함<sup>212)</sup>
- 국내의 물류센터가 이미 세금환급의 취소를 공고한 항목을 제외하고 수출 후 「관세법」 제63조의 규정(수출용 원자재 환급)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물류센터의 재손질 및 단순 처리로 인한 물품의 감소는 세관의 확인에 따라 상각 승인을 받을 수 있음<sup>213)</sup>
  - 수입할 필요가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가치가 보세범주에 해당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세금을 부과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이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의 감독하에 폐기될 수 있음<sup>214)</sup>
  - 물류센터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물품의 목록은 보세창고의 취급불가 물품 목록과 동일함<sup>215)</sup>

212) 「관세법」 제60조

213) 「물류센터 물품 통관방법」 제23조

214) 「물류센터 물품 통관방법」 제23조

215) 「물류센터 물품 통관방법」 제4조

- 처리 대기 중인 외국 물품이 물류센터에 보관될 경우 물류센터는 온라인으로 세관에 전자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입고된 물품은 신고가 세관에 기록된 후에만 보관이 가능함
  
- 물류센터로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다음의 내용을 준수할 시 반출입이 가능함<sup>216)</sup>
  -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물품의 경우 환적으로 세관에 신고하거나, 증착신청서와 함께 컨테이너(물품)가 신고되는 반출장소 지역 세관에 신고 후 반출 가능함
  - 보세공장, 과학단지, 수출가공구역에서 물류센터로 반입되는 물품은 수출신고, 보세창고 또는 기타 물류센터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수입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반입이 가능함
  - 과세 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국산 물품 수출입 양식을 작성하여 전산 파일에 기록한 후 반입이 가능함
  - 물류센터의 물품을 시험, 검사, 재손질 또는 단순 처리 목적으로 과세구역 또는 보세구역으로 배송하는 경우 세관의 승인이 필요함
  
- 중국 본토에서 물류센터로의 미승인 물품 반입에 대한 감독은 대만 지역과 본토 지역 간의 무역 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하고 있음<sup>217)</sup>

## 라. 면세점의 운영 및 관리

- 물품을 출입국 여객에 판매하는 업을 경영하는 경우 세관에 면세점 영업을 위한 등기를 신청해야 함<sup>218)</sup>
  - 「공동 창고, 컨테이너 터미널, 보세창고, 물류센터 및 관세 공인시설의 자율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면세점은 관할 세관에 자율 관리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sup>219)</sup>

216) 「물류센터 물품 통관방법」 제9조~제10조; 제11조~제16조, Logistic Center Cargo Clearance, <https://etaipei.customs.gov.tw/singlehtml/1337>, 검색일자: 2020. 8. 31.

217) 「물류센터 물품 통관방법」 제31조

218) 「관세법」 제61조

219) 「면세점 설치 관리방법」 제16조

- 면세점이 보관하였다가 판매에 제공하는 보세물품은 규정된 기한 내에 여객에 판매해야 하며 원 물품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하도록 함<sup>220)</sup>
  - 자격, 조건, 최저자본금,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물품의 관리, 통관, 판매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함
  - 물품의 설치, 관리 및 입출고 절차는 「보세창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면세점의 보세품이 유지 보수, 반품, 재수출이 필요한 경우 자체 보세창고로 물품을 반입하도록 함
  
- 면세점의 보세물품은 전문적으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저장하는 보세창고에 저장해야 하며 면세점 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기를 신청해야 함
  - 「회사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유한 책임 회사여야 하며 총 납입자본금은 5천만신대만달러 이상이어야 함
  - 비즈니스 라인은 관광객에게만 상품을 판매해야 함
  - 신청인은 면세점의 동일한 법인에 따라 세관이 자체 제공한 보세창고 면허를 소지해야 함
  -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전자 데이터 전송을 통해 통관, 회계 업무, 화물 관리 및 기타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관련 네트워크 시설을 보유해야 함
  - 창고 이전, 판매, 상품 수령, 상품 반품, 픽업 등의 데이터는 항목별로 CPT Single Window System으로 전송해야 함
  - 관할 세관공무원이 작업하기에 편리한 장비와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단 특수한 지리적 환경에 해당하는 기업은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음
  - 건물은 소방 장비, 조명 장비 또는 물품의 안전을 유지하는 기타 장비를 갖추어야 함
  - 면세점은 입구와 출구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연속 촬영이 가능하고, 최소 30일의 기록이 있어야 하며, 세관에서 상시 검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220) 「관세법」 제61조

- 수입품이 선적 중 실수, 과도한 하역 또는 신고 전 기타 특별한 사유로 환적하여 반품 또는 수출된 경우 운송 수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위해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원 물품을 반품 또는 환적하여 수출해야 함<sup>221)</sup>
  - 합리적 사유로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보관을 위해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세공장 보관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전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물품은 매각 또는 처분함
  
- 면세점은 재정부에서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 본토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할 권한이 없음<sup>222)</sup>

## 마. 기타

- 대만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외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수출 증대, 외화 획득, 국제수지 개선,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1966년 12월에 최초로 제조업 위주의 수출가공구를 가오슝에 설치하였음<sup>223)</sup>
  - 대만의 수출가공구는 국제무역의 촉진,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확대, 첨단과학기술의 도입, 취업 기회의 증대 등 4가지를 목표로 하여 이를 위해 수출입을 자유화하고 각종 수속절차를 간소화 및 제세금 면제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 대만 경제부에서 수출가공구의 사업, 수출가공구 관리처 및 관련 부처의 업무관리, 수출가공구의 위치, 면적 등을 결정하고, 수출가공구 내 보세범위를 확정하고 보세조건을 부여함<sup>224)</sup>
  - 기업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은 행정부가 담당하며 행정부는 심사에 관해 경제부와 협의함

---

221) 「관세법」 제62조

222) 「면세점 설치 관리방법」 제6조

223)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대만·중국 자유무역지역 운영사례 조사결과 보고」, 2005. 7., p. 2

224) 「수출가공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 보세, 통관, 가공, 관리, 자체 검사 물품, 월간 집단 신고, 국내 판매에 필요한 추가 세금 절차 등 규정은 재정부와 함께 관리하도록 함<sup>225)</sup>
- 「수출가공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 이하 수출가공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p>226)</sup>에서 수출가공구의 설치 근거, 관련 사업, 관리방법, 세제 우대조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에 「수출가공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시행 규칙(Enforcement Rules of 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sup>227)</sup> 「수출가공구 보세 사업 관리 규정(Management Regulations Governing Bonded Business in the Export Processing Zone)」<sup>228)</sup>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수출가공구 내 제세금 면제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음<sup>229)</sup>
  - 수입된 민간기계 및 설비는 수입관세, 물품세, 영업세가 면제되나 수입 기계·장비를 수입한 후 5년 이내에 비보세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물품 수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 물품세, 영업세를 부과하도록 함
  - 무역 및 창고업에 사용되는 환적용 원재료, 연료, 물품, 반제품, 시료, 실험동물 및 식물, 완제품은 수입관세, 물품세, 영업세가 면제되며 수입원자재, 연료, 물품, 반제품, 견본품을 비보세지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물품수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 물품세, 영업세가 부과됨

225) 「수출가공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226)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수출가공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050001>, 검색일자: 2020. 10. 13.

227)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수출가공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050002>, 검색일자: 2020. 10. 13.

228)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수출가공구 보세사업 관리 규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050023>, 검색일자: 2020. 10. 13.

229) 「수출가공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 제조업체가 비보세지역에 판매하는 물품들은 수출품목으로 간주되어 해당 물품이 수출가공구역으로 반입될 경우 사전에 세관에 관련 수속을 신청해야 함
  - 감세, 면세 또는 세금 환급 신청 품목은 비보세지역으로 반송될 시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비보세지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가격 및 세율에 따라 감면된 세금 또는 환급세를 부과해야 함
  - 다만 5년간 수출가공구에 설치되었던 기계·장비는 해당 내용에서 제외됨
  - 반품, 교환 등의 사유로 수입을 신청할 때 일반 물품 수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관함<sup>230)</sup>
  - 수리,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해 보세물품을 비보세지역으로 운송하기 전에 관리 또는 지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세물품은 수출가공구에서 반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입되어야 함<sup>231)</sup>

---

230) 「수출가공구 보세 사업 관리 규정」 제23조

231) 「수출가공구 보세 사업 관리 규정」 제40조

## VIII. 수출입 규제

### 1. 개요

- 대만의 수출입 규제는 수입 규제, 수출 규제, 중국에 대한 수출입 규제, 주요 인증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음
  - 수입 규제의 경우 수입금지물품, 수입제한물품 및 조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 규제의 경우 수출금지물품, 수출제한물품 및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만의 수입 규제는 「무역법(Foreign Trade Act)」, 「무역법 시행세칙(Enforcement Rules of the Foreign Trade Act)」과 「수입물품 관리방법(Regulations Governing Import of Commodities)」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sup>232)</sup>
  - 그 밖에 「전략적 최첨단 기술 품목 수출입 관리방법(Regulations Governing Export and Import Of Strategic High-tech Commodities)」, 기타 수입제한품목과 수입검사품목 등에 따라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 대만은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제한조치를 폭넓게 적용하는 편으로 중국 본토에서

---

232)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필수수입지침」, [https://fbfh.trade.gov.tw/fh/ap/listIEGuidef.do?q\\_type=1](https://fbfh.trade.gov.tw/fh/ap/listIEGuidef.do?q_type=1), 검색일자: 2020. 9. 8.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대만 지역과 본토 지역 간의 무역 허가 방법(Regulations Governing Permission of Trade between Taiwan Area and Mainland Area)」<sup>233)</sup>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하고 있음

- 대만의 수출규제는 「무역법」, 「무역법 시행세칙」과 「수출물품 관리방법(Regulations Governing Export of Commodities)」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그 밖에 「전략적 최첨단 기술 품목 수출입 관리방법」, 기타 수출제한물품 목록, 보조 물품 목록 등에 따라 수출을 제한하고 있음<sup>234)</sup>

## 2. 수입 규제

### 가. 수입 금지 및 제한

- 「관세법」상 수입금지 물품은 위조 또는 가짜 통화 또는 증권, 위조 통화, 인쇄용 금형,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위반하는 문서, 법률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물품 등임<sup>235)</sup>
- 「무역법」에 따라 경제부 국제무역국에서는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국제 조약, 무역 협정, 국방, 사회 보장, 문화 보호, 위생, 환경 또는 생태 보존, 정책 요구 등에 따라 수입제한 대상 물품목록을 선정하고 있음
  - 해당 물품들은 물품의 표준 분류에서 각 물품 아래에 3자리 코드가 병기되어 분류되고 있음
  - 수입제한 대상 물품목록의 수입 관리품목(code 111): 경제부 국제무역국의 승

233)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대만 지역과 본토 지역 간의 무역 허가 방법」,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Q0040002>, 검색일자: 2020. 10. 12.

234)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필수수입지침」, [https://fbfh.trade.gov.tw/fh/ap/listIEGuidef.do?q\\_type=2](https://fbfh.trade.gov.tw/fh/ap/listIEGuidef.do?q_type=2), 검색일자: 2020. 9. 8.

235) 「관세법」 제15조

- 인을 받지 않는 한 수입이 불가능함
- 수입제한 대상 물품목록의 수입 조건부 허가(code 121): 특정 승인 조건이 있으며, 수입자는 경제부 국제무역국에서 수입 허가를 발급한 후 별도의 수입 규정을 따라야 함(예: 물품 관할 당국에서 발행한 동의 문서 첨부)
  - 수입물품이 검사 또는 검역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검사 또는 검역규정에 따라 수입하여야 하며, 대만의 수입물품 분류에 A, B, C, F, H 또는 W의 수입 규제 코드로 검역 종류가 표시되어 있음<sup>236)</sup>
    - A. 수산물 수입: 행정원(Executive Yuan, 이하 행정원) 위생서(Department of Health)의 「항구검역시행세칙(Regulations Governing Quarantine at International Port)」에 따라야 함
    - B. 동식물 수입: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Bureau of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and Quarantine Executive Yuan)이 공표한 ‘동식물 검역 대상 물품표(Table of Commodities Subject to Legal Animal & Plant Quarantine)’ 및 관련 규제
    - C. 일반물품의 수입: 경제부 표준 검험국(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Ministry of Economics Affairs, 이하 경제부 표준 검험국)의 ‘법적 검사 대상 물품표(Table of Commodities Subject to Legal Inspection)’ 및 관련 규정
    - F. 식품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 방법(Regulations of Inspection of Imported Foods and Related Products)」 또는 「수입 의약품의 국경 검사방법(Regulations Governing the Border Inspection of Imported Pharmaceuticals)」에 따르며 수입자는 위생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이하 위생복지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함
    - H. 위생복지부가 발표한 수입산 한약재 법정 검사 대상 품목 수입: 수입업체는 위생복지부 식품 의약품 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inistry

236)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필수수입지침」, [https://fbfh.trade.gov.tw/fh/ap/listIEGuidef.do?q\\_type=1](https://fbfh.trade.gov.tw/fh/ap/listIEGuidef.do?q_type=1), 검색일자: 2020. 9. 8.

of Health and Welfare)에 검사를 신청해야 함

- W. 주류 수입: 재정부와 위생복지부의 「수입 주류 검사 방법(Regulations Governing the Inspection of Imported Alcohol)」에 따르며 수입자는 재정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함

- 기타 대만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한해 코드명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MWO’는 수입 금지, ‘MPI’는 조건부 수입 허가를 나타냄

〈표 2-Ⅷ-1〉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수입제한 물품 목록

분류코드 <sup>1)</sup>	품 번 <sup>2)</sup>
111	0106.20.90.10-8, 1518.00.50.00-2, 2710.19.51.21-9, 2710.91.10.00-5, 2710.91.20.00-3, 2710.91.90.00-8, 2830.90.90.10-2, 2852.90.00.00-6, 2903.92.10.00-1, 2903.92.20.00-9, 2904.20.00.14-3, 2908.11.00.00-6, 2908.19.10.00-6, 2908.19.90.20-5, 2909.19.90.10-6, 2909.19.90.30-2, 2914.31.00.00-4, 2914.39.00.10-4, 2914.79.00.20-3, 2921.45.00.60-6, 2921.45.00.71-3, 2921.45.00.72-2, 2921.49.00.10-3, 2921.49.00.20-1, 2925.29.00.10-3, 2926.90.90.30-3, 2929.90.00.10-3, 3301.90.11.00-8, 3403.19.90.10-5, 3404.90.90.10-6, 3824.99.23.10-1, 3824.99.99.11-9, 8424.10.00.19-9
111, MWO	2903.14.00.00-8, 2903.19.10.10-9, 2903.76.00.00-3, 2903.77.00.10-0, 2903.77.00.20-8, 2903.77.00.30-6, 2903.77.00.40-4, 2903.77.00.51-0, 2903.77.00.61-8, 2903.77.00.62-7, 2903.77.00.71-6, 2903.77.00.72-5, 2903.77.00.73-4, 2903.77.00.74-3, 2903.77.00.75-2, 2903.77.00.76-1, 2903.77.00.77-0, 2903.79.00.20-6, 2903.81.00.00-6, 3813.00.00.10-9, 8548.10.10.00-9
111, B01	0106.19.40.23-7, 0106.39.00.31-1, 0106.49.00.10-4, 0106.49.00.20-2, 0302.89.89.50-2, 0303.89.89.20-8, 0602.90.10.10-9, 1207.99.20.90-8, 1404.90.99.50-2
111, F01	0304.49.90.40-9, 0304.59.90.40-6, 0304.89.90.50-7, 0304.99.10.10-1, 0305.39.90.30-2, 0305.59.90.30-7, 0307.60.10.11-2, 1604.19.90.31-1, 1604.19.90.32-0, 1604.19.90.39-3

〈표 2-VIII-1〉의 계속

분류코드 <sup>1)</sup>	품 번 <sup>2)</sup>
111, B01, F01	0306.39.90.11-4
111, F01, MWO	0301.99.29.43-4, 0301.99.29.44-3, 0301.99.29.45-2, 0301.99.29.46-1, 0301.99.29.47-0, 0301.99.29.48-9, 0301.99.29.49-8, 0302.81.00.10-5, 0303.81.00.10-4, 0304.47.00.10-6, 0304.59.90.20-0, 0304.88.00.11-5, 1604.19.90.71-2, 1604.19.90.72-1, 1604.19.90.79-4
111, F02, MWO	0301.99.29.51-3
111, B01, F01 MWO	0208.90.29.20-4
113, B01, F01 MWO	0206.10.10.00-8, 0206.10.90.11-8, 0206.10.90.12-7, 0206.10.90.13-6, 0206.10.90.70-6, 0206.10.90.81-3, 0206.10.90.82-2, 0206.10.90.83-1, 0206.10.90.99-3, 0206.21.00.00-7, 0206.29.10.00-7, 0206.29.90.50-9, 0206.29.90.61-6, 0206.29.90.62-5, 0206.29.90.63-4, 0206.29.90.71-4, 0206.29.90.72-3, 0206.29.90.99-2, 1602.50.20.19-4, 1602.50.20.29-2, 1602.50.20.99-7
114, 465, B01 MWO	0703.20.10.00-4, 0703.20.90.00-7, 0712.90.40.00-2
613	3604.90.10.10-1, 3604.90.30.10-7, 3604.90.40.10-5
614	3604.90.10.20-9, 3604.90.40.20-3
615	3604.90.10.90-4, 3604.90.30.90-0, 3604.90.40.90-8
121, 368	7102.10.00.00-1, 7102.21.00.00-8, 7102.21.00.00-8

주: 1) 111(경제부 국제무역국 승인), 113(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수입품으로 경제부 국제무역국 승인 필요), 114(북한물품 수입금지), 121(경제부 국제무역국 특정 승인조건), 368(킴벌리 프로세스 인증), 613(교통통신해양항만국 승인), 614(국방부의 승인), 615(경찰청 및 내무부 승인), MWO(중국물품 수입금지), B01(동식물검역국 검역), F01 및 F02(식품 및 식품관리품으로 대만 위생복지부 식약청 검역 필요)

2) 대만은 11자리 CCC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표기는 경제부 국제무역국의 품번 표기를 준용하였음  
 자료: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Classification of commodities and regulations," [https://fbfh.trade.gov.tw/fh/ap/downloadListf\\_e.do](https://fbfh.trade.gov.tw/fh/ap/downloadListf_e.do), 검색일자: 2020. 9. 8.;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필수수입지침」, [https://fbfh.trade.gov.tw/fh/ap/listIERegf.do?q\\_type=1&language=C](https://fbfh.trade.gov.tw/fh/ap/listIERegf.do?q_type=1&language=C), 검색일자: 2020. 9. 8.

- 그 밖에 CCC코드의 표기와 관계없이 비료, 독성화학물질, 화장품, 유해 폐기물 및 일반 산업 폐기물 등 일부 품목들의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특정 절차에 따라 수입해야 함<sup>237)</sup>

-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고지하는 동물은 별도의 수입통제 대상임
  - 행정원 농업위원회 붉은 불개미, 버마 쥐, 조개 등 고위험 침입 외래종
  - 「야생 동물 보존법(Wildlife Conservation Act)」에 따라 등록된 살아 있는 야생 동물, 그 제품 또는 「야생 동물 보존법」을 적용하기 위해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발표한 야생 동물의 인공 번식 및 사육은 수입 전에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야생 생물 보존법」의 통제하에 살아 있는 해양 야생 생물, 해양 보존 및 해양 포유류 야생 동물 제품의 수입 또는 해양위원회(Ocean Affairs Council)가 「야생 동물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발표한 해양 야생 동물의 인공 번식 및 복제는 수입 전에 해양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특정 섬유 수입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표시: CCC의 제61류 및 제62류(6117 및 6217 제외)에 나열된 모든 섬유 제품은 수입 시 해당 제품에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됨
- 수입품이 요트(오토바이와 같은 선박 모양의 부표가 없는 경우)인 경우 선박 소유주는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의 요트 관리 조치(Rules for Managing Yachts)를 따라야 함
- 요트가 정박할 예정인 장소와 예정된 출입국 위치, 항구 및 마카오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요트의 검사, 측정, 등록, 면허 또는 등록 및 발급은 총 톤수에 따라 「선박법(Law of Ship)」, 「선박등록법(Law of Ship Registry)」 및 관련 통관 규정에 따라 관할 당국이 처리함
- 규정된 코드 내용으로 면허 또는 인증 문서를 입력하고 단일 통관 창구로 신고할 경우 수입자는 면허 또는 인증 문서의 승인 문서 번호(14 코드)를 신고해야 하며 세관 검사를 위해 종이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 다음 제품의 수입은 CCC코드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별도의 개별 코드로 취급됨

---

237)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필수수입지침」, [https://fbfh.trade.gov.tw/fh/ap/listIEOtherf.do?q\\_type=1](https://fbfh.trade.gov.tw/fh/ap/listIEOtherf.do?q_type=1), 검색일자: 2020. 11. 2.



- 행정원 농업위원회(Council of Agriculture of the Executive Yuan)에서 규정한 비료(403), 농약(405)
- 인체용 의약품(501, 503, 505)
- 위생복지부의 의료기기(504)
- 약용 화장품 또는 화장품용 색소(507)
- 캡슐 또는 정제 형태의 식품(511)
- 환경의약품(552)
- 행정원 환경보호청 독성화학물질(553)
- 행정원 규제 약물(522)
- 환경보호청이 지정한 유해 폐기물 및 일반 산업 폐기물(551)
- 교통통신부에서 승인한 무선 주파수 장비를 수입하려면 수입 시 주파수를 직접 신고해야 함(602)

## 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

- 대만은 1994년 11월 17일부터 반덤핑 관세 제도를 실시했으며 시행규칙인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조치실시방법(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에 따라 집행 중에 있음
- 현재 대만은 한국의 탄소강 후판(Carbon Steel Plate), 아연도금강판(Certain Flat-Rolled Steel Products, Plated or Coated with Zinc or Zinc-alloy), 스테인리스 냉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ainless Steel Products)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 중에 있음<sup>238)</sup>

238)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DB 대만」,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tradeIncome/tradeIncomeList.do?pageIndex=1&sContinent=TCOA&sNation=TW&sSuitCouEtc=&sKeySel=&sKeyword=&sRestGubun=&sRestGubunIngs=S0002&sDtGb=&sStartDt=&sEndDt=&sItem=&sOrder=1&sRestGubunIngs=S0001>, 검색일자: 2020. 9. 8.

- 탄소강 후판 및 아연도금강판에는 4.2~80.50%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의 경우 26.53%~37.65%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표 2-Ⅷ-2〉 우리나라에 대한 대만의 수입규제 현황

규제 내용	품목명	품번	조사개시일/ 최근 갱신일
반덤핑	탄소강 후판	7208.51.10.10-0, 7208.51.10.20-8, 7208.51.10.30-6, 7208.51.20.00-0, 7208.51.30.00-8, 7208.51.40.00-6, 7208.52.10.20-7, 7208.52.20.20-5, 7208.52.30.20-3, 7208.90.10.00-5, 7208.90.21.00-2, 7208.90.30.00-1, 7208.90.40.00-9, 7211.14.10.10-1, 7211.14.10.20-9, 7211.14.10.30-7, 7211.14.20.20-7, 7211.14.30.20-5, 7211.14.40.20-3, 7225.40.00.90-8	2016. 2. 22./ 2016. 5. 2
	아연도금 강판	7208.51.10, 7208.5120, 7208.5130, 7208.5140, 7208.9010, 7208.9021, 7208.9030, 7210.30.00.10-4, 7210.30.00.20-2, 7210.30.00.90-7, 7210.41.00.00-3, 7210.49.00.31-8, 7210490032-7, 7210.49.00.33-6, 7210.49.00.41-6, 7210.49.00.42-5, 7210.49.00.43-4, 7210.49.00.51-3, 7210.49.00.52-2, 7210.49.00.53-1, 7210.49.00.61-1, 7210.49.00.62-0, 7210.49.00.63-9, 7210.49.00.90-6, 7210.61.00.11-5, 7210.61.00.12-4, 7210.61.00.13-3, 7210.90.90.00-4, 7212.20.00.00-6, 7212.30.00.10-2, 7212.30.00.20-0, 7212.50.90.00-0, 7225.91.00.00-5, 7225.92.00.00-4, 7225.99.10.00-5, 7226.99.10.00-4, 7226.99.20.00-2	2016. 2. 22./ 2016. 5. 2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7219.32.90.11-3, 7219.32.90.12-2, 7219.32.90.19-5, 7219.33.90.11-1, 7219.33.90.12-1, 7219.33.90.19-4, 7219.34.90.11-1, 7219.34.90.12-0, 7219.34.90.19-3, 7219.35.90.11-0, 7219.35.90.12-9, 7219.35.90.19-2, 7220.20.90.11-4, 7220.20.90.12-3, 7220.20.90.19-6	2013. 2. 20./ 2013. 4. 24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tradeIncome/tradeIncomeList.do?pageIndex=1&sContinent=TCOA&sNation=TW&sSuitCouEtc=&sKeySel=&sKeyword=&sRestGubun=&sRestGubunIngs=S0002&sDtGb=&sStartDt=&sEndDt=&sItem=&sOrder=1&sRestGubunIngs=S0001>"<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tradeIncome/tradeIncomeList.do?pageIndex=1&sContinent=TCOA&sNation=TW&sSuitCouEtc=&sKeySel=&sKeyword=&sRestGubun=&sRestGubunIngs=S0002&sDtGb=&sStartDt=&sEndDt=&sItem=&sOrder=1&sRestGubunIngs=S0001>, 검색일자: 2020. 9. 8.

- 기타 배, 사과, 복숭아의 경우 복숭아심식나방의 대만 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한국과 대만 간에 합의한 검역조건에 부합하여야만 대만으로 수입될 수 있음
-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2006년 2월 대만과 복숭아심식나방의 유입 방지를 위한 수출검역조건에 합의한 국가(한국, 일본)를 제외한 동 병충해 위험지역국가에서 생산된 배, 사과, 복숭아의 대만으로의 수출을 금지했음

### 3. 수출 규제

#### 가. 수출 금지 및 제한

- 무역법에 따라 경제부 국제무역국에서는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국제 조약, 무역협정, 국방, 사회 보장, 문화 보호, 위생, 환경 또는 생태 보존 또는 정책 요구 등에 따라 수출 제한 대상 물품 목록을 선정하고 있음<sup>239)</sup>
- 해당 물품들은 물품의 표준 분류에서 각 물품 아래에 3자리 코드로 표시되어 있음
- 수출제한 대상 물품목록의 수출 관리품목(code 111): 경제부 국제무역국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수출이 불가능함
- 수출제한 대상 물품목록의 수출 조건부 허가(code 121): 특정 승인 조건이 있으며, 수출자는 무역국에서 수출 허가를 발급한 후 별도의 수입 규정을 따라야

239)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필수수출지침」, [https://fbfh.trade.gov.tw/fh/ap/listIEGuidef.do?q\\_type=2](https://fbfh.trade.gov.tw/fh/ap/listIEGuidef.do?q_type=2), 검색일자: 2020. 10. 12.

함(예: 물품 관할 당국에서 발행한 동의 문서 첨부)

- 전략적인 최첨단 기술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자는 「전략적 최첨단 기술 품목 수출입 관리방법」에 따라 수출 허가를 사전에 신청해야 함
- 수출입 등록 기업이 아닌 수출입기업(개인 포함)은 수출제한 대상 물품목록에 없는 물품을 수출할 때 반드시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함<sup>240)</sup>
  - 단 물품의 FOB가격이 2만달러 이하일 경우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경우 허가요건이 면제됨
  - 물품이 관계 협조 조사 대상 물품에 속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은 해당 목록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VIII-3〉 경제부 국제무역국 수출제한 물품 목록

분류 코드 <sup>1)</sup>	품번 <sup>2)</sup>
111	0106.19.40.23-7, 0208.90.29.20-4, 0301.99.29.48-9, 0301.99.29.48-9., 0301.99.29.49-8, 0301.99.29.51-3, 0302.81.00.10-5, 0303.81.00.10-4, 0304.47.00.10-6, 0304.59.90.20-0, 0304.88.00.11-5, 1211.90.60.00-1, 1211.90.91.41-5, 1211.90.91.42-4, 1211.90.91.43-3, 1211.90.91.44-2, 1404.90.99.50-2, 1604.19.90.71-2, 1604.19.90.72-1, 1604.19.90.79-4, 2505.90.00.10-5, 2505.90.00.90-8, 2517.10.90.00-1, 2903.81.00.00-6, 2914.39.00.10-4, 2914.79.00.20-3, 2921.45.00.60-6, 2921.45.00.71-3, 2921.45.00.72-2, 2921.49.00.10-3, 2921.49.00.20-1, 2925.29.00.10-3, 2926.90.90.30-3, 8906.10.00.00-7, 9705.00.00.20-6, 9705.00.00.90-1, 9706.00.00.90-0
112	0301.92.20.10-9, 0301.92.20.20-7, 0301.92.20.30-5
132	7209.18.10.11-0, 7209.18.10.19-2, 7209.18.10.21-8, 7209.18.10.29-0, 7209.18.20.11-8, 7209.18.20.19-0, 7209.18.20.19-0, 7209.18.20.21-6, 7209.18.20.29-8, 7209.18.30.11-6, 7209.18.30.19-8, 7209.18.30.21-4, 7209.18.30.29-6, 7210, 7212, 7219, 7220.20.10.10-2, 7220.20.10.90-5, 7220.20.90.11-4, 7220.20.90.12-3, 7220.20.90.19-6, 7220.20.90.20-3, 7220.20.90.90-8, 7220.90.10.11-6, 7220.90.10.19-8, 7220.90.10.91-9, 7220.90.10.99-1, 7221, 7226.19.10.00-1, 7226.19.20.00-9, 7226.19.30.00-7, 7226.92.10.00-1, 7226.99.10.00-4, 7226.99.20.00-2, 7226.99.90.00-7, 7306.11.00.00-4, 7306.19.00.00-6, 7306.21.00.00-2, 7306.29.00.00-4, 7306.30.00.11-8, 7306.30.00.12-7, 7306.30.00.20-7,

240)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필수수출지침」, [https://fbfh.trade.gov.tw/fh/ap/listIEGuidef.do?q\\_type=2](https://fbfh.trade.gov.tw/fh/ap/listIEGuidef.do?q_type=2), 검색일자: 2020. 10. 12.

〈표 2-VIII-3〉의 계속

분류 코드 <sup>1)</sup>	품번 <sup>2)</sup>
132	7306.30.00.30-5, 7306.30.00.30-5, 7306.30.00.41-2, 7306.30.00.42-1, 7306.30.00.90-2, 7306.40.00.00-9, 7306.69.00.10-3, 7306.69.00.20-1, 7306.69.00.30-9, 7306.69.00.40-7, 7306.69.00.90-6, 7306.90.10.00-6, 7306.90.90.10-7, 7306.90.90.30-3, 7306.90.90.40-1, 7306.90.90.40-1, 7306.90.90.90-0
121, 486	7102.10.00.00-1, 7102.21.00.00-8, 7102.31.00.00-6
121, 488	9031.41.10.10-2
806, S01, S03	3002.90.90.90-5
804, S01, S03	3002.90.90.10-2, 002.90.90.20-0, 3002.90.90.30-8
S01	3002.30.90.00-7, 8207.13.00.00-0, 8207.19.10.00-2, 8207.19.80.00-7, 8412.21.10.00-9, 8412.31.10.00-7, 8430.31.00.00-7, 8430.39.00.00-9, 8430.41.90.00-6, 8431.43.00.00-2, 8464.90.90.00-5, 8465.99.90.00-5, 8443.39.00.10-2, 8471.80.00.00-7, 8471.90.10.00-3, 8517.12.00.00-6, 8517.69.00.30-2, 8523.52.00.90-0, 8525.60.00.00-7, 8541.90.10.00-9, 8541.90.30.00-5, 8542.32.00.11-8, 8542.32.00.21-6, 8542.32.00.22-5, 8542.32.00.23-4, 9004.90.19.10-6, 9020.00.10.11-3, 9020.00.10.12-2
S01, S03	2504.10.00.00-5, 2504.90.00.00-8, 2604.00.00.00-6, 2610.00.00.00-8, 2611.00.00.00-7, 2612.10.00.00-4, 2613.10.00.00-3, 2613.90.00.00-6, 2614.00.00.00-4, 2615.10.00.00-1, 2804.50.10.00-1, 2806.10.00.90-1, 2808.00.10.00-8, 2811.12.00.00-1, 2812.12.00.00-0, 2812.14.00.00-8, 2812.15.00.00-7, 2812.16.00.00-6, 2812.17.00.00-5, 2812.19.00.10-1, 2812.19.00.90-4, 2812.90.90.90-7, 2813.90.90.00-5, 2826.12.00.00-4, 2826.19.10.20-1, 2826.19.90.00-8, 2826.30.00.00-2, 2826.90.90.90-1, 2827.32.00.00-9, 2833.22.00.00-3, 2834.29.10.00-3, 2835.29.90.90-6, 2837.11.20.00-8, 2837.20.00.90-2, 2842.10.00.00-6, 2845.10.00.00-3, 2846.10.00.00-2, 2846.90.00.00-5, 2849.20.00.00-7, 2849.90.10.00-0, 2849.90.20.00-8, 2849.90.30.00-6, 2849.90.90.00-3, 2850.00.10.00-5, 2853.10.00.00-2, 2853.90.12.00-1, 2853.90.30.00-9, 2853.90.40.00-7, 2904.91.00.00-3, 2905.19.90.10-0, 2909.49.99.00-3, 2909.50.90.00-8, 2909.50.90.00-8, 2909.60.10.00-3, 2920.21.00.00-8, 2920.22.00.00-7, 2920.23.00.00-6, 2920.24.00.00-5, 2920.29.90.90-2, 2922.15.00.00-4, 2922.17.00.10-0, 2922.17.00.20-8, 2931.31.00.00-3, 2931.32.00.00-2, 2931.33.00.00-1, 2931.34.00.00-0, 2931.35.00.00-9, 2931.36.00.00-8, 2931.37.00.00-7, 2931.38.00.00-6, 2931.39.00.80-8, 2931.39.00.80-8, 2931.39.00.99-7, 3801.10.00.00-3, 3808.99.91.10-8, 3808.99.92.20-5, 3818.00.10.15-7, 3818.00.10.20-0, 3818.00.10.30-8, 3818.00.10.40-6, 3818.00.10.50-3, 3818.00.10.60-1, 3818.00.10.70-9, 3818.00.10.90-5, 3818.00.90.00-7, 3821.00.00.00-1, 3904.61.00.00-7, 3904.69.00.00-9, 7202.60.00.00-9, 7202.70.00.00-7, 7202.80.10.00-3, 7202.80.20.00-1, 7202.91.10.00-0, 7202.91.20.00-8, 7202.92.00.00-1, 7202.93.00.00-0, 7203.10.00.00-9, 7304.41.00.00-0, 7304.49.00.00-2, 7304.51.10.00-5, 7304.51.90.00-8, 7304.59.10.00-7, 7304.59.90.00-0, 7602.00.00.10-6, 7603.10.00.00-5, 7604.10.10.00-2, 7604.10.20.00-0, 7604.29.20.00-9, 7605.19.00.00-4, 7605.21.10.00-8, 7605.21.90.00-1, 7606.91.19.00-3, 7606.91.20.00-0, 7606.92.11.00-0, 7606.92.19.00-2,

〈표 2-VIII-3〉의 계속

분류 코드 <sup>1)</sup>	품번 <sup>2)</sup>
S01, S03	7606.92.20.00-9, 7608.10.10.00-8, 7608.10.20.00-6, 8102.10.00.00-9, 8113.00.10.00-6, 8306.30.29.00-6, 8401.40.00.20-7, 8411.11.00.00-4, 8411.12.00.00-3, 8411.81.00.00-9, 8411.82.00.00-8, 8411.91.00.10-5, 8411.91.00.90-8, 8411.99.00.00-9, 8412.10.00.00-4, 8412.39.00.00-1, 8412.80.00.00-9, 8412.90.00.90-8, 8414.10.90.00-3, 8414.90.10.00-3, 8417.10.00.00-9, 8417.80.10.00-2, 8417.80.90.00-5, 8417.90.00.00-2, 8418.69.60.00-5, 8419.89.90.00-4, 8421.19.00.99-6, 8421.91.00.00-5, 8455.21.00.00-9, 8455.22.00.00-8, 8455.90.00.00-5, 8456.11.90.00-1, 8456.20.00.00-9, 8456.30.00.00-7, 8456.40.00.00-5, 8456.90.10.00-2, 8456.90.90.00-5, 8457.10.00.00-0, 8457.20.00.00-8, 8457.30.00.00-6, 8458.11.00.00-8, 8458.19.00.00-0, 8458.91.00.00-1, 8458.99.00.00-3, 8459, 8460.12.00.00-3, 8460.19.00.00-6, 8460.22.00.00-1, 8460.23.00.00-0, 8460.24.00.00-9, 8460.29.00.00-4, 8460.31.00.00-0, 8460.39.00.00-2, 8460.40.00.00-9, 8460.90.90.90-0, 8461.40.00.00-8, 8461.90.90.00-8, 8462.10.10.00-1, 8462.10.20.00-9, 8462.21.00.00-0, 8462.31.00.00-8, 8462.39.00.00-0, 8462.41.00.00-6, 8462.49.00.00-8, 8462.49.00.00-8, 8462.91.00.00-5, 8462.99.00.00-7, 8463.10.10.00-0, 8463.10.20.00-8, 8463.10.90.00-3, 8463.90.00.00-5, 8464.90.90.00-5, 8465.20.00.00-8, 8471.30.00.00-8, 8471.41.00.00-5, 8471.49.00.00-7, 8479.40.00.00-8, 8479.50.90.00-6, 8514, 8525.80.10.10-9, 8526.10.00.00-7, 8541.90.90.00-2, 8542.31.00.00-2, 8526.91.10.00-7, 8526.91.20.00-5, 8526.91.90.00-0, 8526.92.10.00-6, 8526.92.90.00-9, 8528.52.00.00-4, 8529.10.19.20-9, 8529.10.20.00-0, 8529.10.30.00-8, 8529.90.50.00-6, 8529.90.90.00-8, 8537.10.10.00-2, 8540.60.00.00-8, 8540.71.00.00-5, 8540.79.00.10-5, 8540.79.00.90-8, 8540.81.00.00-3, 8540.91.90.00-2, 8540.99.00.00-3, 8541.29.10.00-5, 8541.29.90.00-8, 8541.30.00.00-4, 8541.40.11.00-9, 8541.40.30.00-6, 8541.40.40.00-4, 8541.40.90.00-3, 8541.50.00.00-9, 8541.60.10.00-5, 8541.60.90.00-8, 8541.90.90.00-2, 8542.31.00.00-2, 9005.10.00.10-3, 9005.80.11.10-5, 9005.80.90.00-1, 9005.90.00.10-6, 9005.90.00.20-4, 9010.50.10.00-7, 9012.10.00.00-6, 9012.90.00.00-9, 9013.10.10.00-3, 9013.10.20.00-1, 9013.10.90.00-6, 9013.20.00.00-3, 9013.90.90.00-9, 9014.10.00.00-4, 9014.20.00.00-2, 9014.80.20.00-5, 9014.80.90.00-0, 9014.90.00.00-7, 9015.10.00.00-3, 9017.90.90.00-5, 9018.12.00.00-8, 9018.20.00.00-8, 9020.00.10.19-5, 9020.00.10.90-7, 9027.10.00.00-9, 9027.20.00.90-8, 9027.50.00.00-0, 9030.10.00.10-2, 9030.10.00.90-5, 9030.82.00.00-7, 9030.90.10.00-5, 9030.90.20.00-3, 9031.10.00.00-3
S01, S04	8413.70.00.00-0, 8413.81.90.00-8, 8413.91.00.00-5, 8419.50.90.00-9, 8419.89.30.00-7, 8419.90.90.00-1, 8421.29.90.90-4, 8421.99.90.00-8
111, S01, S03	0602.90.10.10-9, 8710.00.00.10-3, 8710.00.00.20-1, 9301.10.00.00-6, 9301.20.00.00-4, 9301.90.00.00-9
541, S01, S03	2530.90.99.10-6, 2617.90.90.10-1, 2844, 8401.10.00.00-7, 8401.20.00.00-5, 8401.30.00.00-3, 8401.40.00.10-9, 9027.20.00.10-5
533, S01, S03	2801.30.10.00-9, 2812.11.00.00-1, 2812.13.00.00-9, 2837, 2931.39.00.91-5
523, S01, S03	3002.19.00.00-1, 3002.20.00.00-8,
551, S01, S03	9302.00.00.00-7, 9303.10.00.00-4, 9303.20.00.00-2, 9303.30.00.00-0, 9305.10.00.00-2, 9305.20.90.00-1, 9305.91.00.00-4, 9305.99.00.90-7

〈표 2-VIII-3〉의 계속

분류 코드 <sup>1)</sup>	품번 <sup>2)</sup>
483, S01, S03	2905.59.90.10-1, 3601.00.10.00-5, 3601.00.20.00-3, 3601.00.90.00-8, 3602.00.10.00-4, 3602.00.90.00-7, 3603.00.10.00-3, 3603.00.20.00-1, 3603.00.30.00-9, 3603.00.40.00-7
121, 488, S01, S03	8486, 9031.80.00.20-4

주: 1) 111(경제부 국제무역국 승인), 12(매년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출 통제), 121(경제부 국제무역국 특정승인조건), 132(도착지 EU 물품 대만철강공업협회의 원산지증명서), 483(경제부 승인), 486(김벌리 프로세스 인증), 488(웨이퍼 제조 장비 수출허가), 806(의약품 수출 증명서, 의약품 허가증 사본, 특수코드, 위생복리부 승인), 804 및 523(의약품허가증 사본 또는 특수코드), 541(원자력위원회 승인), 551(경찰청, 국방부 승인), S01(북한, 전략적 첨단 물품 수출 허가증), S03(이란, 전략적 첨단 물품 수출 허가증), S04(전략적 최첨단 기술 물품 수출 허가증)  
 2) 대만은 11자리 CCC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표기는 경제부 국제무역국의 품번 표기를 준용하였음(품번 8자리 및 통계번호 2자리 그리고 체크코드 1자리로 이루어져 있음)  
 자료: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Classification of commodities and regulations," [https://fbfh.trade.gov.tw/fh/ap/downloadListf\\_e.do](https://fbfh.trade.gov.tw/fh/ap/downloadListf_e.do);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필수수입지침」, [https://fbfh.trade.gov.tw/fh/ap/listIERegf.do?q\\_type=2&language=C](https://fbfh.trade.gov.tw/fh/ap/listIERegf.do?q_type=2&language=C), 검색일자: 2020. 9. 8.

□ 그 밖에 CCC코드의 표기와 관계없이 보호종인 동물, 농약, 통제 약물, 유해 폐기물 및 일반 산업 폐기물, 광디스크, 중고차, 중고 엔진 등의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서류 제출 및 특정 절차에 따라 수출해야 함<sup>241)</sup>

○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고지하는 동물은 별도의 수출통제 대상임

- 「야생 동물 보존법」의 통제하에 살아 있는 야생 동물의 수출, 그 제품 또는 「야생 동물 보존법」을 적용하기 위해 행정원 농업위원회가 발표한 야생 동물의 인공 번식 및 사육은 수출 전에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야생 생물 보존법」의 통제하에 살아 있는 해양 야생 생물, 해양 보존 및 해양 포유류 야생 동물 제품의 수입 또는 해양위원회가 「야생 동물 보존법」이 적용된다고 발표한 해양 야생 동물의 인공 번식 및 복제는 수출 전에 해양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241) 대만경제부 국제무역국. 「필수수출지침」, [https://fbfh.trade.gov.tw/fh/ap/listIEOtherf.do?q\\_type=2](https://fbfh.trade.gov.tw/fh/ap/listIEOtherf.do?q_type=2), 검색일자: 2020. 11. 2.

- 기록된 광디스크에 대한 수출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
  - 「디스크 관리 조례(Optical Disk Law)」 제2조 제2항에서 정의한 사전 녹화식 디스크는 원천 식별 코드(Source Identification Codes, 이하 SID Code)를 표시해야 함
  - 위에서 정의되지 않은 수출품은 반드시 상품 형태, 조작 설명 및 구동 방식 등을 소개하는 CD를 동봉해야 함
  - 세관은 SID 코드가 없는 광디스크의 수량이 단위당 1개를 넘으면 국제 무역국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수출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
- 중고차(8703호, 8740호), 중고 오토바이(8711호), 중고 엔진(8407호 및 8408호)의 수출은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수출자는 노후 차량 및 엔진 출력 검증 요점에 따라 미 도난 차량 검증을 신청하고, 내무부 경찰청(National Police Administration, Ministry of the Interior) 제3군단 또는 소속 여단이 발행한 검증 보고서 및 재고 목록을 첨부하고 수출 통관신고를 진행해야 함
  - 수출자는 반드시 수출신고서류 명칭란에 구품(USED)을 기입해야 하며, 세관은 그 신청에 따라 서류심사통관(C2) 또는 화물검사통관(C3)으로 분류함
- 규정된 코드 내용으로 면허 또는 인증 문서를 입력하고 단일 통관 창구로 신고할 경우 수출자는 면허 또는 인증 문서의 승인 문서 번호(14 코드)를 신고해야 하며 세관 검사를 위해 종이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 다음 제품의 수출은 CCC코드에 관계없이 별도의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면 별도의 코드로 취급됨
  -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금지한 농약(441)
  - 행정원이 발표한 규제 의약품(522)
  - 행정원 환경보호청이 금지하는 환경 의약품, 유해 폐기물 및 일반 산업 폐기물(531), 유해화학물질(533)



#### 4. 중국에 대한 수출입 규제

- 경제부 국제 무역국에서 규정 적용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대만 지역과 본토 지역 간의 무역 활동’이란 대만과 중국 간의 물품 및 물품에 부착된 물품 또는 지적 재산권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출입하는 행위를 의미함<sup>242)</sup>
  - 「대만 지역과 본토 지역 간의 무역 허가 방법」<sup>243)</sup>은 「대만의 대륙별 인민관계조례」 제35조에 근거함
    - 「대만의 대륙별 인민관계조례」<sup>244)</sup> 제35조에 따라 대만 지역의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관은 관할 당국의 허가, 수출입 품목 및 조항, 개봉 요건 및 절차, 수입 및 수출 정지 조항, 수입 및 수출 관리에 대한 기타 요구 사항 등에 대해 행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한이 만료되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이 거부된 사람은 무단으로 간주함
- 관할 당국이 지정한 중국 지역 물품은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함<sup>245)</sup>
  -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물품
  - 해당 물품의 수입이 관련 국내 산업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야 함
  - 기존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이상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와 상충된다고 관할 당국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 관할 당국은 그러한 상품에 대한 수입 허가 중단을 승인할 것을 행정원에 요청할 수 있음
  - 관련 물품 관할 당국은 정기적으로 수입 가능 품목으로 중국 지역 원산지를 조사해야 하며, 수출자 및 수입자, 산업·상업 협회, 관련 기관 및 기타 단체는 수입

242) 「대만 지역과 본토 지역 간의 무역 허가 방법」 제1조~제3조

243)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대만 지역과 본토 지역 간의 무역 허가 방법」,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Q0010001>, 검색일자: 2020. 11. 2.

244)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대만의 대륙별 인민관계조례」,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Q0010001>, 검색일자: 2020. 11. 2.

245) 「대만 지역과 본토 지역 간의 무역 허가 방법」 제8조

가능 품목으로 본토 지역 원산지 권장 물품·조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절차는 관할 관청에 의해 공개적으로 발표됨

- 다음 품목을 제외하고 중국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대만 지역으로 수입이 금지됨<sup>246)</sup>
  - 관할 당국이 지정하고 고시한 품목 및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입이 모두 가능함
  - 골동품, 종교 관련 문화 작품, 부족 예술 작품, 민속 예술 작품, 예술 작품, 문화재 유지를 위한 자료, 문화 또는 교육 활동을 위한 소량의 물품
  - 연구 또는 개발 전용 샘플 제품
  - 본토로부터의 산업기술 수입 허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입 허용 품목으로 등재된 품목
  - 학교, 연구소 및 동물원에서 사용하는 동물
  - 수출용 가공을 위해 관세 공장에서 수입하는 원료, 부품 및 구성품 및 수출용 재생을 위한 물품
  - 수출가공구 또는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출 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원료, 부품 및 부품, 수출을 위한 재조정용 물품
  - 치료를 위한 한약
  - 행정원의 정부 정보실에서 허용하는 출판물, 영화, 비디오 프로그램, 방송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 재무부 세관에서 승인·고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입국 승객이 반입한 물품
  - 관련 요건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반입한 물품
  - 대만 지역과 중국 지역의 해상 어업 분쟁 해결 보상으로 수확한 수산물
  - 관할 당국의 특별 승인을 통해 허용된 기타 항목
  - 제2항, 제3항, 제6항, 제13항에 규정된 물품 및 물품 수입 조건은 국제무역국에서 공시하며 제7항의 물품 수입 조건은 수출가공구역 관리소(Administrative Office of the Export Processing Zone) 또는 과학공업단지국(Administrative Office

246) 「대만 지역과 본토 지역 간의 무역 허가 방법」 제7조

- of the Science-based Industrial Park)에서 공고함
- 제1항에 규정된 물품 이외의 중국 지역 물품이지만 관세 할당의 적용을 받는 농산물에 속하는 것은 대만 지역의 어느 항구에서든 제3의 영토로 선적 또는 판매가 불가능함
    - 해상 또는 항공 운송(해상 항공 또는 항공 해상 운송 제외)을 통한 수출 환승, 해상 운송 센터에서 환적 운송
  - 절차 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품목은 마지막 선적항으로 반환됨
- 승인서류를 적용하여야 하는 이상의 물품에 따라 관할기관은 수입조건을 공포하며, 승인의 경우 다른 정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sup>247)</sup>
- 중국 지역 물품의 합법적인 수입과 관련된 모든 수입 문서는 원산지 열에 '중국 본'이라는 단어를 표시해야 함<sup>248)</sup>
- 해당 물품 또는 그 포장에 명백하게 공산주의 선전을 표시하는 모든 표시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통관이 끝난 후 수입자가 삭제해야 함
    - 골동품, 종교 관련 문화 작품, 부족 예술 작품, 민속 예술 작품, 예술 작품, 문화재 유지를 위한 자료, 문화 또는 교육 활동을 위한 소량의 물품 및 식물 또는 포장에는 표시할 수 있음
    - 행정원의 정부 정보실에서 허용하는 출판물, 영화, 비디오 프로그램, 방송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우 행정원 산하의 국정홍보처(Government Information Office under the Executive Yuan)의 승인을 얻어 표시할 수 있음
    - 재무부 세관에서 승인·고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입국 승객이 반입한 물품과 대만 지역과 중국 지역의 해상 어업 분쟁 해결 보상으로 수확한 수산품의 경우 규정한 물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할 수 있음
- 중국으로의 수출과 관련된 모든 수출 문서는 목적지 열에 '중국 본토'라는 단어를 표

247) 「대만 지역과 본토 지역 간의 무역 허가 방법」 제10조

248) 「대만 지역과 본토 지역 간의 무역 허가 방법」 제11조

시해야 함<sup>249)</sup>

- 물품이 추가 처리를 위해 본토 지역으로 간접적으로 수출되는 경우 수출자는 그러한 목적을 수출 문서에 보고해야 함
- 전항에 규정된 수출자가 자신의 활동을 본토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는 경우 수출자는 「본토에 대한 투자 및 기술 협력방법(Regulation Governing Permission of Investment and Technical Cooperation in Mainland Area)」에 따라 관할 당국의 투자 허가를 받아야 함

## 5. 주요 인증

- 대만은 외교 활동 범위 제한으로 인해 국제기구 참여가 자유롭지 않아 제품 검사 또는 인증 역시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대만 현지 검사 또는 검역,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함<sup>250)</sup>
- 대만 정부는 물품검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물품검험법(The Commodity Inspection Act, 이하 물품검험법)」<sup>251)</sup>을 시행하고 있음
  - 대만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공산품을 비롯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농·공산품은 「물품검험법」에 따라 물품을 검사해야 함
  - 샘플(전시회 참가용, 연구개발용 포함)과 같은 비매품의 경우 검사를 면하며 이 경우 신청조건, 절차 등 관련 사항은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이 정하고 있음
  - 물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물품 수령 후 필요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249) 「대만 지역과 본토 지역 간의 무역 허가 방법」 제12조

250) 외교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2019 외국의 통상환경 아시아, 대양주』, 산업통상부 통상정책총괄과, 2019, pp. 185~186

251)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검험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100001>, 검색일자: 2020. 10. 12.

않은 검사 대상 물품의 의무검사 신청자 통고 시 10만신대만달러 이상, 100만 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sup>252)</sup>

### 가. BSMI 인증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에서 발행하는 BSMI 안전마크는 「물품검험법」에 따라 전기 및 전자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되며 검사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물품은 대만산과 수입품을 불문하고 이 마크를 취득해야 시중에 유통·판매가 가능함
  - 필수검사품목으로 검사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장에서 반출 또는 수출입할 수 없음
  - 전기, 소방 장비, 전자 제품, 건설 제품, 가스 기기, 유아용품, 전동식 수공구, 개인 보호 장비, 컴퓨터 제품, 메인 보드, 삽입 카드, 가스 캔, 시가 라이터, 시멘트, 내화 코팅, 유아 장난감 등에 적용되는 강제 인증임<sup>253)</sup>
  - 경제부 표준검험국의 검사필수품목인지 여부는 경제부 표준검험국의 물품검사조회시스템([https://civil.bsmi.gov.tw/bsmi\\_pqn](https://civil.bsmi.gov.tw/bsmi_pq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검사는 선적물 검사(Batch by Batch Inspection), 모니터링(Monitoring Inspection), 제품인증등록(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RPC)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등 4개 제도에 따라 이행되고 있음<sup>254)</sup>
  - 선적물 검사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적용되며 대만 국내 산이나 수입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선적 혹은 수입 전에 BSMI에 검사를 신청해야 함
  -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252)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검험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ParaDetail.aspx?pcode=J0100001&bp=8>, 검색일자: 2020. 9. 9.

253)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BSMI Marks and Labels,” <https://www.bsmi.gov.tw/wSite/ct?xItem=4072&ctNode=9149>, 검색일자: 2020. 9. 9.

254)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Regulatory Product Inspection,” <https://www.bsmi.gov.tw/wSite/ct?xItem=87256&ctNode=9452&mp=2>, 검색일자: 2020. 9. 9.

- 위하여 대만 경제부는 2002년 ‘모니터링제도 대상제품에 관한 조치(Measures Governing Commodities Subject to Monitoring Inspection)’를 공표하였음
- 현재 114개의 화학제품이 이 제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시멘트, 석유, 화재방지 페인트, 화재방지 건설자재, 화재방지 벽지, 타이어 및 인형 등이 있음
  - BSMI가 특정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한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을 통해 제조업체는 BSMI가 지정한 장소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자체적으로 기술 문서를 준비하여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음<sup>255)</sup>
  - 검사는 신청서, 영리사업등기증명서(사업자등록증), 회사등기증명서, 신분증, 물품별 요구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일반 검사의 경우 14일, 빠른 검사의 경우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 물품검사 불합격에 따른 창고비, 운송비, 소독 및 개선관련 처리비용은 생산업체 혹은 수출입 업체가 부담함

## 나. CNS 인증

- CNS 인증(Chinese National Standards, 이하 CNS 인증)은 국가 표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951년에 시행된 제품 인증 시스템으로 제품 품질이 국가 표준을 준수하고 제조업체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ISO 9001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sup>256)</sup>
- CNS 마크 사용관리 표준 규정(Standards Law Rules Governing the Use of the CNS Mark)에 따라 운영 및 관리되고 있으며,<sup>257)</sup> 토목, 건축, 기계, 광산, 농업, 식품, 목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255)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Regulatory Product Inspection,” <https://www.bsmi.gov.tw/wSite/ct?xItem=4462&ctNode=9452&mp=2>, 검색일자: 2020. 9. 9.

256)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About CNS Mark,” <https://www.bsmi.gov.tw/wSite/ct?xItem=85030&ctNode=9511>, 검색일자: 2020. 9. 9.

257)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Regulatory Product Inspection,” <https://www.bsmi.gov.tw/wSite/lp?ctNode=9517&CtUnit=3886&BaseDSD=7&mp=2>, 검색일자: 2020. 9. 9.

- CNS 주요규격은 다음과 같음<sup>258)</sup>
  - 기계분야 안전규격: CNS 2866, 10595, 12651, 11380, 13084, 13085, 13136~13138, 13167~13170, 13269, 2448, 1323, 3415~3421
  - 전기분야 안전규격: CNS 3765, 3766, 3267
  - 완구분야 안전규격: CNS 4797, 4798
  - 보일러·압력용기분야 안전규격: CNS 9788~9803, 10215~10218, 10897, 2139~2144
  - EMC분야 안전규격: CNS 13438, 13439
  - 기타 안전규격: CNS 1387, 13350, 131
  
- CNS 인증의 경우 신청서, 영리사업등기증명서(사업자등록증), 회사등기증명서, 제조사의 정보, 신분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품질시스템 인증서, 물품에 대한 적합성 검사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검사를 신청함
  - 신청인은 대만에 거주하는 판매 라이선스를 가진 내국인, 제조업체, 수입업체로 한정함
  - BSMI가 보고서 및 관련 문서를 검토한 후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CNS 마크 사용 자격을 통보받으며 모든 절차는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완료됨
  - 심사 후 신고서 및 서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거부함

#### 다. TFDA 인증

- 대만 내로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TFDA 식품의약품청(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제조업자의 경우, 반드시 대만 내에 약상자격을 소지한 판매업자가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258)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CNS(대만국가표준),” [http://www.exportcenter.go.kr/standard/info/guide\\_standard/info\\_pdf2/CNS.pdf](http://www.exportcenter.go.kr/standard/info/guide_standard/info_pdf2/CNS.pdf), 검색일자: 2020. 9. 9.

- 허가심사는 체외진단시약과 비체외 진단시약으로 나뉘며,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신개발의료기기로 분류됨<sup>259)</sup>
  - 현지에 기반을 둔 기업에 한하여 인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해외 공급업체는 대만 수입업체나 대만에 판매 약상 허가를 받은 공급업체 자회사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약사법(Pharmaceutical Affairs Act)」, 「약사법 시행 세칙(Pharmaceutical Affairs Act Enforcement Rules)」, 「의료 장비 관리방법(Regulations for Governing the Management of Medical Devices)」, 「의료 기기 등록 세칙(Regulations for Registration of Medical Device)」 등 총 10가지 규정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음<sup>260)</sup>
- IVD제품은 의료기기 규제 현안뿐만 아니라 별도의 IVD 규정을 준수해야 함<sup>261)</sup>
- 의료기기(비IVD): 신 의료기기 1등급, 2등급, 3등급
  - 체외진단의료기기: 1등급, 2등급, 3등급
  - I급(위험도 낮음): 생명을 유지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며, 인간 보건의 훼손 방지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질병과 부상에 대한 부당한 위험성의 가능성을 내재하지 않은 기기
  - II급(위험도 중간): 인간 생명 유지나 연장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거나 단언되는 기기
  - III급(위험도 높음): 생명을 유지하거나 연장하는 기기 또는 인간 보건 훼손 방지에 상당히 중요한 기기, 또는 질병이나 부상의 부당한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기
- 일반적인 경우 공장심사는 없으며 QSD(Quality System Documentation) 검토를 통하여 대만 TFDA 의료기기 등록을 허가함<sup>262)</sup>

259) 대만 식품의약품청, "Registration of Medical Devices," <https://www.fda.gov.tw/eng/site/List.aspx?sid=10333>, 검색일자: 2020. 9. 9.

260) 대만 식품의약품청, <https://www.fda.gov.tw/ENG/law.aspx?cid=5063>, 검색일자: 2020. 9. 9.

261) ICC, 「적용품목」, <http://icccert.co.kr/ce-ivd>, 검색일자: 2020. 9. 4.

26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VSCC(대만자동차인증)」, <http://www.exportcenter.go.kr/standard/new/searchRead.jsp>, 검색일자: 2020. 9. 9.



- 식품의약품청에서는 의료기기 허가 및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허가증 발급과 QSD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허가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적으로 140일 내에 완료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80~90일이 소요되며, 신청 시 2만신대만달러로 해외 공장심사는 50만신대만달러의 비용이 필요함
- 제출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개월의 보충기간 후 다시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으며 보충서류를 준비해 송부하면 식품의약품청에서는 약 1개월 안에 통과 여부를 통지해야 함
- 한국에서 ISO 취득, 의료기기 판매 라이선스를 가진 현지 대리상을 통해 품질 시스템문건(QSD)을 준비하고 위생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제출 후 검사를 통해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라. VSCC 인증

- VSCC 인증(Vehicle Safety Certification Center)인증은 강제 인증으로서, 대만에 자동차를 수출할 시 필수적으로 취득하는 인증이며 자동차의 안전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는 인증임
  - 수입 및 국산 차량에 대해 자동차 관할기관에서 신규 허가를 제공하기 전 제조자가 획득해야 하는 인증임
- 「도로법」, 「도로 교통 관리 벌금 규정」, 「도로 교통 안전 규칙」, 「차량 유형 안전 검증 관리를 위한 조치」, 「차량 안전 테스트 벤치 마크」, 「자동차 안전 조사」, 「리콜」, 「수정 및 감독 및 관리를 위한 조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절차가 진행됨<sup>263)</sup>
  - 그 밖에도 전동 자전거 및 전동 자전거형 안전 점검 관리 대책, 전기 보조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의 안전 테스트 기준, 차량 리어 서스펜션 부품 개조 점검 요점, LPG 연료 시스템을 이용한 차량 모델의 안전성 및 품질 일관성 검사 요점 등 다양한 지침 및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263) VSCC, "Regulations," <http://www.vsc.org.tw/Home/List/10?page=2>, 검색일자: 2020. 9. 22.

- VSCC 인가 인증기관에서 신청 및 시험 및 인증절차를 수행한 후에 MOTC(Ministry of Transportation & Communications, 대만교통통신전파성)로부터 형식승인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음
  
- 신청자는 시험 기관 인정 신청서에 시설 등록 서류, ISO/IEC17025에 준하는 인증 문서, 시험 기관 관련 응용 자료 등을 첨부하여 검증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검증 기관은 서면 심사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함<sup>264)</sup>
  - 신청서 접수 후 인증기관은 차량범주(family) 관련원칙, 자동차 형식, 사양 변화, 차량안전시험지침 준수 여부, 관련 차량 안전 요인 등에 따라 제품사양의 검사 및 승인 절차를 이행함<sup>265)</sup>
  - 검사 기관은 심사를 통과한 시험 기준 항목의 범위에 대한 승인을 통신부에 요청하며 시험 기관에 인가증을 발급함
  - 시험 기관은 모니터링 방식으로 시험을 수행하며 모니터링 기관의 관련 정보는 최초 신청 전에 검사에 기록되어야 함
  
- 승용차의 차량 안전 형식승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은 인증서의 만기일 전에 신청해야만 유효함<sup>266)</sup>
  - 사후검사(inspection)는 지정 감독기관에서 수행하며 이와 별도로 생산적합성 시험(Conformity of production)이 수행되어 대량 생산되는 제품이 차량 안전 형식승인 인증 제품과 동일한가의 여부를 체크함
  - 생산적합성 시험<sup>267)</sup>에는 연차보고서, 방문검사(on-site checks), 샘플링 검사 및 시험이 모두 포함됨

---

264) VSCC, "Appraisal and Accreditation of Testing Institutions", <http://www.vsc.org.tw/Home/Content/524>, 검색일자: 2020. 9. 22.

265)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VSCC(대만자동차인증)」, [https://www.exportcenter.go.kr/standard/info/guide\\_standard/info\\_pdf2/VSCC.pdf](https://www.exportcenter.go.kr/standard/info/guide_standard/info_pdf2/VSCC.pdf), 검색일자: 2020. 9. 22.

26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VSCC(대만자동차인증)」, [https://www.exportcenter.go.kr/standard/info/guide\\_standard/info\\_pdf2/VSCC.pdf](https://www.exportcenter.go.kr/standard/info/guide_standard/info_pdf2/VSCC.pdf), 검색일자: 2020. 9. 22.

267) VSCC, <http://www.vsc.org.tw/Home/List/137>, 검색일자: 2020. 9. 22.

## IX. 행정구제제도

### 1. 개요

- 세관의 관세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행정구제절차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부의 행정 심판(Administrative appeal, 이하 행정심판)은 「소원법(Administrative Appeal Act, 이하 소원법)」<sup>268)</sup>을 준용하고 있음
- 「관세법」 제2장 통관절차(Procedures Governing Customs Clearance) 제2절 관세납부에 대한 시간제한 및 행정구제(Time Limits for Duty Payment and Administrative Remedy) 제45조에서 제47조까지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기타 대만은 수출입신고 전 법적인 효력이 있는 민원회신 제도인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해당 규정에서 사전 구제제도에 불복할 시 「관세법」에 따라 행정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사전심사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에 대해 이루어짐

---

268)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소원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A0030020>, 검색일자: 2020. 10. 10.

## 2. 행정구제제도

### 가. 행정구제제도

- 납세의무인이 품목분류, 관세, 특별관세 등에 대한 세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세관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sup>269)</sup>
  - 납세의무인은 세금납입증을 수령한 날의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정된 양식<sup>270)</sup>에 따라 서면으로 세관에 재조사를 신청하고 제세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세관은 재조사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익일부터 2개월 내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후 결정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인에게 통지하여야 함<sup>271)</sup>
  - 필요시 납세의무인에게 통지를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하되 최장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세관의 재조사 결정서의 원본은 결정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의무인에게 송달되어야 함<sup>272)</sup>
  
- 납세의무인이 전 조의 재조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세관 행정심판으로 진행하여 재정부로 이관하거나 행정 소송(Administrative Litigation, 이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sup>273)</sup>
  - 재조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환급 납세액을 확정된 경우 세관은 확정일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환급해야 함

---

269) 「관세법」 제45조

270) 「관세법」 제46조

271) 「관세법」 제46조

272) 「관세법」 제46조

273) 「관세법」 제47조

- 아울러 납세의무인이 동 항목의 세금납부일 익일로부터 환급서를 발급하거나 국고수표를 발급한 날까지 세액 납입일의 체신금융 1년 정기예금 고정금리이율에 따라 일수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일괄 환급하여야 함
  - 재조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 세금을 추가 납입해야 하는 경우 세관은 확정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금의 추가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 납세의무인에게 추가 납입에 대해 통지해야 함
  - 또한 동 항목의 추가 납입 세액의 원래 납입기한 만료일 익일부터 추가 납입세액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까지 추가 납부세액에 따라 원 납부예정세액 일자의 체신금융 1년 정기예금의 고정이율에 따라 일수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일괄 징수하여야 함
- 재정부의 행정심판은 「소원법」에 따라 진행되며 재정부의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재정부의 행정심판은 세관의 결정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Administrative Litigation Act)」<sup>274)</sup>에 따라 진행되며 지방법원의 행정소송 및 고등행정법원(High Administrative Court, 이하 고등행정법원) 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음<sup>275)</sup>
- 가격 또는 청구금액이 40만신대만달러 이하 또는 징계경고기록, 위반시점 기록, 기타 유사행위 기록 등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의 행정소송부서(Administrative Litigation Division of District Court)에서 진행함
  - 그 외의 행위는 고등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함
  - 행정소송은 취소소송·확인소송·지급소송으로 진행됨
- 행정소송은 재정부의 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함
  - 소송을 제기한 뒤 3개월이 지났는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소송 결정이 연

274) 「행정소송법」 용어의 영문번역은 대만 사법원의 ‘법원 및 소송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집’(Commonly Used Legal Vocabularies in Courts and Litigation Procedures) 참조

275) 「행정소송법」 제3조~제4조

장되었고 연장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났는데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고등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고등행정법원의 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 나. 기타

□ 대만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행정구제 신청에 대해 각 해당 법에서 관세법의 구제절차에 따를 것에 대한 준거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따른 불복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시방법(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Customs Valuation Advance Ruling on Imported Good, 이하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시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수입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따른 불복은 「수입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시방법(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Advance Tariff Classification Ruling on Imported Goods, 이하 수입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시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에 따른 불복은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Regulations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Advance Ruling on the Country of Origin of Imported goods, 이하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시방법」<sup>276)</sup>에 따라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물품 수입신고 전 세관에 사전심사에 대한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sup>277)</sup>

---

276)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시방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SearchContent.aspx?pcode=G0350068&kw1=Administrative%20Remedy>, 검색일자: 2020. 7. 14.

- 세관은 재조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조사 결과에 대해 신청자에 회신해야 함
  - 재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의해 관세가 결정된 후 「관세법」상 행정구제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음
- 「수입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시방법」<sup>278)</sup>에 따라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물품 수입신고 전 관무서장에 대해 사전심사에 대한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sup>279)</sup>
- 관무서장은 재조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결과에 대해 회신해야 함
  - 필요한 경우 세관은 관무서장의 재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원래의 처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러한 연장을 통지해야 함
  - 기간 연장은 한 번에 한해서 가능하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재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물품을 수입하여 품목분류가 세관에 의해 결정된 후 「관세법」상 행정구제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음
-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sup>280)</sup>에 따라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세관에 원산지 사전심사에 대한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sup>281)</sup>
- 재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의해 원산지가 결정된 후 「관세법」상 행정구제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음

277)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8조

278)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시방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SearchContent.aspx?pcode=G0340077&kw1=Administrative%20Remedy>, 검색일자: 2020. 7. 14.

279) 「수입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8조

280)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SearchContent.aspx?pcode=G0350075&kw1=Administrative%20Remedy>, 검색일자: 2020. 7. 14.

281)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7조

- 기타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세칙」에서는 행정구제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종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최종적으로 징수를 결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지 않는 관세, 체납수수료, 연체료, 이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은 더 이상 징수하지 않도록 하며<sup>282)</sup> 최종적으로 징수를 결정한 날은 다음의 행정처분 종료를 의미함<sup>283)</sup>
  - 세관에서 최종적인 관세행정 처분 또는 관세에 대한 처분을 내렸으며 납세의무자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재조사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세관의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으며 납세의무자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행정심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행정심판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납세의무자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행정 소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행정소송에 대해 확정판결 및 취소불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

---

282) 「관세법」 제9조

283) 「관세법 시행세칙」 제4조



## X. 벌칙

### 1. 개요

- 대만은 「밀수징계조례」의 적용을 받는 범죄에 한해서만 형벌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행정 질서벌로 처벌하고 있음<sup>284)</sup>
  - 「밀수징계조례(The Smuggling Penalty Act, 이하 밀수징계조례)」 제1조에서 제13조까지 물품의 밀수출입과 관련하여 징역, 벌금 및 양자의 병과 등 형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제5장 벌칙에서는 「관세법」 위반에 대한 벌금부과, 압수 등 행정 질서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sup>285)</sup>
  - 「관세법」 제73조에서 제94조까지 관세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업무 정지, 허가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형벌과 관련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세관밀수방지조례(Customs Anti-smuggling Act)」 제4장 제23조부터 제45

---

284)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밀수징계조례」,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C0000006>, 검색일자: 2020. 6. 8.

285)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50001>, 검색일자: 2020. 8. 24.

조의4에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기타 운송 수단 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 벌금형과 압수 및 양자의 병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sup>286)</sup>

- 허위신고, 특허권, 상표, 저작권 등 위반에 대해서는 각 해당 지침 및 규정에서 처벌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다루고 있음
- 그 밖에 벌의 감면, 면제 등에 대해서는 「세관밀수방지처벌감면표준(Standards of Minor Breaches for the Application of Customs Anti-Smuggling Act)」<sup>287)</sup>에서 다루고 있음

## 2. 관세 형벌 및 행정 질서벌

### 가. 「밀수징계조례」상 형벌

- 수입 또는 수출 규제 품목을 위반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적용되며, 300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sup>288)</sup>
  - 범죄 예방을 위해 교환이나 정기적인 공급을 위해 특정한 범죄 이용 유물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금융 질서의 유지와 무역보안을 위해 각종 통화를 위·변조하거나 유가증권을 수출입하는 것을 금지함
  - 시민의 건강 유지를 위해 특정 지역의 물품 또는 건강에 해를 입히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함
  - 국내 농업의 발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식물 또는 그 생산물을 특정 지역에서 수입하거나 일정량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함

286)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세관밀수방지조례」,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ParaDeatil.aspx?pcode=G0350029&bp=4>, 검색일자: 2020. 8. 24.

287)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세관밀수방지처벌감면표준」,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G0350062>, 검색일자: 2020. 10. 10.

288) 「밀수징계조례」 제2조

- 조약 및 협정의 준수와 국제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특정 물품의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됨
  
- 「밀수징계조례」 제2조를 위반하여 밀수품을 운송, 판매 또는 은닉한 범죄자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및 최대 150만신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sup>289)</sup> 미수범에게는 벌금형만 부과하도록 함
  
- 사망으로 이어지는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여 체포 또는 수사에 저항한 불법 밀수범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천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sup>290)</sup>
  - 중상을 입힌 범죄자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800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다음의 행위 중 하나가 입증된 불법 밀수 범죄자는 징역 또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0백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sup>291)</sup>
  - 폭도들을 이끌고 집결하며, 무기를 들고 체포 또는 수사에 저항하는 행위
  - 세관 공무원 또는 기타 조사관을 공개적으로 이끌고 집결하는 행위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나라도 저지른 불법 밀수 범죄자는 최소 3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500백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sup>292)</sup>
  - 경미한 부상을 초래하는 무기 소지 및 체포 또는 조사에 저항
  - 체포 또는 수사에 저항하는 무기를 소지한 폭도들이 결집하는 현장 방조
  - 세관 공무원 또는 기타 조사관을 위협하는 폭도들이 결집하는 현장 방조

---

289) 「밀수징계조례」 제3조

290) 「밀수징계조례」 제4조

291) 「밀수징계조례」 제5조

292) 「밀수징계조례」 제6조

- 철도, 고속도로, 항공, 해운 또는 기타 대중 교통 기관에서 근무하며 세관 공무원 또는 기타 공인 감독관에게 알리지 않고 밀수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자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구금 또는 최대 150만신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함<sup>293)</sup>
- 타인을 위해 불법 밀수한 밀수품을 고의로 반출, 판매 또는 은닉하는 세관 공무원 또는 기타 공인 검사관에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미수범에게는 벌금이 부과됨<sup>294)</sup>
- 불법 밀수범을 보호하려고 한 경우 공무원과 군인은 무기징역 또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미수범에게는 벌금이 부과됨<sup>295)</sup>
- 본 규정 및 「관세법」의 규정에 없는 내용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함<sup>296)</sup>
- 중국 본토에서 대만 지역으로 밀수품 밀매 또는 대만 지역에서 중국 본토로 밀수품 밀매는 밀수입 밀수와 같은 것으로 간주함<sup>297)</sup>

#### 나. 「관세법」상 행정 질서벌

- 수입물품을 제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운송 수단의 도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신고 기한 만료일 익일부터 1일당 신고 연체금 200신대만달러를 추가 징수하도록 함<sup>298)</sup>

---

293) 「밀수징계조례」 제7조(제8조는 폐기됨)

294) 「밀수징계조례」 제9조

295) 「밀수징계조례」 제10조

296) 「밀수징계조례」 제11조

297) 「밀수징계조례」 제12조

298) 「관세법」 제73조

- 전 항의 신고 연체금은 만 20일이 되어도 여전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해당 물품을 판매하고 획득한 대금에서 과세액 및 필요한 비용을 제하고 잔여금이 있으면 세관이 잠정 대리 보관함
  - 납세의무인은 5년 내에 잔여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초과하면 국고에 귀속됨
- 제43조가 규정하는 기한에 따라(관세통지문(duty memo) 습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납세하지 않았을 시 납세기한 만료일 익일부터 1일당 관세액의 0.05%의 세율로 체납 수수료를 부과함<sup>299)</sup>
    - 전 항의 연체금을 만 30일이 되어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았을 시 본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품 또는 동일 또는 유사품의 거래 가액 또는 공제액을 조회하고 이전 선적에 대해 평가된 과세가격의 과거 기록을 조사하도록 함
  - 세관은 본법 제13조 제2항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시 피조사인이 자료, 현장 질의, 조사 협조를 회피, 방해 또는 거절할 경우 3천신대만달러 이상 10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sup>300)</sup>
    - 필요한 경우 벌금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음
  -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관세는 동 물품의 원 수입자인 납세의무인 또는 현물 소지인이 세금납부서 송달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sup>301)</sup>
    -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거쳐 관세를 추가 징수하고 그 외에도 체납된 세액 2배의 벌금을 부과함
  -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또는 분할 납부하는 수입 기기, 설비, 기자재, 차량 및

---

299) 「관세법」 제74조

300) 「관세법」 제75조

301) 「관세법」 제76조

그에 필요한 부품에 있어 납입해야 하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시 강제 집행하도록 함

- 강제 집행 이외에도 자진 납부 기한 만료일 또는 관세 기장일 익일부터 세금 완납일까지 미납일 또는 세액 기장일에 따라 일부별로 관세 총액의 0.05%를 연체금으로 부과함<sup>302)</sup>
  - 다만 기존 연체금 또는 기장세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보세공장의 제품 또는 관세가 면제되는 원료를 출고한 경우 물품을 몰래 반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관밀수방지조례 유관규정에 따라 처벌함<sup>303)</sup>
- 수출품의 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의 기장 세액이 일정 기간 내에 상쇄될 수 없는 경우, 연체금은 1일 납세액의 0.05%로 부과되고 연체금은 원 기장세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sup>304)</sup>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해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음<sup>305)</sup>
  -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거나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비준을 거쳐 원료를 초과 저장한 경우
  - 공장이 천재지변 사고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역 소방서 또는 내부 세무서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국제경제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재정부 및 경제부가 회동하여 연체금의 면제에 동의한 경우
  - 수출되는 물품이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쿠데타, 전쟁, 파업 또는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조사 후 사실이라고 판명된 경우
  - 규정한 세금의 환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수출하였거나 규정된 환급 신청 기간이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수출한 경우

302) 「관세법」 제77조

303) 「관세법」 제78조

304) 「관세법」 제79조

305) 「관세법」 제80조

- 통관신고, 운수, 창고, 컨테이너 및 그 밖의 통관과 관련된 업무를 경영하는 업자가 제10조 제5항의 등록 절차, 신청 절차, 관리 및 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 기한부 시정 또는 6천신대만달러 이상 3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sup>306)</sup>
  - 벌금은 연속적으로 부과 가능하며 연속 3회 처벌 시에도 시정하지 않았을 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전자 통관 신고를 정지할 수 있음
  
- 세관의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전자 자료를 통관자료로 전송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통관 네트워크업자의 위반에 대해 재정부는 경고, 기한부 시정요청 또는 10만신대만달러 이상 50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sup>307)</sup>
  - 네트워크업자의 운영항목, 수취 비용 기준, 영업시간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10조 제5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함
  - 벌금은 연속적으로 부과 가능하며 연속 3회 처벌 시에도 시정하지 않았을 시 6개월 이하로 통관자료 전송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업등록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운수수단의 책임자 또는 그가 위탁한 운수수단 소속업자의 수출입 통관, 운수 업무의 집행 및 운수수단 소속업자의 위반에 대해 세관은 경고, 기한부 시정요청 또는 6천신대만달러 이상 3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sup>308)</sup>
  - 운수수단 소속업자가 등기, 허가증 변경의 신청, 재발급 또는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하여 제20조 제3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했을 시 본 규정을 적용함
  - 벌금은 연속적으로 부과 가능하며 연속 3회 처벌 시에도 시정하지 않았을 시 6개월 이하로 수출입신고에 대한 특권(declaration privileges)을 정지하도록 함
  - 제20.1조 제2항의 지원 자격 등록, 통관 관련 관리, 갱신 등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았을 시 세관은 경고, 기한부 시정요청 또는 6천신대만달러 이상 3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음<sup>309)</sup>

---

306) 「관세법」 제81조

307) 「관세법」 제82조

308) 「관세법」 제83조

309) 「관세법」 제83조의1

- 연속 3회 처벌 시에도 시정하지 않았을 시 적하목록신고, 환적, 재수출이 금지됨

- 관세사가 등기, 허가증의 변경, 재발급, 통관업의 처리 또는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 기한부 시정요청 또는 6천신대만달러 이상 3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sup>310)</sup>
  - 벌금은 연속적으로 부과 가능하며 연속 3회 처벌 시에도 시정하지 않았을 시 6개월 이하로 통관업을 정지하거나 통관업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잘못된 신고로 세관이 오류를 발견하여 밀수로 간주 후 사후 감사를 진행하였을 시 관세사가 신고의 정정을 요구하였으며 세관이 발견하기 전 해당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은 면제될 수 있음<sup>311)</sup>
  - 세관은 관세사 공인 직원이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관세사 공인 직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 기한 내에 시정요청 또는 2천신대만달러 이상 5천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은 연속적으로 부과 가능함
  - 연속 3회 처벌 시에도 시정하지 않았을 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고·심사·배서의 정지 및 관세사 등록 또한 취소할 수 있음
  
- 보세운송수단 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경고, 기한 내에 시정요청을 또는 3천신대만달러 이상 1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sup>312)</sup>
  - 보세운송수단 소유자가 등기, 허가증 변경의 신청, 재발급, 보세운송수단의 사용관리 또는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105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했을 시 본 규정을 적용함
  - 벌금은 연속적으로 부과 가능하며 연속 3회 처벌 시에도 시정하지 않았을 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통관 사증 심사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물품 창고 또는 컨테이너 운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세관은 경고, 기한 내에

310) 「관세법」 제84조

311) 「관세법」 제84조

312) 「관세법」 제85조



- 시정요청 또는 6천대만달러 이상 3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sup>313)</sup>
- 물품 창고 또는 컨테이너 운영자가 등기, 허가증 변경의 신청, 재발급, 물품창고 및 물품의 저장, 이동, 관리 또는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26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했을 시 본 규정을 적용함
  - 벌금은 연속적으로 부과 가능하며 연속 3회 처벌 시에도 시정하지 않았을 시 6개월 이하로 물품 창고 및 물품의 적재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특급 우편업을 경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경고, 기한 내에 시정요청 또는 6천신대만달러 이상 3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sup>314)</sup>
- 특급 우편업을 경영하는 자가 특급 우편 물품의 통관, 분류작업 또는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을 위반했을 시 본 규정을 적용함
  - 벌금은 연속적으로 부과 가능하며 연속 3회 처벌 시에도 시정하지 않았을 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특급 우편 물품의 통관 업무를 정지할 수 있음
- 세관의 허가에 따라 자가로 밀봉(seal)할 시 물품의 사용, 물품의 종류, 「관세법」 제28조에서 명시하는 자가 봉인의 측정관리 등을 위반했을 시 세관은 1년의 자가 봉인을 유예시킬 수 있음<sup>315)</sup>
- 심각한 위반의 경우 자격이 폐지될 수 있으며 1년 후 자가 밀봉 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 보세창고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경고, 기한 내에 시정요청 또는 6천신대만달러 이상 3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sup>316)</sup>

---

313) 「관세법」 제86조

314) 「관세법」 제87조

315) 「관세법」 제87조의1

316) 「관세법」 제88조

- 보세창고 업자가 등기, 허가증의 변경, 재발급, 보세창고의 설비 구축, 물품의 저장, 관리 또는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본 법 제58조 제4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함
  - 벌금은 연속적으로 부과 가능하며 연속 3회 처벌 시에도 시정하지 않았을 시 6개월 이하로 보세물품의 저장을 정지하거나 월별로 보고하거나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세공장 운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경고, 기한 내에 시정요청 또는 6천신대만달러 이상 3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sup>317)</sup>
- 보세공장 운영자가 등기, 허가증의 변경, 재발급, 보세창고의 설비 구축, 보세물품의 가공, 관리, 통관, 국내 판매 제품의 세금 추가 납부 또는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59조 제3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였을 시 본 규정을 적용함
  - 벌금은 연속적으로 부과 가능하며 연속 3회 처벌 시에도 시정하지 않았을 시 6개월 이하로 보세공장업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정지하거나 월별로 보고하거나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물류센터 운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경고, 기한 내에 시정요청 또는 6천신대만달러 이상 3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sup>318)</sup>
- 물류센터 운영자가 등기, 허가증의 변경, 재발급, 물품의 관리, 통관 또는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60조 제4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함
  - 벌금은 연속적으로 부과 가능하며 연속 3회 처벌 시에도 시정하지 않았을 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물품의 입고 저장을 정지하거나 월별로 보고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317) 「관세법」 제89조

318) 「관세법」 제90조

- 면세점 운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시 경고, 기한 내에 시정요청 또는 6천신대만 달러 이상 3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sup>319)</sup>
  - 면세점 운영자가 등기, 허가증의 변경, 재발급, 물품의 관리, 통관, 판매 또는 기타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시 본 규정을 적용함
  - 벌금은 연속적으로 부과 가능하며 연속 3회 처벌 시에도 시정하지 않았을 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면세점 경영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해외 판매품의 환급세를 처리한 생산업자가 환급세를 신청하고, 원재료의 관세 기장 또는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관련하여 제63조를 위반한 경우 세관은 생산업자의 6개월 이하의 기장 정지를 명령할 수 있음<sup>320)</sup>
  
- 제20조의1,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58조 제4항, 제6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수수료 또는 벌금을 연체할 시 세관은 납부 보증금에서 해당 내역을 공제할 수 있음<sup>321)</sup>
  - 보증금이 전 항의 공제로 인하여 부족할 시 세관은 일정 기한 내에 차액을 추가 납입하도록 통지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업무의 경영을 정지하거나 그 등기를 폐지할 수 있음
  
- 밀수, 관세 회피 그 밖의 불법 탈세의 정황이 있는 경우 세관의 「세관밀수방지조례」 및 그 밖의 유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sup>322)</sup>

#### 다. 「세관밀수방지조례」상 행정 질서벌

-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이 제8조의 규정(운송 수단에 지정된 장소에서

---

319) 「관세법」 제91조

320) 「관세법」 제92조

321) 「관세법」 제93조

322) 「관세법」 제94조

정지, 되돌리거나, 착륙할 것)을 위반하고 세관의 명령에 불이행하는 경우, 관리자에 6만신대만달러 이상 12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sup>323)</sup>

- 밀수입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운송 수단은 세관에 압수됨
  
-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이 허가 없이 상업 항구가 아닌 다른 장소에 진입하는 경우, 해당 관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했거나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압수됨<sup>324)</sup>
  
- 선박이 해안에서 24해리 이내에 있거나 선박이 경계 밖의 지점으로 쫓겨난 여부와 관계없이 선박의 물품 또는 문서가 압수를 피하기 위해 파괴되거나 물에 던져지는 경우, 관리자와 위반자에게는 3만신대만달러 이상 15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박도 압수될 수 있음<sup>325)</sup>
  
- 수출입 물품 밀수 수단으로 신호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자에게는 3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sup>326)</sup>
  
-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밀수출입, 하역하는 경우 해당 관리자에 5만신대만달러 이상 50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sup>327)</sup>
  - 운송인이 전술한 운송 수단의 승무원이 밀수 지원, 조장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운송인은 법 및 기타 관련 법규 및 운송 수단에 따라 처벌되며 최대 30일까지 통관이 유예될 수 있음
  - 전 항에서 언급된 운송 수단이 주로 무기, 탄약 또는 약물을 밀수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압수됨

---

323) 「세관밀수방지조례」 제23조

324) 「세관밀수방지조례」 제24조

325) 「세관밀수방지조례」 제25조

326) 「세관밀수방지조례」 제26조

327) 「세관밀수방지조례」 제27조

-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이 상업 항구의 지정된 하역 장소에 도착하지 못하고 세관의 허가 없이 물품 또는 자체 사용 물품을 하역하는 경우 해당 물품 가치 두 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물품도 압수될 수 있음<sup>328)</sup>
  - 본법 제27조에 언급된 물품 또는 물품의 적재 및 하역에 대한 운송, 장소, 수령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자는 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음
  
-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이 선적 서류 없이 물품을 운송한 경우 물품의 소유자는 처벌받으며 운송 회사와 물품 소유자가 위법 행위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벌금이 부과됨<sup>329)</sup>
  - 세관이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기타 운송 수단에 의해 운송되는 다른 국내 항구로 운송되는 특정 물품이 명시적, 위탁 목록 또는 선적 서류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압수됨<sup>330)</sup>
  
- 선박, 항공기, 차량에 저장된 물품, 운송 물품, 보세물품, 소포, 수하물 및 컨테이너를 통한 수입물품, 수출물품, 기타 운송 수단 또는 기타 보관 장소가 세관에 의해 보호되거나 봉인되었음에도 재포장, 이동, 운반 또는 표시를 변경하거나 봉인을 뜯거나 자물쇠를 열었을 시 6천신대만달러 이상 6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sup>331)</sup>
  - 위반이 본질적으로 심각할 경우 벌금이 두 배가 될 수 있으며, 운송인 또는 운영자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 세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음
  
- 수출입 물품을 밀수입하거나 밀수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물품 가치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sup>332)</sup>

---

328) 「세관밀수방지조례」 제28조

329) 「세관밀수방지조례」 제31조

330) 「세관밀수방지조례」 제31조의1

331) 「세관밀수방지조례」 제35조

332) 「세관밀수방지조례」 제36조

- 밀수품을 적재 또는 하역, 운송, 수령, 숨김, 구매 또는 판매하는 자는 9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해당 행위를 유도하는 자 역시 동일한 벌금이 부과되며 밀수품은 압수됨
- 밀수품을 무지로 적재 또는 하역, 배송, 수령, 보관, 구매 또는 판매한 자는 해당 사건이 세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벌금이 면제됨
  
-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세관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해당 물품의 압수와 함께 부과 예정 관세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물품을 압수할 수 있음<sup>333)</sup>
  - 물품 설명, 수량 또는 중량 허위신고, 품질, 가치 또는 규격의 허위신고, 위조, 변경 또는 허위 청구서 또는 증명서 제출, 또는 이 법 및 관련 법률의 다른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본 규정이 적용됨
  - 수출신고 후 전항에 규정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300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압수될 수 있음
  - 전 항에 규정된 범죄가 무역 통제 회피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벌금이 부과됨
  - 제1항에 규정된 모든 위반이 발생한 수입 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 대상인 가공 물품의 수출을 선언하는 경우, 부과될 환급 관세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수출물품은 압수함
  
- 우편 또는 소포에 과세 대상 또는 관리 대상 물품이 있고 그 봉투에 물품의 품질, 수량, 중량 및 가치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거나 해당 정보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관은 물품을 압수하고 수취인에게 통지함<sup>334)</sup>
  
- 세관에 신고된 병행 수입품 이외의 수입품 또는 수출품이 특허권,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다른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333) 「세관밀수방지조례」 제37조

334) 「세관밀수방지조례」 제38조

고는 물품 가액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물품은 압수됨<sup>335)</sup>

- 외국 위탁자가 서명하여 수입 송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빈 문서가 우편으로 배달 또는 고국의 누군가가 소지 또는 보유한 경우 보유자는 3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문서는 압수됨<sup>336)</sup>
- 관세사 또는 배송 업체가 허위 진술을 알고 있음에도 운송 업체 또는 창고 운영자가 관련된 문서에서 이러한 정보를 재인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관세사 또는 배송 업체는 6천신대만달러 이상 6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sup>337)</sup>
  - 운송인 또는 창고 운영자가 그러한 허위 진술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기록하거나 보증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창고 운영자는 위에 내용과 동일하게 처벌됨
- 수출입신고 시 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세관은 수입자, 수출자, 선적인 또는 수탁자에게 물품의 송장, 가격 메모, 청구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지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 위반 시 6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sup>338)</sup>
  - 제출하지 못하거나 상기 서류 또는 기록의 확인 또는 복사에 대한 세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증거를 제거하려는 시도로 해당 서류 또는 기록을 숨기거나 파기하는 행위
  - 세관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수출, 거래, 비용 및 지불과 관련된 회계 장부, 서신 또는 송장 장부에 기록된 정보를 검토하고 복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음
- 어떤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의무 면제, 감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 회피 또는 환급된 의무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련 물품은 압수될 수 있음<sup>339)</sup>

335) 「세관밀수방지조례」 제39조의1

336) 「세관밀수방지조례」 제40조

337) 「세관밀수방지조례」 제41조의1

338) 「세관밀수방지조례」 제42조

339) 「세관밀수방지조례」 제43조

- 세관은 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할 뿐 아니라 의무를 다시 이행하도록 해야 하며 위반이 발생 후 5년이 지났을 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sup>340)</sup>
  
- 본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 중 본질적으로 경미한 경우 벌금이 감면 또는 면제 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경미한 기준에 대해서는 재정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음<sup>341)</sup>

  - 본법에 따라 압수할 수 있는 물품은 처분 가능한 자에 속한 물품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sup>342)</sup>

  
- 관무서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이 납세의무인 또는 수출자에 대해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시작한 경우, 물품 신고서에 포함된 오류 및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시 다음 조건에 따라 벌금이 면제됨<sup>343)</sup>

  - 해당 물품이 출고되지 않은 경우
    - 물품이 세관 심사 대상이거나 물품 검사를 위한 온라인 세관 선택 통지가 관련자에게 발송된 다음 날 통제된 범주에 속하지 않는 물품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물품 신고서 및 해당 서류의 사본이 보충되고 세관에 의해 접수되기 전에 오류가 정정된 경우
  - 해당 물품이 출고된 경우
    - 국가 세무 당국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이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시작하기 전 자발적으로 보고하거나 증거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관련 기관이 그러한 범죄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
  - 자발적으로 오류 수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미납된 제세금에 대해 지불해야 할 금액이 회수되지 않는 한 벌금 면제는 적용되지 않음
  - 회수되어야 할 금액은 최초 지불 기일의 다음 날짜부터 또는 관세 면제 또는 결재 처리가 확인된 날짜까지 미납된 세금의 이자율에 따라 일할 계산한 이자를 가산함

---

340) 「세관밀수방지조례」 제44조

341) 「세관밀수방지조례」 제45조의1

342) 「세관밀수방지조례」 제45조의2

343) 「세관밀수방지조례」 제45조의3



- 본법에 따라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는 특정 처분 방법이 요구되고, 총 처분 비용이 재정부에 의해 공표된 설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은 본법에 따라 비용 회수 절차, 행정구제, 보호조치 및 강제 집행 절차를 시행함<sup>344)</sup>
- 처분 비용의 회수는 세관이 비용을 지불한 날부터 또는 그 날짜 이전에 비용을 지불한 경우 몰수 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344) 「세관몰수방지조례」 제45조의4

## XI. AEO 제도

### 1. 개요

- 대만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제도는 「관세법」 및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Regulations Governing the Certification and Management of th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이하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sup>345</sup>)」에 따라 이행되고 있음
- 「관세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AEO S(Security and Safety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S)의 승인 및 그에 따른 우대 조치에 한해 규정하고 있음
  - 세관은 관세사, 수출자 및 공급망 업체에 대해 AEO S로서의 지위를 인증한 후 AEO S가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우대조치를 제공할 수 있음
  - 전 항의 AEO S로 인증된 납세의무자 또는 수출자가 세관에 상당한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우선적인 통관혜택을 부여함
  -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한 납세의무자 또는 수출자는 월별로 통관 물품에 대해 세금 수속을 완료하여야 함

---

345)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50061>, 검색일자: 2020. 7. 14.

- 인증, 신청 절차, AEO S의 범주, 공급망 기업 부문, 우선 조치, AEO S의 지위 정지 또는 폐지, 우선 조치의 적용에 대한 조건, 구체적인 신고, 보증 방법, 자격 요건, 지불 방법, 진술서 제공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부에서 정하도록 함
- AEO G(General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G) 및 AEO S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에서 다루고 있음
- 대만의 AEO는 AEO G(신속통관) 및 AEO S(보안 및 안전 통관)의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AEO G는 납세의무자 및 수출자를 대상으로, AEO S는 납세의무자와 수출자를 비롯한 공급망의 경제 운영자를 대상으로 함<sup>346)</sup>
- 공급망의 경제 운영자(economic operators in the supply chain)는 납세의무자, 수출자, 제조업체, 관세사, 물품 운송업자, 해운업자, 창고 사업자, 고속도로, 해운 및 항공 운송업자를 의미함
- 인증된 AEO 및 세관으로부터 비준을 받고 있는 신고책임한도액 모두 관할 세관에 동일하게 적용됨<sup>347)</sup>

## 2. AEO 신청자격

### 가. AEO G

- 세관에 AEO G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수출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sup>348)</sup>
  -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입 실적이 100만신대만달러 이상 또는 3년 이상 사업을

346)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2조

347)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32조

348)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6조

영위하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수출자

- 관세, 세금 및 기타 혐의 또는 벌금에 대해 확인된 체납이 없거나 부과 예정된 관세, 세금 및 기타 혐의 또는 벌금에 상응하는 보안서(commensurate security, 이하 보안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 또는 수출자
- 단 징계를 부과한 정부 기관이 해당 보안서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 수출입 절차와 재무 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으로 이행하고, 사후 검증에 대한 감사 기록을 보관한 납세의무자 또는 수출자
- 온라인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거나 혹은 온라인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관세사에게 신고를 의뢰한 납세의무자 또는 수출자

## 나. AEO S

- AEO S를 신청하는 경제 운영자가 공통적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음
  - 이름, 사업체가 명시된 신청서, 신청자의 행정 번호, 주소, 자본금 및 담당자 정보
  - 인증 신청을 위한 자체 평가 양식
  - 재무 건전성에 대한 증거로써 최근 3년의 재무 보고서 및 명세서 또는 신용 불량을 증명하는 최근 3년의 관련 문서
  - 전항에 규정된 서류는 관할 세관이 승인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따라 전자 형식으로 관할 세관에 전송되어야 함
  
- 수출입 절차와 재무 데이터 처리를 전산으로 이행하고, 사후 검증에 대한 감사 기록을 보관한 납세의무자 또는 수출자 및 최근 3년간 재무적 상환능력이 입증되었거나 연체된 신용기록이 없는 납세의무인 또는 수출자는 제11조 제1항의 양식만으로 AEO S를 신청할 수 있음<sup>349)</sup>
  - 본법 제11조 제1항의 서류(신청자의 이름, 사업 번호, 주소, 자본금, 연락처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 양식)

349)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14조

- 본법 제17조~제23조에서 규정하는 운영자<sup>350)</sup>를 제외하고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10조에 따라 세관에 AEO S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제운영자는 다음과 같음<sup>351)</sup>
  - 최근 3년간 재무적 상환능력이 입증되었거나 연체된 신용기록이 없는 업체로서 3년 이내의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연체기록이 없는 기간을 실제 영업기간으로 간주함
  - 최근 3년간 심각한 규제 위반 기록이 없어야 하며 3년 미만 영업을 한 경우 그 기간은 실제 영업기간으로 간주함
  - 관세, 세금 및 기타 혐의 또는 벌금에 대한 확인된 체납이 없으며 정부 기관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되지 않은 관세, 세금 및 기타 혐의 또는 벌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출해야 함
  - AEO 보안 검사 항목 및 검증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전산 시스템에 운영 절차와 재무 데이터를 갖추고 있으며 사후 확인을 위해 기록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할 수 있어야 함
  - AEO 공급망 보안 인력을 배치해야 함
  - AEO 보안 검사 항목 및 검증 기준과 전항에 규정된 국내외 보안 유효성 검사 기관·협회 관무서, 재정부가 발표하여 관보에 게재함

### 3. AEO 신청절차

#### 가. AEO G

- AEO G를 신청하는 경제운영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함<sup>352)</sup>

350)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에서 특정 경제운영자의 AEO S 취득요건 및 신청절차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기술하고 있어 AEO S 취득 요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일반적인 서류를 제외한 제조업체, 관세사, 물품운송업자, 해운업체, 창고운영자, 고속도로운송사업자, 해상운송업자, 항공사가 제출해야 하는 특정 문서 및 자격조건은 신청절차에서 함께 다루었음

351)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10조

352)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7조

- 신청인의 성명, 사업관리번호, 주소, 자본금, 연락처 등을 기재한 신청서 양식
  - 대외무역국, 재정부 또는 기타 기관, 대외무역국, 재정부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민간협회, 또는 대외무역국, 재정부가 수여하는 우수 수출 및 수출자 훈장 등
  - 전 항에 규정한 서류는 예외적인 사정으로 관할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서식으로 제출해야 함
- 관할 세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AEO G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함<sup>353)</sup>
- 필요한 경우 관할 세관은 인증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연장을 적법하게 통지해야 함
  -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함
  - AEO G의 보유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전 항에 규정된 서류를 원래의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AEO G 인증 신청 가능자로 증명된 경우 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
  - AEO G의 보유자가 회사 또는 사업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 사본을 가지고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함

## 나. AEO S

- 제조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시 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AEO S를 신청할 수 있음<sup>354)</sup>
- 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재무적 상환능력이 입증되었거나 연체된 신용기록이 없는 업체로서 3년 이내의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체기록이 없는 기간을 실제 영업기간으로 간주함
  - 본법 제11조 제1항의 서류(신청자의 이름, 사업 번호, 주소, 자본금, 연락처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 양식)

353)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8조

354)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17조

- 세관은 과학단지, 수출가공구, 농업기술단지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AEO S 지위를 가진 제조업체에 대해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음<sup>355)</sup>
  - AEO S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이행하는 동안 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 1천만신대만달러 미만의 가치를 지닌 보세물품이 지정 구역(Park 또는 Zone)에서 위탁 수리, 시험 또는 조립 테스트를 위해 운반되는 경우
    - 1천만신대만달러 이하 가치의 보세물품이 전시를 위해 관세부과구역(duty-levying areas)으로 운반되는 경우
  - 세관은 공장 내 회계 장부 및 데이터 보고서에 대한 현장 감사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원재료 영수증은 서류로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검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관세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시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AEO S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sup>356)</sup>
  - 본법 제11조 제1항의 서류(신청자의 이름, 사업 번호, 주소, 자본금, 연락처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 양식)
  - 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재무적 상환능력이 입증되었거나 연체된 신용기록이 없는 업체로서 3년 이내의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체기록이 없는 기간을 실제 영업기간으로 간주함
  - 최근 3년간 심각한 규제 위반 기록이 없으며, 제24조에 따라 3년 미만 영업을 한 경우 그 기간은 실제 영업기간으로 간주함
  - 관세사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함
  - 세관신고서의 오류율을 전년도에는 0.3%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의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영업기간에 따라 오류율 기간을 결정하도록 함
  - 최근 3년간 관세중개업소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3항에 위반된

355)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17조

356)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18조

기록이 없으며 3년 미만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기간으로 위반기간을 정하도록 함

- 세관은 「관세중개업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따라 AEO S 관세사가 신고한 물품에 대한 심사율을 낮출 수 있음
  
- 물품운송업자(Freight forwarder)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시 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AEO S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sup>357)</sup>
  - 본법 제11조 제1항의 서류(신청자의 이름, 사업 번호, 주소, 자본금, 연락처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 양식)
  - 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재무적 상환능력이 입증되었거나 연체된 신용기록이 없는 업체로서 3년 이내의 영업을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체기록이 없는 기간을 실제 영업기간으로 간주함
  - 「해양물품 운송업자 관리규칙(Regulations for Administrating Ocean Freight Forwarders)」 또는 「항공운송업자 관리규칙(Regulations Governing Air freight Forwarder)」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민간항공법(Civil Aviation Act, 이하 민간항공법)」에 따라 항공경찰청에 의해 규제업체(Regulated Agency)로 인증되어야 함
  - 최근 3년간 「민간항공법 및 「해운법(Shipping Law, 이하 해운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3년 미만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기간으로 위반기간을 정하도록 함
  
- 해운업체(shipping agency)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시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AEO S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sup>358)</sup>
  - 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재무적 상환능력이 입증되었거나 연체된 신용기록이 없는 업체로서 3년 이내의 영업을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체기록이 없는 기간을 실제 영업기간으로 간주함

357)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19조

358)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19조의1



- 해운 관리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함
  - 최근 3년간 「해운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3년 미만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영업기간으로 위반기간을 정하도록 함
- 창고 운영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시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AEO S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sup>359)</sup>
- 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재무적 상환능력이 입증되었거나 연체된 신용기록이 없는 업체로서 3년 이내의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체기록이 없는 기간을 실제 영업기간으로 간주함
  - 「수입 및 수출 창고의 세관 관리 조치(Regulations Governing the Customs Management of Import and Export Warehouses)」, 「컨테이너 야적장 세관 관리조치(Regulations Governing the Customs Management of Container Yard)」, 「보세창고 설립 및 관리방법」, 「물류센터 물품 통관방법」에 따라 등록 및 자체관리 승인을 신청하거나 「수출가공구 보세사업 관리규정」, 「과학단지 보세업무 규정(Regulations Governing the Bonding Operations in Science Parks)」, 「농업기술단지 보세업무규정」(Regulations for Bonded Operations in Agricultural Technology Parks)」, 「자유무역지역 기업 운영관리규정」(Regulations Gov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 Enterprises)에 따라 등록 또는 감독을 신청해야 함
  - 최근 3년간 물품의 손실에 따라 총 50만신대만달러 이하의 관세가 회피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위반에 대한 기간은 실제 영업활동 기간으로 정하도록 함
  - AEO S 창고 운영자와 운송업자 모두 사전에 공동 서명한 서류로 세관에 신청한 경우 적재된 해상 운송 컨테이너의 추가, 소포장 또는 재장착 또는 창고 운영자의 운송 창고에서의 적재 물품 결집을 직접 이행할 수 있음
  - 과학단지, 수출가공구, 농업기술단지 또는 자유무역지역 중 한 곳에서 운영하는

359)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20조

- AEO S 창고 운영자의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될 시 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 1천만신대만달러 미만의 가치를 지닌 보세물품이 지정 구역(Park 또는 Zone)에서 위탁 수리, 시험 또는 조립 테스트를 위해 운반되는 경우
  - 1천만신대만달러 이하 가치의 보세물품이 전시를 위해 관세부과구역(duty-levying areas)으로 운반되는 경우
- 세관은 공장 내 회계 장부 및 데이터 보고서에 대한 현장 감사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 고속도로 운송사업자(Highway carriers)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시 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관에 AEO S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sup>360)</sup>
- 본법 제11조 제1항의 서류(신청자의 이름, 사업 번호, 주소, 자본금, 연락처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 양식), 제2항의 서류(인증신청서 자체평가서)
  - 「도로법(Highway Act)」 제34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청(Highway authority)이 발급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물품 이동을 위한 종합적인 전자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해상운송업자(Sea carriers)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시 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관에 AEO S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sup>361)</sup>
- 본법 제11조 제1항의 서류(신청자의 이름, 사업 번호, 주소, 자본금, 연락처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 양식), 제2항의 서류(인증신청서 자체평가서)
  - 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재무적 상환능력이 입증되었거나 연체된 신용기록이 없는 업체로서 3년 이내의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체기록이 없는 기간을 실제 영업기간으로 간주함
  - 선박운반선 운전자 관리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업체를 대상으로 AEO S 인증을

360)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21조

361)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22조

받은 해상운송업체에 대해 다음의 혜택을 제공함

- 수출물품 선박변경 및 수입물품 적정배출 허가 신청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적재된 해상운송 컨테이너의 추가, 소포장 또는 재장착 또는 창고업자의 운송 창고에서의 적재 물품 결집을 직접 실시할 수 있음

□ 항공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시 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관에 AEO S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sup>362)</sup>

- 본법 제11조 제1항의 서류(신청자의 이름, 사업 번호, 주소, 자본금, 연락처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 양식), 제2항의 서류(인증신청서 자체평가서)
- 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재무적 상환능력이 입증되었거나 연체된 신용기록이 없는 업체로서 3년 이내의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체기록이 없는 기간을 실제 영업기간으로 간주함
- 민간 항공 운송 기업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함

□ 본법 제17조~제23조에서 규정하는 운영자를 제외하고<sup>363)</sup> 세관에 AEO S 인증을 신청하는 경제운영자가 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sup>364)</sup>

- 신청자의 이름, 사업 번호, 주소, 자본금, 연락처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 양식
- 인증신청서 자체평가서
- 재무적 지급능력의 증빙으로서 최근 3년간의 재무보고서 및 재무제표 또는 부실신용기록이 없다는 증거 서류
- 전항에 규정된 서류는 소관 세관의 승인을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관할 세관에 송부되어야 함

□ 관할 세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AEO S 인증절차를 완료하여야 함<sup>365)</sup>

362)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23조

363) 제조업체, 관세사, 물품운송업체, 해운업체, 창고운영자, 고속도로운송사업자, 해상운송업체, 항공사

364)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11조

365)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12조

- 필요한 경우 관할 세관은 인증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연장을 적법하게 통지해야 함
  -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함
  - AEO S 인증기준 이행이 확인된 신청 관할 세관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라 관무서, 재정부로부터 인증서를 받게 됨
  - AEO S 인증자는 인증 갱신 신청을 위하여 3년마다 전 조(제11조)에서 정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은 현장 검증을 실시해야 함
  - AEO S 인증자가 자체심사요건을 이행하고 세관에서 실시하는 임의조사를 통과하거나 세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전 항의 현장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AEO S는 해당 경우,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 사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sup>366)</sup>
- 회사 및 사업체 명칭의 변경 및 사업종류의 변경
  - AEO S는 본법 제14조, 제17조~제23조까지의 업종에 해당 경제운영자가 추가되는 경우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 사본을 세관에 제출 및 신고해야 함
  - AEO S가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시, AEO S 인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본법 제11조에 명시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세관은 현장 검증을 수행해야 함
  - 인증된 장소를 변경, 추가 또는 축소하는 AEO S는 업체, 업체 또는 공장의 등록이 변경된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해야 함
  - 세관은 AEO S가 본법 제10조의 보안 검사 항목 및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파견할 수 있음
- AEO S는 연 1회 이상 자체검사 및 본법 제6조 제4항 및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보

366)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13조

안검사항목 및 확인 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sup>367)</sup>

- 세관은 불규칙한 간격으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음
- 관할 세관은 보안 심사 항목 및 검증 기준에 대한 AEO S의 부적합을 발견하면 AEO S에 30일 이내에 개선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행해야 함

## 4. AEO 혜택

### 가. AEO G

- 세관은 AEO G가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함
  - 검수대상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출입물품 검사준칙(Regulations for the Examination of Import and Export Goods)」<sup>368)</sup>에 따른 간이검사를 적용할 수 있으며, 검수대상 수출품은 검수를 면제할 수 있음<sup>369)</sup>
    - 단 최근 3년간 심각한 규제 위반 기록이 있는 AEO G에는 이 조치를 적용할 수 없음
  - AEO G의 경우 담보 제공 후 제세금에 대한 통합 납부를 할 수 있으나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담보 제공 후 물품을 검사하여 세관에서 물품이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 조치를 적용할 수 없음
  - AEO G는 제3조에서 정한 진술서 제공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관세, 세금 및 기타 부담금의 지급 담보 대안으로 진술서(affidavit)를 작성 및 신청할 수 있음
    - 제조업 관리 및 상담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367)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29조; 제30조

368)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수출입물품 검사준칙」,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G0350013>, 검색일자: 2020. 10. 12.

369)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9조

- 최근 3년간 연매출 5억신대만달러 이상, 또는 3년 이상 과학단지, 수출가공지구 또는 농업기술공원 중 하나에 보세공장, 또는 자기관리공장을 운영하면서 연매출 3천만신대만달러 이상인 업체
  - 최근 3년간 관할 세관에 의해 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
  - 연간 수출입 실적이 5천만신대만달러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적자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최근 3년간 심각한 규정 위반 기록이 없는 경우
  - AEO가 보세공장과 비보세공장을 모두 소유하고 있고 두 공장이 동일한 영업관리번호로 운영되는 경우
- AEO G는 수입신고서 작성 시 신고서와 함께 세관으로부터 재수입된 대만산 제품의 반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수출신고서 원본에 해당 품목을 기재할 수 있음
- 규정 위반에 대한 기록(record of serious violation of regulations)은 본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세관의 제재 결정 통지를 받는 것을 의미함<sup>370)</sup>
- 단 공급망 내의 다른 경제 운영자에 의해 위반이 발생하거나 인수·합병이 완료될 때까지 합병사업자가 인수·합병 전 위반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위반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됨
  - 세관의 제재 대상이 되는 해당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음
    - 밀수 행위
    - 탈세(관세 및 다른 정부 기관에서 징수된 세금), 과납된 세금 환급 또는 단일 사건 또는 복수 사건에 대해 부과된 확정 금액의 벌금이 50만신대만달러를 초과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에 따른 규정 위반
    - 단일 사건 또는 복수의 사건 총액에 대해 압수물 가치가 100만신대만달러를 초과하는 행위의 결과로 인한 규정 위반

370)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2조

## 나. AEO S

- 세관은 AEO S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sup>371)</sup>
  - 최저 문서 검사 및 낮은 심사율
  - 물리적 검사를 위하여 선정된 수출품은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나 검사를 면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에 검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
  - 물품이 출고되지 않은 경우 단일 접촉 창구를 정하여 경제 운영자들이 통관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비침입검사(non-intrusive inspection) 신청 가능
  - FOB 가격이 1억신대만달러인 물품은 서류심사 및 물리적 검사 없이 반출할 수 있음
  
- AEO S 납세의무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sup>372)</sup>
  - 최저 문서 검사 및 낮은 심사율
  - 물품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입품에는 간이검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우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AEO S의 경우 담보 제공 후 제세금에 대한 통합납부를 할 수 있으나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담보 제공 후 물품을 검사하여 세관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조치를 적용할 수 없음
  - AEO S는 본법 제3조에서 정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관세, 세금 및 기타 부담금의 지급 담보 대안으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AEO G의 진술서 제공 요건과 동일함
  - 물품이 출고되지 않은 경우 단일 접촉 창구를 정하여 경제 운영자들이 통관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신고 시 서면 진술서와 함께 대만산 재수입품에 대해 세관에 반출을 신청할 수

371)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15조

372) 「품질기업 인증 및 관리방법」 제16조

- 있으며, 이후 수출신고서 원본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비 침입검사(non-intrusive inspection) 신청 가능
- 신고 물품가액이 1억신대만달러인 물품은 서류심사 및 물리적 검사 없이 반출할 수 있음
- 일시수입한 물품은 관세, 세금, 그 밖의 부담금의 납부를 위해 보증 없이 압류할 수 있음

## 다. MRA

-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이하 MRA)은 상대국가에서 실시한 제품, 공정, 서비스의 적합성평가결과 및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을 의미함
  - 중복적인 시험의 방지, 불필요한 규제비용 절감, 교역을 위한 시장접근의 용이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음
- 대만은 미국(2012), 싱가포르(2013), 이스라엘(2013), 한국(2015), 호주(2018), 일본(2018) 총 6개국과 MRA 체결 중에 있음<sup>373)</sup>
  - 우리나라와 대만은 2015년 12월 AEO MRA를 체결한 후 혜택 적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 등 협의를 거쳐, 4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였음
    - 한국 세관이 한국 AEO업체의 공인번호를 대만 세관에 통보하면 대만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신고서의 AEO공인번호와 한국 통보자료를 대조·확인하여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하게 되었음
    - 우리나라 AEO인증을 받은 수출업체가 대만으로 물품을 수출할 시 대만 세관 통관과정에서 물품검사 축소, 검사지정 시 우선 처리,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 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됨

373) 한국AEO진흥협회, 「상호인정협정(MRA)」, <http://www.aeo.or.kr/intrcn/aeoNationMraView.do>, 검색일자: 2020. 4. 7.



##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 I. 수입 통관절차

#### 1. 개요

- 대만의 수입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물품검사, 세금납부 및 물품반출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세관은 수입자에 통지한 후 사후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 일반적인 수입 통관절차는 「관세법」, 「수입 및 수출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 (Regulations Governing the pre-entry Customs Declaration of Import/Export Goods)」<sup>374</sup> 등에 의거하여 진행됨
  - 우편물의 수입통관은 「소포 물품의 수출입 통관방법(Regulations Governing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for Importing and Exporting Postal Parcels, 이하 소포 물품의 수출입 통관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해운 특송물품의 수입통관은 「해운 특송물품 통관방법(Regulations Governing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for Maritime Express Consignments, 이하

374)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 및 수출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G0350012>, 검색일자: 2020. 10. 11.

- 해운 특송물품 통관방법)<sup>375)</sup>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항공 특송물품의 수입통관은 「항공 특송물품 통관방법(Regulations Governing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for Air Express Consignments)」<sup>376)</sup>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개인물품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관세법」 및 관세 관련 규정들을 통해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음

## 2. 수입 통관절차

### 가. 수입신고

- 수입물품의 사전 세관신고의 경우 「관세법」 제1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수입 및 수출 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에 따라 진행됨
  - 수입자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적법하게 제시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예약 절차를 완료한 다음 세관에 사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음<sup>377)</sup>
  - 신선 식품, 부패하기 쉬운 상품, 살아 있는 동물, 식물, 위급한 뉴스 및 정보, 위험 상품, 방사성 요소, 재, 시체, 벌크화물 또는 세관에서 항공기와 함께 검사 및 반출할 수 있는 물품의 수입에 대해 납세자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시할 시 사전 신고가 허용됨<sup>378)</sup>
  - 수입품이 운송 수단이 아닌 파이프를 통해 운송되도록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납세자는 예상 수량에 대한 증빙 서류와 함께 수입 1개월 전에 세관에 사전 신고를 진행해야 함<sup>379)</sup>

375)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해운 특송물품 통관방법」,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G0350071>, 검색일자: 2020. 10. 11.

376)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 특송물품 통관방법」,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G0350064>, 검색일자: 2020. 10. 11.

377) 「수입 및 수출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 제2조

378) 「수입 및 수출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 제7조

- 납세자(납부자 또는 B/L 보유자) 또는 관세사는 관세청에 수입 신고서를 제출 또는 전송하여 물품의 수입을 신고해야 함
  
- 수입 신고서는 물품 도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에 송부되어야 하며 신고 종료일과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sup>379)</sup>
  - 상호 접속되지 않은 사용자: 대만 세관에 신고서가 등록된 날
    - 신고서를 등록용지에 입력하여 세관에 제출하거나 신고 자료를 전자매체(예: 플로피디스크)에 저장해야 함
  - 인터페이스 사용자: Trade Van으로 데이터가 전송된 날
    - 모든 데이터를 검토한 후, 면허가 있는 세관신고 직원은 세관 또는 기타 세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발급한 '턴키'(turn key)를 사용하여 전자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미결 신고 건수가 30건 미만일 경우) 전송 후 15분 이내에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며 오류가 있을 시 '오류 선언' 또는 '문서의 불완전한 제공'으로 표시됨
    - 수입신고가 C1로 승인된 경우, 응답 메시지는 세금 납부 전표 또는 화물 양도 통지로 표시됨
    - 서면 신고서의 내용은 전자 신고서의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신고서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세관은 신청인에게 온라인에서 해당 내용을 시정하도록 통보함
  
- 물품의 수입자는 수입 신고서를 비롯하여 수입에 필요한 청구서, 포장 목록 및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비인터페이스 신청자는 항공 운송장 및 수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인터페이스 신청자의 경우 해당 의무가 부과되지 않게 됨(관세청 요청이 있을 경우 항공사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379) 「수입 및 수출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 제7-1조

380) 대만 재정부 관무서, "Import Cargo Declaration," <https://etaipei.customs.gov.tw/cp.aspx?n=B5877621755C11D4>, 검색일자: 2020. 11. 9.

- 송장 또는 상업 송장 사본 1부를 동봉해야 함
- 포장 목록(Packing list) 1부를 제출해야 하며 대량, 중량 또는 균일 포장 화물에 대해서는 제출이 면제됨
- 수입 허가서: 필요품목의 경우 대외무역국 경제부에서 발행하는 수입 제한품 목록 111, 113 및 121항에서 정한 수입 제한품에 대한 수입 허가서를 제출해야 함
- 위임장: 세관의 승인에 대해 표기하고 납세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위임장의 승인 기간은 1년 이하임
- 화물가액신고서 2부: 특별한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서 제출하며 여행자의 수하물, 소포, 샘플, 선물, 면세품, 재수입,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에서 수입하는 화물, 보세공장, 수출가공구역 및 과학단지에서 수입하는 화물에는 화물가액 신고서가 필요없음
- 원산지증명서(C/O):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며 관세율(관세율 II열)에 대한 적용을 위해 세관의 요청에 따라 C/O를 제출해야 함
- 세관 검사 또는 평가에 따라 카탈로그, 설명서 또는 도면을 제출해야 함
- 수입차의 경우 신고내역 사본을 제출해야 함
- 기타 해당 조항을 관리하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첨부해야 함 (예: 살충제 수입에 대한 농약 허가 및 살충제 판매 허가서, 무면허 수입업자에 대한 면허소지자의 위임장 등)

## 나. 물품검사

- 수입신고 후 물품은 C1, C2, C3의 3가지 범주로 분류되어 검사가 이루어짐<sup>381)</sup>
  - C1은 문서 검토 또는 물품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381) 대만 재정부 관무서, "Import Cargo Declaration," <https://etaipei.customs.gov.tw/cp.aspx?n=B5877621755C11D4>, 검색일자: 2020. 11. 9.

- C2는 문서 검토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C3는 문서 검토 및 물품 검사를 의미함
- C2 또는 C3으로 통관하는 경우 대상자는 수입신고의 문서 복사본을 다음 날 영업시간 내에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관은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경고하거나 6천~3만신대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sup>382)</sup>
  - 필요한 경우 세관은 과태료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음
- 포장 목록, 수입 허가 및 관련 문서는 물품의 반출 전 보완이 가능하며 세관 통지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항에 언급된 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은 기한 내 반환되어야 함<sup>383)</sup>
-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은 허가 또는 신청을 통해 심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샘플을 회수할 수 있음<sup>384)</sup>
  - 회수된 샘플의 수량은 검사를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수량으로 제한되며 심사 및 샘플 회수의 방법, 시기 및 장소, 검사 면제 범위는 재무부가 정함
- 세관은 사전 신고와 함께 각각의 수입품을 인도 또는 적재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무작위 또는 반복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sup>385)</sup>
- 「수출입화물검사준칙(Regulations Governing the Examination of Imported or Exported Goods)」에 따라 이루어짐
  - 수입 물품은 창고, 컨테이너 터미널 또는 세관에서 승인하거나 지정한 위치에서 검사가 이루어짐<sup>386)</sup>

382) 대만 재정부 관무서, "Import Cargo Declaration," <https://etaipei.customs.gov.tw/cp.aspx?n=B5877621755C11D4>, 검색일자: 2020. 11. 9.

383) 「관세법」 제17조

384) 「관세법」 제23조

385) 「수입 및 수출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 제6조

386) 「수출입화물검사준칙」 제8조

- 다음의 수입물품은 검사가 면제됨<sup>387)</sup>
  - 대통령 및 부통령이 사용하는 품목
  - 대사관 및 영사관의 외교관, 영사관 및 기타 기관 및 직원의 공공 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한 물품으로 외교부 또는 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 필요한 경우 세관은 수입자와 외교부에 확인하여 해당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기관에 연락하여 물품의 수입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검사에서 면제된 기타 프로젝트 승인 자료
  - 포장과 무게가 동일한 벌크 제품 또는 벌크 또는 부피가 큰 기계 및 장비로 수입된 벌크 제품으로 선하 증권, 포장 목록, 송장 및 기타 문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
  - 군사 및 정치 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
  -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
  - 긴급 구조를 위해 수입된 장비 및 물품
  - 국내 공립 및 사립대학에서 수입하는 물품
  - 개인적인 선물
  - 관 또는 재
  - 기타 세관에서 승인한 제조업체의 수입
  
- 수입물품 검사 결과 과소 포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하인이 과소 포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반출 전 세관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음<sup>388)</sup>
  - 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물품은 창고에서 출고된 후 과소 포장된 것으로 판명되며 물품이 창고에서 출고된 후 1개월 이내에 공증된 신고서 및 화주로부터 받은 편지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 수입물품의 검사는 수동 검사 또는 기기 검사로 수행할 수 있으며 수작업 검사 과정에

387) 「수입 및 수출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 제17조; 제18조

388) 「수입 및 수출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 제20조

서 상품의 이름, 수량, 품질, 규격 등이 허위로 신고되거나 기타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완전 검사(모두 포함)를 원칙으로 실시함<sup>389)</sup>

○ 세관은 필요한 경우 검사를 마친 수입 물품을 재검사할 수 있음<sup>390)</sup>

□ 위험물, 가스, 오염 악화 또는 물품의 손상에 취약한 물품에 대해 수입자는 물품의 독성, 가연성, 폭발성, 가스 압력의 화합물 또는 기타 특성과 관련한 세관 검사 및 기타 검사를 이행해야 함

○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세관에 설명해야 하며 물품의 검사 시 포장 본체가 실제로 물품에 해를 입히거나 상품에 손상 또는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를 위해 개봉할 수 없음<sup>391)</sup>

#### 다. 세금납부 및 반출

□ 관세는 납부 고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sup>392)</sup>

○ 법에 따라 부과된 물품의 가액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은 세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물품을 매각하거나 파기하기 위한 경비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수입물품의 통관을 촉진하기 위해 세관은 납세자가 제출한 필수 신고 사항에 따라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후 사후에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음

○ 세관은 반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환급 또는 회수 가능한 관세를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함

○ 규정된 기간이 만료 된 후에는 기존에 지불한 관세를 최종 지불 관세로 간주함

389) 「수입 및 수출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 제3조; 제13조

390) 「수입 및 수출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 제12조

391) 「수입 및 수출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 제23조

392) 「관세법」 제43조

- 일반적으로 물품은 관세를 납부한 후 반출하며 이 법에서 정한 다른 사항이나 보증서가 세관에 제출 및 승인된 경우는 관세납부 전에 물품 반출이 가능함
  - 보증의 절차, 범위 또는 방법, 보증 책임 종료, 그 밖에 요구 사항은 재무부에서 정하도록 함
  
-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 심사 및 반출하지 않고 납부할 관세액을 즉시 결정할 수 없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적절한 보증금을 지불한 후 물품을 반출하도록 함<sup>393)</sup>
  - 세관은 세금 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액을 결정해야 하며,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가격을 관세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
  
- 수입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대리인은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를 세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심사 승인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해야 함<sup>394)</sup>
  - 세관은 사전 심사에 따른 결과가 변경되었을 시 그 사유를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수입품에 대하여 사전 신고와 함께 초과반출, 과소반출, 과적재, 과소적재의 경우에는 해당 지침에 따라 과세하며 수수료는 그에 따라 환불 또는 부과됨<sup>395)</sup>
  
- 기타 수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품된 수출품의 재수입은 면세되며 수출 시 환급되었던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수입 시 납부해야 함
  - 수출품의 재수입이 보증 수리 또는 유지 보수 후 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출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해 환급된 제세금은 다시 부과되지 않음
  
- 다음 조건에 따라 세관이 검사를 승인한 특별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수수료징수

393) 「관세법」 제18조

394) 「관세법」 제21조

395) 「수입 및 수출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 제4조



규칙(Regulations Governing Collection Of Customs Service Fees, 세관수수료 징수규칙)<sup>396)</sup>에 따라 신고당 1,300신대만달러의 특별물품검사 수수료가 부과됨<sup>397)</sup>

- 세관 등록 창고, 컨테이너 터미널, 항공물품 터미널 및 하역 부두의 빈 공간 외부에 보관된 물품의 검사
  - 물품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재검사 또는 특별 검사 절차
  - 선박(항공기) 측 반출을 위한 수입물품의 검사
  - 물품 소유주 또는 통관 대리인의 누락으로 인한 2차 통관절차
  - 업무 시간 외에 수행되는 물품 검사 절차
  - 동일한 물품 소유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서식이 동일시기와 장소에서 검사 예정 물품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특별물품 검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함
- 다음의 수입물품은 특별물품검사 수수료, 특별 감시 수수료 및 호위 운송 수수료가 모두 면제됨<sup>398)</sup>
- 승객의 개인 수하물, 군사 시설의 수입물품, 긴급 구조 또는 전염병 예방 장비, 자료 및 구호 지원, 문서, 잡지, 저널 및 신문(총중량)이 20kg 미만인 경우
  - 수출가공구역에 설립된 사업소, 보세공장 및 물류센터, 과학단지, 정부가 인가한 특별 무역 및 운영 구역에서 검사 또는 검사를 위해 물품 샘플을 부지(공장 또는 센터) 외부로 보내는 경우

396)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세관수수료징수규칙」,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50025>, 검색일자: 2020. 10. 12.

397) 「세관수수료징수규칙」 제3조

398) 「세관수수료징수규칙」 제9조

### 3. 기타 통관절차

#### 가. 우편물

- 우편물은 「관세법」 제15조에 규정된 수입 금지 물품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단위(가방)당 총 중량은 30kg 미만이어야 수입이 가능함<sup>399)</sup>
  
- 수입 우편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취인은 관세 심사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관을 신청해야 함<sup>400)</sup>
  - FOB 가격이 미화 5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세금 환급 또는 보증을 요청할 목적으로 중복 신고가 필요하는 경우
  - 원래 수출 신고서와 대조 확인해야 하는 재수입 사례
  - 법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세 감면 대상 물품 및 관세 관련 부칙이 있는 경우
  - 일반적인 수입 신고 이외의 수입 신고
  - 재정부가 고시한 특별 보호 조치 대상 물품
  - 관세 쿼터가 적용되는 물품
  -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세관 신고 대상이 되는 기타 우편물
  
- 수입 우편물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관세, 물품세, 영업세, 담배 및 알코올세, 담배에 대한 보건 및 복지부과금, 서비스세, 무역촉진서비스료 등이 부과됨<sup>401)</sup>
  - 관세액이 2천신대만달러 이내일 경우 관세, 물품세, 사업세는 면제됨
  - 관세, 물품세, 사업세가 면제되는 우편물에는 관세 쿼터 대상 담배, 주류 또는 농산물 등이 있음

399) 「소포 물품의 수출입 통관방법」 제3조

400) 「소포 물품의 수출입 통관방법」 제6조

401) 「소포 물품의 수출입 통관방법」 제7조

- 재무부는 비상사태 발생 시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목적의 관세액인 2천신대만달러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고시함
- 수입 우편물의 과세가격이 2천신대만달러를 초과하고 세관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세관은 수입 우편물에 대한 관세 메모를 작성하여 우편물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우체국에 제출함<sup>402)</sup>
- 해외에서 수입한 두 개 이상의 우편물이 동일한 발송인으로부터 발송되어 같은 날 동일한 수취인에게 배달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은 합산 방식으로 계산됨<sup>403)</sup>
- 우편물이 검사, 방역 품목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다른 수출입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해당 수출입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sup>404)</sup>
- 수입 승인 신청 문서가 필요하지 않는 수입 우편물은 다음과 같음
  - 6kg 미만의 수입 애완동물 사료의 경우 '동물 사료 수입 등록 증명서'가 필요 없음
  - 수입 승인 문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관할 기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용 수입 담배 및 주류의 수량이 다음 기준 미만인 경우 담배 및 주류 수입업자 면허 또한 필요하지 않음
    - 주류: 5리터
    - 담배: 담배 5팩(1천개) 또는 시가 125개 또는 5파운드의 담배
- 우편물을 검사하는 동안 우편 당국은 세관과 함께 검사를 수행하고 이전, 해체, 개봉 및 원래 상태의 복원과 관련된 문제를 수행할 직원을 파견하며 필요한 경우 수취인(발

402) 「소포 물품의 수출입 통관방법」 제10조

403) 「소포 물품의 수출입 통관방법」 제11조

404) 「소포 물품의 수출입 통관방법」 제13조

송인)이 검사 중 참석을 요청받을 수 있음

- 우편물이 과체중이거나 크거나 기타 특별한 조건이 있고 검사를 위해 세관에서 승인한 특정 검사 장소로 옮겨야하는 경우, 우편 당국은 물품의 운송, 보안 및 관리를 담당함

## 나. 해상 및 항공 특송물품

- 해상 특송 업체는 컴퓨터 또는 전자적 정보 전송을 통해 세관에 특송물품 수입을 신고해야 하며 물품은 성격 및 가치에 따라 다음의 범위로 분류함<sup>405)</sup>
  - 물품은 수입 문서, 과세가격이 2천신대만달러 이하인 면세 저가 수입 위탁품, 과세가격이 2,001~5만신대만달러인 저가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5만신대만달러를 초과하는 고부가가치 수입물품으로 분류됨
  
- 수입 해상 특송 물품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수출 절차에 따라 통관하도록 함<sup>406)</sup>
  - 고부가가치 수입 해상 특송물품
  -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세관에서 달리 고지하지 않는 한 수입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세금 환급, 담보 상쇄를 요청할 목적으로 신고서의 중복 신청이 필요한 경우
  - 반품 또는 재수출로 인해 기존의 수출신고서와 교차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관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관세 감면 대상 물품
  - 일반적인 수입신고에 적용되지 않는 물품
  - 재정부가 고시한 특별 보호 조치 대상 물품
  - 관세 할당이 적용되는 물품

405) 「해운 특송물품 통관방법」 제11조

406) 「해운 특송물품 통관방법」 제12조

- 동일한 항해에서 한 수탁자로부터 다른 수탁자에게 선적된 단일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에 별도 신고가 필요 없음<sup>407)</sup>
- 수출입 해상 특송 물품에 물품 검사 또는 검역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검역과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하도록 함<sup>408)</sup>
- 해운 특송 업체는 운송업자가 수입명세서를 송부한 후에만 수입신고서를 송부해야 하며, 신고는 컨테이너에서 화물이 완전히 하역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sup>409)</sup>
  - 세관은 선박이 도착하기 전 물품검사 대상 물품과 검사를 보류한 물품에 대해 전자적으로 통보함
- 해상 특송 물품에 부과되는 제세금은 물품 반출 후 납부가 가능하며 사전에 예치된 유가 증권을 통하여 부과한 후, 위탁이 통관되었을 시 온라인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음<sup>410)</sup>
- 해상 특송 업체는 마약, 총기류, 전략적 첨단 물품,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보존된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의 밀수 및 기타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세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함<sup>411)</sup>
- 해상 특송 업체가 일반 수입신고 양식으로 신고해야 할 물품을 간이 신고 양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관은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특정 기한 전에 경고 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6천신대만달러 이상 3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sup>412)</sup>
  - 3회 연속 제재 후에도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해상 특송 업체의 통관 업무는 최대 6개월간 정지될 수 있음

407) 「해운 특송물품 통관방법」 제15조

408) 「해운 특송물품 통관방법」 제16조

409) 「해운 특송물품 통관방법」 제17조

410) 「해운 특송물품 통관방법」 제21조

411) 「해운 특송물품 통관방법」 제23조

412) 「해운 특송물품 통관방법」 제28조

- 항공 특송 물품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sup>413)</sup>
  - 「관세법」에 의해 금지된 물품, 통제된 물품,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신선농·수산물 및 축산물, 살아 있는 동물 및 식물, 야생 생물 및 그 제품을 보존한 발송물
  - 각 포장(가방)의 총 중량이 70kg 이하인 발송물
  
- 특송 업체는 수입 항공 특송물품에 해당 상업 송장, 인식 가능한 바코드 또는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비상업적 거래의 경우 위탁자가 보증한 물품의 가치에 대한 명세서를 대신 첨부해야 함<sup>414)</sup>
  
- 항공 특송 업체는 컴퓨터 또는 대만 세관의 전자적 부가가치 통신망을 통해 세관에 특송물품 수입을 신고해야 하며 물품의 성격 및 가치에 따라 다음의 범위로 분류함<sup>415)</sup>
  - 특송물품은 수입 문서, 과세가격이 2천신대만달러 이하인 저가의 면세물품, 과세가격 2,001~5만신대만달러인 저가 과세물품, 과세가격 5만신대만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으로 분류됨
  
-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야 하는 특송물품에 대한 조건과 검역조건, 일반 수입신고 양식으로 신고해야 할 물품을 간이 신고 양식으로 신고하는 데 따른 벌칙은 해상 특송물품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동일함<sup>416)</sup>
  - 특송 업체 또는 통관업자는 특급화물의 단일 수입에 대해 세관에 별도의 신고를 할 수 없음

---

413) 「항공 특송물품 통관방법」 제6조

414) 「항공 특송물품 통관방법」 제10조

415) 「항공 특송물품 통관방법」 제11조

416) 「항공 특송물품 통관방법」 제12조; 제15조; 제28조

## 다. 여행자 물품

- 여행자 물품에 대한 신고는 레드와 그린의 두 가지 채널로 분류되어 이루어짐
  - 신고할 물품이 있는 승객은 레드 채널로 이동하여 수하물을 검사할 세관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승 구역에 머무는 환승 승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통관에 의문이 있는 경우 레드 채널로 이동하여 정보를 확인해야 함
  - 신고할 것이 없는 승객은 신고를 하지 않고 그린 채널을 통해 입국장으로 이동할 수 있음
  - 그린 채널로 입장하는 승객은 위반 상품이 없다는 법적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현장에서 허위 또는 허위 진술이 발견되면 밀수로 처리함
  
- 세관은 레드 채널과 그린 채널 모두에서 수하물과 관계인에 대해 검사를 부과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미신고 상품, 허위진술은 세관 밀수 방지 규정 및 기타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됨
  
- 신고된 상품이 현장에서 반출되지 않는 경우, 승객이 개인적으로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해당 수하물의 원스톱 통관 또는 반환을 처리할 때까지 해당 상품을 밀봉하고 임시 보관을 위해 세관 창고에 보관해야 함
  - 법인 또는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화물을 운반 및 수입하는 승객은 원스톱 통관을 신청해야 함
  
- 비동반 수하물은 승객과 동일한 항공기 또는 선박에 도착하지 않는 수하물로서 입국 승객 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착 시 레드 채널을 통해 세관에 신고해야 함<sup>417)</sup>
  - 승객은 개인 물품 또는 가정용품에 대해 총 2만신대만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비동반 수하물은 승객의 입국 전 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되어야 함

417) 대만 재정부 관무서, 「세관수수료징수규칙」, <https://etaipei.customs.gov.tw/cp.aspx?n=DC E1E15B5BBE9307>, 검색일자: 2020.11. 2.

- 이 기간 내에 수입되지 않은 물품은 일반화물로 간주되며, 입국 승객에 대한 관련 면세 및 인증 면세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 대만 도착 후 승객(또는 대리인)이 비동반 수하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 수단의 도착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관을 신청해야 함
  - 승객(또는 대리인)이 기간 내에 통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규정된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1일당 200신대만달러의 연체료가 부과됨
- 개인적인 용도로 자동차를 수입하는 개인은 수입 허가를 위해 국제 무역국에 미리 이를 신청한 후 세금을 납부 시 다음의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sup>418)</sup>
- 수입 신고, B/L 사본, 송장, 수입 허가(FOB 2만달러 이하의 경우 수입 허가 불필요), 신고 승인 위임장,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수입차 사양

---

418) 대만 재정부 관무서, "Personal Vehicles," <https://etaipei.customs.gov.tw/cp.aspx?n=DC E1E15B5BBE9307&s=E1ED1C48DB07BB87>, 검색일자: 2020. 11. 2.



## II. 수출 통관절차

### 1. 개요

- 대만의 수출 통관절차는 수출신고, 물품검사, 물품반출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세관은 수출자에 통지한 후 사후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 일반적인 수출 통관절차는 「관세법」, 「수입 및 수출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Regulations Governing the pre-entry Customs Declaration of Import/Export Goods)」<sup>419)</sup> 등에 의거하여 진행됨
  - 우편물의 수출통관은 「소포 물품의 수출입 통관방법(Regulations Governing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for Importing and Exporting Postal Parcels, 이하 소포 물품의 수출입 통관방법)」<sup>420)</sup>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해운 특송물품의 수출통관은 「해운 특송물품 통관방법(Regulations Governing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for Maritime Express Consignments, 이하 해운 특송물품 통관방법)」<sup>421)</sup>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419)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 및 수출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G0350012>, 검색일자: 2020. 10. 11.

420)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소포 물품의 수출입 통관방법」,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50072>, 검색일자: 2020. 10. 11.

421)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해운 특송물품 관리방법」,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G0350071>, 검색일자: 2020. 10. 11.

- 항공 특송물품의 수출통관은 「항공 특송물품 통관방법(Regulations Governing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for Air Express Consignments)」<sup>422</sup>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개인물품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관세법」 및 관세 관련 규정들을 통해 수출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음

## 2. 수출 통관절차

### 가. 수출신고

- 수출물품은 물품을 적재한 운수수단이 통관 완료 또는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세관에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함<sup>423</sup>
  - 수출물품의 신고·심사·반출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재정부가 담당하고 있음
  - 수출자는 Trade Van(이하, T/V)<sup>424</sup>을 통해 24시간 동안 수출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할 수 있음
- 대만 세관에서는 수출 관련 사업자를 위한 수출신고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sup>425</sup>
  - 수출 업체는 모든 물품을 같은 날에 수출하지 않거나 휴일 전날 모든 물품을 수출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물품을 창고로 배달해야 함

422)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 특송물품 통관방법」,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G0350064>, 검색일자: 2020. 10. 11.

423) 「관세법」 제16조

424) Trade Van, 「서비스 소개」, <https://www.tradevan.com.tw/services/index.do>, 검색일자: 2020. 10. 12.

425) 대만 재정부 관무서, “Export Cargo Declaration,” <https://etaipei.customs.gov.tw/cp.aspx?n=D48FEFD50E10690A>, 검색일자: 2020. 9. 23.

- 관세사는 각각 다른 시간에 수출신고서를 전송해야 하며 검사 또는 문서 검토를 위해 발송물을 선택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각 세관에 신고서의 인쇄본을 제출해야 함
- 항공 운송업체는 처리하는 모든 발송물에 대해 항공편을 분리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모든 물품을 발송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T/V에 접속해야 함
- 수출물품의 사전 세관신고의 경우 「관세법」 제1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수입 및 수출 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에 따라 진행됨
  - 물품 수출자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적법하게 제시한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예약 절차를 완료한 다음 세관에 사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음<sup>426)</sup>
- 수출신고 시 수출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선적 목록, 예약 메모, 포장 목록, 수출 허가서 및 수출에 필요한 관련 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sup>427)</sup>
  - 물품 검사에 필요한 포장 목록, 수입수출 허가 및 관련 문서는 보장이 가능함
  - 수출자는 수출신고서를 수정하기 위해 세관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세관 통과 후 2개월 이내에 전항에 언급된 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수출품은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 또는 취소되어야 하고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물품 수출자가 서면으로 물품을 포기하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물품을 반품 및 철회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물품을 처분하도록 함
  - 검사 항목, 기한, 감사 참조 및 필요한 증거 문서 및 기타 관련 절차는 재정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수출과 관련된 관련 통관 코드분류는 다음과 같음<sup>428)</sup>

426) 「수입 및 수출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 제2조

427) 「관세법」 제17조

428) 대만 재정부 관무서, "Export Cargo Declaration.", <https://etaipei.customs.gov.tw/cp.aspx?n=D48FEFD50E10690A>, 검색일자: 2020. 9. 23.

- CA-대만세관(대만 항공물품 터미널, TACT)
- CB-대만세관 통관부서 II(보세물품 통관)
- CD-특송물품 사업부(TACT 항공기측면반출)
- CE-특송물품 사업부(TACT 특송화물처리)
- CF-특송물품 사업부(Fedex 환적 센터)
- CG-대만 세관(Ever green 항공물품 터미널)
- CH-Jhuwei 지점(Ever green터미널)
- CI-검사과(여객 수하물)
- CM-대만세관 통관부서 I(Fedex 특송터미널 )
- CN-대만세관 특송물품 사업부(Evergreen 항공기 측면 물품 보관)
- CP-(송산 지사 우편과)
- CR-대만세관 특송물품 사업부(Evergreen 항공기 특송화물 처리)
- CS-신주 과학 산업단 지역
- CT-(본부 대만 과학 공원물류 물품 터미널, 항공기특면 반출창고)
- CU-대만 세관 특송물품 사업부(UPS 아시아 허브)
- CV-Jhuwei 지점(Ever 특송화물처리 터미널)
- CW-Jhuwei 지점(Far Glory 일반 물품 보세창고)
- CX-Jhuwei 지점(Far Glory 특송화물처리)
- CY-Jhuwei 지점(Far Glory 항공기측면 반출창고)
- CZ-Songshan 지점(대만 과학 공원물류 특급물품 취급 장치)

## 나. 물품검사

- 수출신고 후 물품은 C1, C2, C3의 3가지 범주로 분류되어 검사가 이루어짐<sup>429)</sup>
  - C1은 문서 검토 또는 물품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429) 대만 재정부 관무서, "Export Cargo Declaration," <https://etaipei.customs.gov.tw/cp.aspx?n=D48FEFD50E10690A>, 검색일자: 2020. 9. 23.

- C2는 문서 검토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C3는 문서 검토 및 물품 검사를 의미하며 C2 또는 C3 유형의 통관의 경우 관세사는 신고서의 인쇄본을 제출해야 함
  - C3 통관의 경우 FOB가격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 수출자는 1,300신대만달러의 추가 심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FOB가격이 5천달러 미만인 경우 검사 비용은 650신대만달러임
  - 수출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검사를 해야 하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 다양한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한 번의 신고에 대해 추가 검사료만 지불할 시 가능함
  
- 세관에서 인증한 모든 필수 서류와 함께 사전 신고서가 있는 수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리 검사를 면제하지 않는 한 검사에 합격 시 반출 가능함<sup>430)</sup>
  - 세관 이동 검사단은 수출물품 품목별로 사전 신고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무작위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sup>431)</sup>
  - 신선식품, 부패하기 쉬운 물품, 살아 있는 동식물, 시간상 중요한 뉴스와 정보, 위험물, 방사능 원소, 재, 시체, 대량 물품 또는 세관이 특별히 검사하고 방출할 수 있는 물품은 필요한 모든 조치 및 수출자의 모든 서류 제출을 전제로 사전 신고가 이루어짐<sup>432)</sup>
  - 수출물품은 세관이 규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하역해야 하며 쉽게 부패하거나 위험한 물품 또는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의 비준을 거쳐 하역 시간 및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음<sup>433)</sup>
  
- 물품의 검사는 「관세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수출입화물검사준칙」에 따라 이루어짐
  - 수출 물품은 창고, 컨테이너 터미널 또는 세관에서 승인하거나 지정한 위치에서

430) 「수입 및 수출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 제5조

431) 「수입 및 수출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 제6조

432) 「수입 및 수출물품의 사전통관 처리지침」 제7조

433) 「관세법」 제24조

검사가 이루어짐<sup>434)</sup>

- 수출품에 대해 세관은 신청 시 허가를 통해 검사를 실시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음<sup>435)</sup>
  - 샘플의 수량은 검사를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수량으로 제한되도록 함
  - 검사 및 시료 회수의 방법, 시간 및 장소, 검사 면제 범위는 재정부가 정하도록 함
  - 수출된 물품 검사 시 운송, 개봉, 복원에 참여하는 것은 수출자의 책임으로 원래의 형태 또는 상태에 대한 복원 비용은 모두 수출자가 부담해야 함
  
- 수출품에 대해 세관은 허가 또는 신청을 통해 검사를 실시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음<sup>436)</sup>
  - 샘플의 수량은 검사를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수량으로 제한되도록 함
  - 검사 및 시료 회수의 방법, 시간 및 장소, 검사 면제 범위는 재정부가 정하도록 함
  - 수출된 물품 검사 시 운송, 개봉, 복원에 참여하는 것은 수출자의 책임으로 원래의 형태 또는 상태에 대한 복원 비용은 모두 수출자가 부담해야 함
  
- 검사가 면제되는 수출품은 다음과 같음<sup>437)</sup>
  - 대통령과 부통령이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
  - 외교관, 영사관 및 기타 중국 내 여러 국가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외교적 대우를 받는 기관 및 직원이 해외로 발송한 물품으로 외교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물품
  - 기타 재무부에서 승인한 검사 면제물품
  - 신선한 과일 및 채소
  - 동물, 식물 묘목 및 나무

---

434) 「수출입화물검사준칙」 제8조

435) 「관세법」 제23조

436) 「관세법」 제23조

437) 「수출입화물검사준칙」 제27조; 제28조

- 동일한 포장 및 무게를 가진 대량 물품
  - 군사 및 정부 기관 및 공기업이 수출하는 물품
  - 정부 기관, 공공복지 및 자선 단체의 구호 물품
  - 해외 판매에 대한 세금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물품
  - 위험물
  - 관 또는 재
  - 세관에서 승인한 제조업체의 수출품
- 다음 조건에 따라 세관이 검사를 승인한 특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수수료징수 규칙」<sup>438)</sup>에 따라 신고당 1,300신대만달러의 특별물품검사 수수료가 부과됨<sup>439)</sup>
- 세관 등록 창고, 컨테이너 터미널, 항공물품 터미널 및 하역 부두의 빈 공간 외부에 보관된 물품의 검사
  - 물품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는 수출물품에 대한 재검사 또는 특별 검사 절차
  - 선박(항공기) 측 반출을 위한 수출물품의 검사
  - 물품 소유주 또는 통관 대리인의 누락으로 인한 2차 통관절차
  - 업무 시간 외에 수행되는 물품 검사 절차
  - 동일한 물품 소유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서식이 동일시기와 장소에서 검사 예정 물품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특별물품 검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함
- 다음의 수출물품은 특별물품 검사 수수료, 특별 감시 수수료 및 호위 운송 수수료가 모두 면제됨<sup>440)</sup>
- 승객의 개인 수하물, 군사 시설의 수출물품, 수출 처리 구역의 수출 소포, 긴급

438) 대만국가법령정보센터, 「세관수수료징수규칙」,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50025>, 검색일자: 2020. 10. 12.

439) 「세관수수료징수규칙」 제3조

440) 「세관수수료징수규칙」 제9조

- 구조 또는 전염병 예방 장비, 자료 및 구호 지원, 문서, 잡지, 저널 및 신문(총 중량)이 20kg 미만인 경우
- 수출가공구역에 설립된 사업소, 보세공장 및 물류센터, 과학단지, 정부가 인가한 특별 무역 및 운영 구역에서 검사 또는 검사를 위해 물품 샘플을 부지(공장 또는 센터) 외부로 보내는 경우
  - FOB가격이 5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소포, 물품 샘플 및 선물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반액의 특별물품 검사 수수료, 특별 감시 수수료 및 호위 운송 수수료가 부과됨<sup>441)</sup>
  - 세관이 검사하여 밀봉한 수출물품 및 그 밖의 감독 관리를 수용하여야 하는 물품은 국내 운송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은 보세운송수단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음<sup>442)</sup>
  - 보세운송수단 소유인은 세관에 등기 및 보증금의 납입을 신청해야 하며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보증금 액수와 종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보세운송수단의 사용 관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하도록 함

#### 다. 물품반출 및 기타 유의사항

- 관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물품 수출인이 세관에 제출한 각종 통관자료에 대하여 기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민사 벌금 대상이 됨<sup>443)</sup>
- 형법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나 다음의 개인 및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물품 수출인 본인 또는 그 승계인

441) 「세관수수료징수규칙」 제10조

442) 「관세법」 제25조

443) 「관세법」 제12조



- 물품 수출인이 수권한 대리인 또는 변호인
  - 세관 또는 세금 심사기관
  - 심사기관
  - 세관 업무와 관련된 소원, 소송의 수리기관
  - 법에 따라 관세 관련 업무 안건을 조사하는 기관
  - 그 밖의 법에 따라 세관에 통관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인원
  - 재정부의 심판결정을 거친 기관 또는 인원
- 수출품이 반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통관 후 사후 심사 통지에 따라 세관은 2년 이내에 납세의무인, 수출자 및 관계인에 대해 사후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sup>444)</sup>
- 만약 환급하거나 추가하여야 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 사후 심사결과에 따라 물품 통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후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세관은 사후 심사 진행 시 증거 조사를 위해 납세의무인, 수출자 또는 관계인에게 기록, 문서, 회계 장부 또는 관련 파일에 대해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세관사무실에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통지하거나 세관원이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조사인은 이를 회피, 방해, 거절할 수 없음
  - 관계자는 통관 중개, 운송, 물품 포워더, 보관, 속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을 모두 포괄함
  - 사후 심사에 관한 범위, 절차, 제출 서류 및 기타 요구 사항에 관한 규정은 재정부가 정하도록 함
- 세관의 통관수속을 완료하지 못한 수출입물품은 세관의 비준을 거쳐 잠정적으로 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저장됨<sup>445)</sup>
- 전 항의 창고 또는 컨테이너 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기 및 보증금 납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보증금액과 종류, 신청절차, 등기

444) 「관세법」 제13조

445) 「관세법」 제25조

와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창고와 물품의 저장, 이동, 관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함

### 3. 기타 통관절차

#### 가. 우편물

- 수출 우편물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송인은 세관 신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수출신고서를 작성해야 함<sup>446)</sup>
  - FOB가격이 5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세관이 발표한 특별 조건을 제외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수출 규제 대상
  - 관세 환급 또는 담보 상쇄 요청을 위한 신고서의 중복이 필요한 대상
  - 반품 또는 재수출되는 물건으로서 원래의 수입신고서와 교차 확인이 필요한 물건
  - 국내 물품 수출신고(수출신고 G5) 또는 재수출 해외 물품신고(수출신고 G3)에 적용되지 않는 물품
  - 기타 법률에 따라 세관 신고 대상이 되는 기타 우편물
  
- 세관 신고 대상 이외의 수출 우편물에 대해서는 발송인이 그 물건의 이름, 수량, 가치를 신고해야 하며 우체국은 (무작위) 검사 및 반출을 위해 이러한 양식을 우편 소포와 함께 수출지 세관에 제출해야 함<sup>447)</sup>
  
- 수리 또는 처리를 목적으로 해외로 발송된 우편물 FOB가격이 5천달러 이하인 경우 발송인은 '수리 및 처리를 위해 수출된 우편물에 대한 간이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신청해야 함<sup>448)</sup>

446) 「소포 물품의 수출입 통관방법」 제15조

447) 「소포 물품의 수출입 통관방법」 제16조

448) 「소포 물품의 수출입 통관방법」 제17조

## 나. 해상 및 항공 특송물품

- 해상 특송 업체는 컴퓨터 또는 전자적 정보 전송을 통해 세관에 특송물품 수출을 신고해야 하며 물품의 성격 및 가치에 따라 다음의 범위로 분류함<sup>449)</sup>
  - 수출문서, FOB가격이 5만신대만달러 이하인 저가 수출물품, FOB가격이 5만신대만달러를 초과하는 고부가가치 수출물품
  
- 수출 해상 특송 물품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수출 절차에 따라 통관하도록 함<sup>450)</sup>
  - 고부가가치 수출 해상 특송물품
  -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세관에서 달리 고지하지 않는 한 수출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세금 환급, 담보 상쇄를 요청할 목적으로 신고서의 중복 신청이 필요한 경우
  - 반품 또는 재수출로 인해 기존의 수입신고서와 교차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관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관세 감면 대상 물품
  - 국내물품 수출신고(수출신고 G5), 자유 무역 지역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수출신고 F5)에 적용되지 않는 물품
  - 재정부가 고시한 특별 보호 조치 대상 물품
  
- 수출입 해상 특송 물품에 물품 검사 또는 검역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검역과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하도록 함<sup>451)</sup>
  
- 수출 특송 서류 또는 저가 수출 특송 물품을 발송하도록 위탁을 받은 해상 특송 업체는 해당 물품 소유자의 자격으로 세관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음<sup>452)</sup>

449) 「해운 특송물품 통관방법」 제11조

450) 「해운 특송물품 통관방법」 제12조

451) 「해운 특송물품 통관방법」 제16조

452) 「해운 특송물품 통관방법」 제20조

- 해상 특송 업체가 일반 수출신고 양식으로 신고해야 할 물품을 간이 신고 양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관은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특정 기한 전에 경고 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6천신대만달러 이상 3만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sup>453)</sup>
  - 3회 연속 제재 후에도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해상 특송 업체의 통관 업무는 최대 6개월간 정지될 수 있음
  
- 항공 특송 업체는 컴퓨터 또는 대만 세관의 전자적 부가가치 통신망을 통해 세관에 특송물품 수출을 신고해야 하며 물품의 성격 및 가치에 따라 다음의 범위로 분류함
  - 수출 문서, FOB가격이 5만신대만달러 이하인 저가 수출물품, FOB가격이 5만신대만달러를 초과하는 고부가가치 수출물품<sup>454)</sup>
  
- 특송 업체는 수출 특송물품에 해당 상업 송장, 인식 가능한 바코드 또는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비상업적 거래의 경우 위탁자가 보증한 물품의 가치에 대한 명세서를 대신 첨부해야 함
  
- 일반 수출절차에 따라야 하는 특송물품에 대한 조건과 검역조건, 일반 수출신고 양식으로 신고해야 할 물품을 간이 신고 양식으로 신고하는 데 따른 벌칙은 해상 특송물품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동일함<sup>455)</sup>

## 다. 여행자 물품

- 출국 승객은 다음의 경우 수출화물 신고 절차에 따라 서면 수출화물 신고 양식을 제출해야 함
  - 경제부 국제무역국 수출 제한 대상 물품 목록 및 세관의 수출검사 지원 물품

453) 「해운 특송물품 통관방법」 제28조

454) 「항공 특송물품 통관방법」 제11조

455) 「항공 특송물품 통관방법」 제12조; 제15조; 제28조

- 목록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 개인 소지품 및 위의 목록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반출되는 기타 물품이 총액 2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출국 승객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수하물을 확인하기 전 세관에 신고하여 물품을 등록하고 관련 문서를 구비해 두어야 함<sup>456)</sup>
- 자금세탁통제 관련 품목(10만신대만 달러 이상의 현금, 2만위안화 이상의 현금, 총 1만달러(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를 초과하는 현금, 액면가 총액이 1만달러(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를 초과하는 무기명 형태의 양도 가능한 증권, 총액이 2만달러 이상인 금, 총 가치가 50만신대만달러(기존 대만달러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를 초과하는 개인용이 아닌 다이아몬드, 보석 또는 백금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물품이 몰수되거나 물품 가치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민간 항공법」에 따라 항공 경찰국(Aviation Police Bureau)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객 및 수하물은 항공기에 탑승 또는 적재가 불가능함
- 통제 또는 제한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총액 2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재수입 예정 품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출국 승객이 해외로 반출 후 재반입 시 면세됨<sup>457)</sup>
- 비소모품(예: 컴퓨터 또는 카메라)
  - 영화 및/또는 텔레비전 영화 제작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휴대하는 과학 연구용 샘플 및 물품, 공학 기계, 영화 장비 및 용품, 기계의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도구, 전시용 물품, 예술품, 물품 반출에 사용되는 용기, 연예공연단의 의상, 도구 및 재무부가 승인한 기타 유사한 물품

456) 대만 재정부 관무서, 「자금세탁방지」, <https://etaipei.customs.gov.tw/cp.aspx?n=16018955FD908208&s=4B3BA659AF6CCCC2>, 검색일자: 2020. 11. 2.

457) 대만 재정부 관무서, 「재수입물품」, <https://etaipei.customs.gov.tw/cp.aspx?n=16018955FD908208&s=9F2B158E6D6F12DA>, 검색일자: 2020. 11. 2.

- 수리 또는 조립을 위해 해외로 운반되는 물품(단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수리비나 조립비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해야 함)
  - 세관신고 후 외국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역수입 예정 물품 기록(Record of to-be-reimported articles carried by outward passengers or crew)에 대한 세관의 인증 스탬프를 받아야 함
  - 물품은 반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대만으로 반입되어야 하며, 레드 채널을 통해 세관에 신고되어야 함
- 다음의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승인 또는 인증서를 취득한 후 반출이 가능함<sup>458)</sup>
- 「야생 동물 보호법(Wildlife Conservation Act)」 대상 품목
    - 보호 육지 동물: 살아 있는 동물 또는 그 제품의 수출은 농업 협의회 산림국(Forest Bureau, Council of Agriculture)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함
    - 보호된 해양 생물: 살아 있는 생물 또는 그 제품의 수출은 해양 보존부(Ocean Conservation Administration)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함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종이 적용되는 품목: 살아 있는 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수출하려면 국제 무역국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필요함
- 여행자를 위한 신고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샘플이 아닌 물품을 대만 밖으로 운반하는 승객은 직접 수출 통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수출 통관이 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음<sup>459)</sup>
- 귀중품: 금, 백금 조각 및 그 제품, 예술품 및 기타 귀중품
  - 전시품
  - ICP(International Control Program) 회사가 운반하는 전략적 하이테크 물품

458) 대만 재정부 관무서, 「동물통관」, <https://etaipei.customs.gov.tw/cp.aspx?n=16018955FD908208&s=E4DC41894A0B89D4>, 검색일자: 2020. 11. 2.

459) 대만 재정부 관무서, 「운반물품수출신고」, <https://etaipei.customs.gov.tw/cp.aspx?n=16018955FD908208&s=45D681AC3FBF4452>, 검색일자: 2020. 11. 2.

- 일반 물품: 한 케이스에 5개 이하의 상자, 각 상자의 무게는 20kg 이하로 가능함
  - 농업 및 수산물, 살아 있는 동식물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또는 그 제품,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비ICP(International Control Program) 회사, 무기 및 기타 관련 회사가 운반하는 전략적 최첨단 기술 물품, 무기, 특급화물 및 세금 환급 또는 상각을 위한 재수출용 물품은 적용할 수 없음
  - 필요한 서류: 수출 신고서, 상업송장, 포장 목록, 승객의 여권 또는 기타 신분증 사본, 탑승권 또는 항공권 사본, 위임장, 외부로 나가는 승객임을 승인하는 진술서
- 그 밖에 여행자가 반출할 수 없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sup>460)</sup>
- 금지 마약 또는 항정신성 약물: 헤로인, 모르핀, 아편, 코카인, 코카 잎, 양귀비, 양귀비 씨앗, 암페타민, 마리화나, 마리화나 씨앗, 10ppm 이상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을 함유하는 마리화나 유도체(THC), 상기 재료의 파생 제품 등(통제 약물이 필요한 승객은 의사의 처방전을 휴대해야 함)
  - 총기류(산탄총, 에어건, 작살총, 가스총 등), 탄약(총알, 폭발물 등) 및 칼(예리한 사무라이검, 낫쇠너클 등), 「총포 탄약 도기 단속조례(Controlling Guns, Ammunition and Knives Act)」에서 금지하는 총기(관련 물품의 수출은 주요 경찰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기사
  - 「문화재보존법(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에 의거한 유물
  - 위조 또는 가짜 통화 또는 증권, 위조 통화를 인쇄하기 위한 금형
  - 법률에 의해 수출이 금지된 물품 및 사전 승인 또는 인증서를 취득한 후 반출이 가능한 물품으로 위에서 언급한 동물 및 식물류

460) 대만 재정부 관무서, 「금지물품」, <https://etaipei.customs.gov.tw/cp.aspx?n=16018955FD908208&s=AA9D36CA55662CED>, 검색일자: 2020. 11. 2.





## 참고문헌

- 강성훈·양지영·김미정, 『자유무역지역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공유식·강준영, 「타이완 차이잉원의 탈중국정책-양안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탐라 문화』, 제5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pp.
- 김홍원·박진희·허유미, 『중국 ‘일대일로’ 중점지역의 추진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대만·중국 자유무역지역 운영사례 조사결과 보고」, 2005.
- 박노형·성재호·장승화·박덕영·왕상한·최원목·김채형·강호·배정생·김대원·박원석·조영진·이재민·손기운·강준하·이환규·표인수·유선봉·권현호·김병일·정영진·고준성·이로리·김대식·최승필·신희택·이재형·주진열, 『新 국제경제법』, 박영사, 2013.
- 박정하, 「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 동향 및 전망」, 『국제경제리뷰』, 제2019-16호, 한국은행, 2019.
- 세계법제정보센터, 『대만의 법률 및 입법체계』, 2016.
- 송주미, 『자유무역지역 유형별 Biz Model 구축 및 연계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 \_\_\_\_\_,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세행정 전략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 양평섭·이승신·문익준·노수염·정지현·여지나, 『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외교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2019 외국의 통상환경 아시아, 대양주』,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정책과, 2019.
- 외교부, 『대만 개황 2016』, 2016.
- 원종학·마정화·정경화, 『자유무역지역 현황 및 관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인도네시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한상국, 『주요국의 조세제도-대만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허재철·박진희·최지원, 「2020년 타이완 선거 이후 양안관계 전망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20권 제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YTN』, 「남태평양 키리바시, 대만과 단교...대만 수교국 15개로 줄어」, 2019. 9. 20.,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0116551074>, 검색일자: 2020. 8. 18.

『연합경제』, 「미중 무역전쟁에 대만도 긴장...“가장 큰 손실입을 국가”」, 2018. 7. 5.,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5134900009>, 검색일자: 2020. 10. 13.

『연합뉴스』, 「도미니카, 中수교 발표 한시간 전 대만에 단교 통보」, 2018. 5. 2., <https://www.yna.co.kr/view/AKR20180502100251009>, 검색일자: 2020. 10. 13.

『한겨레』, 「차이잉원 대만 총통 압도적 재선...민진당 입법원 단독 과반 확보」, 2020. 1. 12.,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24098.html](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24098.html), 검색일자: 2020. 10. 13

KOTRA 타이베이무역관, 『타이베이 출장가이드』, 2019.

대만 재정부 관무서·경제부 국제무역국, *Customs Import Tariff and Import and Export Commodity Classific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2017. 6.

林祖嘉, 「大選後的台灣經濟展望」, 『國政分析』, 2020. 1. 15, <https://www.npf.org.tw/3/22177>, 검색일자: 2020. 10. 13.

『新頭殼』, 「若中國官方片面取消ECFA 經濟部：影響5%出口」, 2019. 10. 2., <https://newtalk.tw/news/view/2019-10-02/306102>, 검색일자: 2020. 10. 13.

*Focus Taiwan*, “Taiwan, Nicaragua review free trade pact, expand benefits,” 2017. 11. 3., <https://focustaiwan.tw/business/201711030017>, 검색일자: 2020. 10. 6.

*Reuters*, “El Salvador top court suspends scrapping of Taiwan trade accord,” 2019. 3. 14, <https://www.reuters.com/article/us-el-salvador-taiwan-idUSKCN1QU340>, 검색일자: 2020. 10. 13.

*Shannon Tiezzi*, “Tsai Clears the Way for a US-Taiwan Trade Agreement,” *The Diplomat*, 2020. 8. 29., <https://thediplomat.com/2020/08/tsai-clears-the-way-for-a-us-taiwan-trade-agreement/>, 검색일자: 2020. 10. 13.

*Taiwan Today*, “4 Taiwan-Guatemala FTA decisions take effect,” 2020. 4. 1., <https://taiwantoday.tw/news.php?unit=6,7,8&post=174732>, 검색일자: 2020. 10. 13.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UNCTAD, 2020.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0*, WTO·ITC·UNCTAD, 2020.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https://cert.korcham.net>

매일경제新경제용어,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0/11/595565/>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http://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

외교부, <http://overseas.mofa.go.kr>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외교부, 「(대내외저세) 차이잉원 총통, 美 <<TIME>>지 인터뷰 실시」, 2020. 1. 10., [http://overseas.mofa.go.kr/tw-ko/brd/m\\_1456/view.do?seq=134719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http://overseas.mofa.go.kr/tw-ko/brd/m_1456/view.do?seq=134719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검색일자: 2020. 10. 13.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통계, <http://stat.kita.net/>  
한국AEO진흥협회, <http://www.aeo.or.kr/>  
ICC, <http://icccert.co.kr/ce-ivd>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

대만 가오슝세관, <https://keelung.customs.gov.tw/>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https://www.trade.gov.tw/>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 <https://www.moeaitc.gov.tw>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https://www.moeaic.gov.tw>  
대만 경제부 투자포털, <https://investtaiwan.nat.gov.tw/>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https://www.bsmi.gov.tw/>  
대만 과학기술부, <https://www.most.gov.tw>  
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moj.gov.tw/>  
대만 식품의약품청, <https://www.fda.gov.tw>  
대만 외교부, <https://en.mofa.gov.tw>  
대만은행, <https://www.bot.com.tw/>  
대만 재정부, <https://www.mof.gov.tw/>  
대만 재정부 관무서, <https://web.customs.gov.tw/>, <https://etaipei.customs.gov.tw/>  
대만 재정부 법규검색포털, <https://law-out.mof.gov.tw/>  
대만 중앙은행, <https://cpx.cbc.gov.tw/>  
대만은행 통계자료시스템, <https://cpx.cbc.gov.tw/chart/chartShow/?type=Line>  
대만 지류세관, <https://keelung.customs.gov.tw/>  
대만 행정원, <https://english.ey.gov.tw>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https://eng.stat.gov.tw/>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통계자료시스템, <https://www1.stat.gov.tw/>

대만 CPT포털, <https://portal.sw.nat.gov.tw/PPL/eng>

대만 ECA FTA공식 포털, <http://fta.trade.gov.tw/index.asp>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

PWC Worldwide Tax Summaries, <https://taxsummaries.pwc.com/>

Trade 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

Trade Van, <https://www.tradevan.com.tw>

VSCC, <http://www.vsc.org.tw/Home/>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 <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

대만 중화경제연구원 전문가 인터뷰, 타이베이, 2019. 10. 2.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대만 편 -

---

발 행 2020년 12월 31일  
저 자 정재현 · 노영예 · 손다혜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주)다원기획 044-865-8115  
인 쇄  
I S B N 979-11-6655-040-9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http://www.kipf.re.kr)

